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교도작업특별회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Ⅰ. 개　　관 ····· 1
1. 법무부 소관 총세입 ····· 1
2. 법무부 소관 총세출 ····· 2

Ⅱ. 회계별 총괄 ····· 4
1. 일반회계 ····· 4
가. 세　입 ····· 4
(1) 총　괄 ····· 4
(2) 세입내역 ····· 6
나. 세　출 ····· 8
(1) 총　괄 ····· 8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 13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19
다. 예비비 ····· 23
2. 교도작업특별회계 ····· 24
가. 세　입 ····· 24
(1) 총　괄 ····· 24
(2) 세입내역 ····· 24
나. 세　출 ····· 26
(1) 총　괄 ····· 26
(2) 세출내역 ····· 28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0
가. 수　입 ····· 30
나. 지　출 ····· 31

Ⅲ. 검토의견 ····· 33
1. 일반회계 ····· 33
◈ 세 입 ◈ ····· 33
(1) 총 괄 ····· 33
▢ 토지대여료 등 수납실적 저조 항목 개선 필요 ····· 35
▢ 과태료 등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마련 필요 ····· 37
(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40
▢ 고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편성 관행 시정 필요 ····· 40
(3)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44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불일치 최소화 노력 필요 ····· 45
◈ 세 출 ◈ ····· 50
가.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 50
(1) 총 괄 ····· 50
▢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 규정 준수 필요 ····· 50
▢ 기본경비 내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조정·편성할 필요 ····· 54
▢ 연구용역 연말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점검 필요 ····· 61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2-300),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301) ····· 69
▢ 연례적 집행부진 주의 필요 ····· 71
(3)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74
▢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이용절차 준수 필요 ····· 75
(4)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78
▢ 법무부 유튜브 홍보업무 성과 제고 등 운영 활성화 필요 ····· 78
(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038-301) ····· 83
▢ 대금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및 재발방지 필요 ····· 84
(6)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 ····· 88

▢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 89
(7)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95
▢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96

나. 법무실 ····· 99
(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1031-300) ····· 99
▢ 공익법무관 배치 적정성 검토 필요 ····· 100
(2)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 104
▢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 105
(3)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 110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111
(4) 변호사제도 선진화(1038-303) ····· 117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필요 ····· 118

다. 인권국 ····· 122
(1) 인권교육(1133-300) ····· 122
▢ 인권감수성훈련의 임차료 집행 및 계약방식 개선 필요 ····· 122
(2) 아동인권 증진(1133-302) ····· 130
▢ 아동인권증진 교육예산: 지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130
▢ 아동인권 증진 교육의 지역 불균등성 개선 필요 ····· 134
▢ 기관 간 협력의 체계화를 통한 아동인권 증진 교육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 138
(3) 인권국 기본경비(총액, 7011-263) ····· 142
▢ 정책연구비(260-02)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142

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148
(1) 이민정책개발 지원(1231-300) ····· 148

▢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점검 필요 ····· 149
(2)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 ····· 152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 153
(3)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1232-300) ····· 157
▢ 이·전용한 예산 불용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158
(4)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 162
▢ 세부사업비 혼용 지출 유의 및 법적 근거 마련한 사업 추진 필요 ····· 163
(5)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168
▢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제고 노력 시급 ····· 169
(6)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 175
▢ 귀화 민간면접관 구성에 있어 사회통합분야 확대 등 다양성 필요 ····· 176
▢ 국적심의위원회 경비 재산정을 통한 예산 재편성 필요 ····· 178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1233-304) ····· 181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비의 적정 집행 필요 ····· 182
(8)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 186
▢ 관례적인 인건비 이·전용을 통한 여유 재원 활용 지양 필요 ····· 187
▢ 난민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방식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필요 ··· 190

마. 검찰국 ····· 193

(1) 검찰청 소관 결산 개요 ····· 193
(2)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 ····· 196
▢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전용 지양 필요 ····· 198
(3)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공공수사(1335-302) ····· 201
▢ 예산 증액 시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03
(4)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 207
▢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 208
(5)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마약수사(1335-304),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등 ····· 213
▢ 일반수용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 ····· 216
(6)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등 ····· 222
▢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과다전용 반복에 대한 주의 필요 ····· 223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1335-305) ····· 229
▢ 각종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 주의 및 개선 필요 ····· 230
(8) 공판활동지원(1337-300) ····· 233
▢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신중한 상고제기 필요 ··· 234
(9) 형사보상(1337-302) ····· 238
▢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 239
(10)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 248
▢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49
▢ 일선 검찰청 검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노력 필요 ····· 252
(11)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 258
▢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 부진 개선 필요 ····· 259

바. 국제법무국 ····· 263

(1)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 263
▢ 국제법 전문위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해결 필요 ··· 264
(2)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1431-302) ····· 266
▢ 공무직 퇴직 후 결원기간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267
(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 269
▢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이용절차 위반 재발방지 필요 ····· 270
▢ 국제투자분쟁 실제 소요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74

사. 교정본부 ····· 276

(1)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 276
▢ 예산 소요 예측을 통한 적절한 비목의 예산 편성 필요 ····· 277

(2)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281
▢ 의료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82
(3) 교정교화(1532-301) ····· 287
▢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운영 필요 ····· 287
(4)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 294
▢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필요 ····· 294

아. 범죄예방정책국 ····· 299

(1) 소년원생 수용(1632-300) ····· 299
▢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299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306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 미확보 문제 ····· 312
(2) 청소년 비행예방(1632-301) ····· 315
▢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 315
(3)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 323
▢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충원방안 강구 필요 ····· 323
(4) 보호관찰활동(1635-300) ····· 328
▢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사전 편성 필요 ····· 328
(5)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1636-304) ····· 333
▢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위탁대금의 일반용역비 편성·집행 필요 ··· 333

자. 법무연수원 ····· 336

(1)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5131-300) ····· 336
▢ 공무직 중도퇴사 및 공무원 초과현원 점검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337
(2)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 341
▢ 교육프로그램 핵심 성과 반영을 위한 평가 체계의 전반적 점검 및 개선 필요 ···· 342
(3)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5131-311) ····· 347

▢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348
(4)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7018-204) ····· 352
▢ “포상금 용도”에 “기타운영비” 사용 개선 필요 ····· 353

2. 교도작업특별회계 ····· 357
◈ 세 입 ◈ ····· 357
(1) 전년도 세계잉여금(89-893) ····· 357
▢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357
(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설비부담금(59-595) ····· 361
▢ 미반영 세입의 예산 반영 검토 필요 ····· 362
◈ 세 출 ◈ ····· 363
(1) 시설보완(1535-302) ····· 363
▢ 교도작업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작업장 신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63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66
◈ 수 입 ◈ ····· 366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366
▢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편성 관행 시정 필요 ····· 366
▢ 장기간 미납연체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조속한 반납 필요 ····· 370
◈ 지 출 ◈ ····· 373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373
▢ 원스톱솔루션센터 관련 자율기구의 존속기간 만료 및 비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우려 해소 필요 ····· 374
▢ 원스톱솔루션 센터 사업 운영의 차별성, 실적, 중기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유관기관 연계의 미흡에 대한 개선 필요 ····· 380
▢ 원스톱솔루션 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385
▢ 원스톱솔루션 센터 서비스제공의 투명성 부족 개선 필요 ····· 386
▢ 스마일센터 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연례적 인건비 집행 부진 해소 필요 ··· 387

【참고자료】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 395

Ⅰ. 개　　관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1. 법무부 소관 총세입

202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조 4,454억 5,9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 9,600만원(0.0%) 증가한 1조 6,456억 1,700만원으로, 수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몰수금 및 추징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미수납액은 170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6억 6,7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3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과태료,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관급물품 훼손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 등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고, 교도작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위탁 교도작업 공임의 미수납에 따른 것임.

<총세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1,445,459	1,662,669	1,645,617	113.8	99.0	2	17,051
2023년	1,467,313	1,660,745	1,645,421	112.1	99.1	102	15,223
증감률	△1.5	0.1	0.0	-	-	△98.5	12.0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445,459	1,662,669	1,645,617	2	17,051
일 반 회 계	1,324,930	1,531,021	1,514,352	2	16,667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120,529	131,648	131,264	-	384

2. 법무부 소관 총세출

2024년도 세출예산(추경예산액 기준. 이하 개관 및 회계별 총괄 부분에서 같음) 총액은 4조 4,141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합하여 총 4조 4,279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음.

2024년도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3,741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2025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총 10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436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7억 3,2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28억 9,900만원임.

<총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24년	4,414,107	4,427,902	4,374,179	99.1	98.8	10,093	43,631
2023년	4,297,481	4,307,302	4,252,355	98.9	98.7	13,034	41,913
증감률	2.7	2.8	2.9	-	-	△22.6	4.1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총 계	4,414,107	4,427,902	4,374,179	10,093	43,631
일 반 회 계	4,293,578	4,306,684	4,255,881	10,071	40,732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120,529	121,218	118,297	22	2,899

II. 회계별 총괄

1. 일반회계

가. 세 입

(1) 총 괄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1,324,930	1,531,021	1,514,352	114.3	98.9	2	16,667
2023년	1,345,834	1,536,209	1,521,207	113.0	99.0	102	14,900
증감률	△1.6	△0.3	△0.5	-	-	△98.5	11.9

(가) 전년 대비 증감내역 및 증감사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3,249억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5,310억 2,100만원으로, 이 중 1조 5,143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고 166억 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구체적으로, 수납액은 2023년 대비 68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감소율 0.5%), 이는 주로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이 전년도 1조 3,373억 2,900만원에서 1조 3,020억 6,600만원(전년 대비 352억 6,300만원 감)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2024년도 법무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계부과금	1조 4,602억 5,700만원
• 면허료 및 수수료	239억 2,500만원
•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93억 4,200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68억 8,400만원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억 8,500만원
• 토지, 건물 등 관유물대여료	10억 7,200만원
• 변상금 및 위약금	8억 4,800만원
• 기타잡수입	8억 2,100만원
• 가산금, 자산매각대 등 기타	1,800만원

(나) 미수납내역과 발생사유

미수납액 166억 6,700만원의 내역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등 124억 6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4억 7,100만원, 가산금 및 자산매각대 등 13억 2,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5,700만원, 기타 2억 900만원으로, 그 원인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미도래 등임.

(2) 세입내역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324,930	1,531,021	1,514,352	2	16,667
• 재산수입	1,750	2,405	2,257	-	148
• 경상이전수입	1,282,890	1,484,460	1,468,000	2	16,45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2,801	24,745	24,745	-	-
• 수입대체경비수입	17,489	19,403	19,342	-	61
• 관유물매각대	-	8	8	-	-

(가) 재산수입

재산수입은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대여료와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24억 500만원 중 22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4,800만원임.

(나) 경상이전수입

경상이전수입은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조 4,844억 6,000만원 중 1조 4,680억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200만원, 미수납액은 164억 5,800만원임.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면허료·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247억 4,5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및 법무연수원 교육비로서 징수결정액 194억 300만원 중 193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100만원임.

(마) 관유물매각대

관유물매각대는 건물·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으로서 징수결정액 8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나. 세 출

(1) 총 괄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조 2,935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 4,500만원, 초과지출승인금액 4억 1,600만원, 예비비 3억 4,500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총 4조 3,066억 8,400만원이었음.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 산 결 정 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	예비비	전 용 증감(△)액	이 용 증감(△)액	
4,293,578	12,345	416	345	27,118 △27,118	66,088 △66,088	4,306,684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1%인 4조 2,558억 8,1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00억 7,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407억 3,200만원임.

<법무부 일반회계 소관 세출 현황(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4,293,578	4,306,684	4,255,881	99.1	98.8	10,071	40,732
2023년	4,176,002	4,185,823	4,139,309	99.1	98.9	12,345	34,169
증감률	2.8	2.9	2.8	-	-	△18.4	19.2

(가) 성질별·프로그램별 지출

202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성질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지출액은 2조 6,79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증원 등 인건비 소요액 증가에 따른 것임.

물건비 지출액은 7,533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소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전지출비는 5,21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이는 형사보상금 등의 지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산취득 지출액은 2,153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비의 지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전출금은 862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하였는데, 이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납입금임.

<2024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4년	4,255,881	2,679,346	753,367	521,674	215,373	86,121
2023년	4,139,309	2,613,261	711,246	473,001	247,601	94,200
증감률	2.8	2.5	5.9	10.3	△13.0	△8.6

202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출되었음.

- 법무활동 1,283억 7,900만원
- 인권활동 702억 3,500만원
- 출입국관리 1,423억 7,700만원
- 검찰활동 3,809억 4,400만원
- 국제법무활동 64억 1,900만원
- 교정활동 4,671억 9,300만원
- 범죄예방활동 1,620억 5,900만원
- 특별감찰관활동 6억 4,200만원
- 법무교육훈련 73억 2,300만원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2조 8,041억 9,200만원

(나) 전용액

2024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271억 1,8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금액임.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을 하였음.

-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액 121억 2,800만원
- 형사보상금 부족액 58억 8,200만원
- 국내 및 국외 업무여비 부족액 41억 7,900만원
- 구호 및 교정비 등 부족액 38억 4,800만원
- 인건비 부족액 4억 5,000만원
- 연구비 등 기타 부족액 6억 3,100만원

(다) 이용액

2024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660억 8,800만원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6% 증가한 금액임. 구체적으로는 아래 세부사업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이 이용되었음.

- 형사보상금 부족액 313억 4,300만원
- 교정시설 등 공공요금 부족액 174억 3,000만원
- 교정시설 수용자 급식비 등 부족액 99억 1,500만원
- 국가배상금 부족액 74억원

(라) 이월액

2024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100억 7,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4% 감소한 금액임. 공사 지연 및 연구용역 등 계약 수행을 사유로 금액이 이월되었음.

- 교정시설 등 법무시설 공사 및 자산취득 96억 9,500만원
- 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 3억 7,600만원

(마) 불용액

2024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407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금액임. 프로그램별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음.

- 법무활동 3억 6,000만원
- 인권활동 2억 7,000만원
- 출입국관리 29억 7,100만원
- 검찰활동 17억 1,700만원
- 국제법무활동 1억 100만원
- 교정활동 66억 7,000만원
- 범죄예방활동 32억 9,100만원
- 특별감찰관활동 2억 7,200만원
- 법무교육훈련 4억 5,900만원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246억 2,100만원
  (인건비 157억 4,000만원, 기본경비 35억 900만원 포함)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가) 법무활동(1000)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은 1,213억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00만원, 이용액 74억원을 포함한 1,288억 400만원으로, 이 중 99.7%인 1,283억 7,900만원을 집행함.

한편, 이용액 74억원, 전용액 2억 3,000만원은 국가배상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600만원은 정책연구용역비가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3억 6,0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법무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21,300	104	-	230 △230	7,400	128,804	128,379	66	360

(나) 인권활동(1100)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705억 500만원으로, 이 중 99.6%인 70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인권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70,505	-	-	7 △7	-	70,505	70,235	-	270

(다) 출입국관리(1200)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은 1,443억 3,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초과지출승인 4억 1,600만원, 이용액 6억원을 포함한 1,453억 4,800만원으로, 이 중 98.0%인 1,423억 7,700만원을 집행함.

한편, 이용액 6억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29억 7,1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출입국관리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 출승인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44,332	-	416	188 △188	600	145,348	142,377	-	2,971

(라) 검찰활동(1300)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은 3,501억 8,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500만원, 예비비 3억 4,500만원, 이용액 313억 4,300만원을 포함한 3,828억 5,500만원으로, 이 중 99.5%인 3,809억 4,400만원을 집행함.

구체적으로, 예비비 3억 1,700만원은 특별검사 운영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이용액 313억 4,300만원은 형사보상금 부족분에, 전용액 112억 100만원은 형사보상금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400만원은 연구용역비 등이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17억 1,7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검찰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350,182	985	345	11,201 △11,201	31,343	382,855	380,944	194	1,717

(마) 국제법무활동(1400)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은 2024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예산액은 65억 4,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한 65억 4,800만원으로, 이 중 98.0%인 64억 1,900만원을 집행함.

한편, 전용액 1억 4,100만원은 ISDS 중재비용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800만원은 계약기간 이행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1억 1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6,542	6	-	141 △141	-	6,548	6,419	28	101

(바) 교정활동(1500)

교정활동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은 4,468억 3,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700만원, 이용액 267억 4,500만원을 포함한 4,80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97.3%인 4,671억 9,300만원을 집행함.

한편, 전용액 47억 4,400만원은 구호 및 교정비, 국내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이용액 267억 4,500만원은 수용자 급식비 및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5억 2,000만원은 공기부족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66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교정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446,830	6,807	-	4,744 △4,744	26,745	480,382	467,193	6,520	6,670

(사) 범죄예방활동(1600)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은 1,643억 9,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500만원을 합한 1,65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98.0%인 1,620억 5,900만원을 집행함.

한편, 전용액 6억 4,0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액 및 전자장치 스트랩 강화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금액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32억 9,1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64,395	955	-	640 △640	-	165,350	162,059	-	3,291

(아) 법무교육훈련(5100)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의 2024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77억 8,200만원으로, 이 중 94.1%인 7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억 5,9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4년도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7,782	-	-	-	-	7,782	7,323	-	459

(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7000)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법무·검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및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조 8,946억 7,5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8,800만원을 합하고 이용액 660억 8,800만원을 감한 2조 8,320억 7,500만원으로, 이 중 99.0%인 2조 8,04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6억 2,100만원은 불용하였음.

전용액 98억 2,400만원은 운영비와 여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246억 2,100만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임.

<2024년도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894,675	3,488	-	9,824 △9,824	△66,088	2,832,075	2,804,192	3,262	24,621

(차) 기타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전출금(8800)으로 예산액 861억 2,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특별감찰관 소관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1800)에 6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음.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2024년도 법무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계상되었던 사업은 10개 프로그램에 77개 세부사업으로 총 1조 5,604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음.

(가) 부서별 결산내역

법무실 소관으로 국가배상금지급 등 11개 사업에 1,283억 7,900만원,

인권국 소관으로 법률구조 등 5개 사업에 702억 3,500만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으로 외국인보호관리 등 9개 사업에 1,423억 7,700만원,

검찰국 소관으로 수사지원 등 19개 사업에 3,809억 4,400만원,

국제법무국 소관으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등 4개 사업에 64억 1,900만원,

교정본부 소관으로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등 5개 사업에 4,671억 9,300만원,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갱생보호활동 등 9개 사업에 1,620억 5,900만원,

법무연수원 소관으로 연수원시설관리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73억 2,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나) 기타

기획조정실 등 소관 11개 사업에 1,088억 7,600만원, 특별감찰관 소관 1개 사업에 5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4년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총 계	4,293,578	4,306,684	4,255,881	10,071	40,732
인건비 계	2,621,040	2,548,812	2,532,863	-	15,949
기본경비 계	159,954	166,208	162,549	87	3,571
기금전출금 계	86,121	86,121	86,121	-	-
사업비 계	1,426,463	1,505,543	1,474,349	9,984	21,211
<법무활동>	121,300	128,804	128,379	66	360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4,022	3,785	3,677	-	108
국가배상금지급	100,000	107,743	107,743	-	0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658	658	658	-	0
기업환경지수 개선	253	253	239	-	14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5,162	5,115	5,109	-	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400	3,370	3,354	-	16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820	817	724	-	93
변호사제도의선진화	744	784	778	-	6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5,197	5,197	5,111	-	86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766	804	718	66	2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78	278	267	-	11
<인권활동>	70,505	70,505	70,235	-	270
법률구조	64,817	64,817	64,815	0	2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998	4,998	4,785	0	213
인권교육	204	204	188	0	16
아동인권 증진	245	245	241	0	4
국제인권역량강화	241	241	206	0	35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출입국관리>	144,332	145,348	142,377	-	2,971
이민정책개발지원	386	386	327	-	59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562	2,562	2,562	-	0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51,419	51,831	50,658	-	1,173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5,757	6,173	6,164	-	9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4,608	24,608	24,027	-	581
외국인보호관리	22,287	22,582	22,226	-	356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5,427	15,320	14,787	-	53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1,132	11,132	10,905	-	227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0,754	10,754	10,720	-	34
<검찰활동>	350,182	382,855	380,944	194	1,717
검찰청시설운영	82,041	80,450	80,128	-	32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924	7,718	7,591	-	12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1,021	9,908	9,883	-	25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701	2,699	2,689	-	10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457	25,274	25,178	49	47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1,800	1,800	1,756	-	44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6,839	36,839	36,312	-	526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10,419	10,419	10,070	-	349
형사부 등 수사지원	86,475	85,131	84,934	145	52
공공수사	3,276	3,003	3,002	-	1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4,644	14,533	14,513	-	20
마약수사	8,204	7,707	7,600	-	10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3,481	3,331	3,328	-	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52	6,201	6,193	-	7
공판활동지원	2,037	2,035	2,034	-	1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7,262	7,252	7,221	-	30
형사보상	40,000	77,225	77,219	-	6
형사법정비	349	339	337	-	2
안미영 특별검사	-	992	956	-	36
<국제법무활동>	6,542	6,548	6,419	28	101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381	381	360	0	21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728	731	671	4	56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58	161	126	24	11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5,275	5,275	5,262	0	13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교정활동>	446,830	480,382	467,193	6,520	6,670
교도소행정지원	48,515	48,817	48,090	-	727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6,459	15,649	14,777	-	872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69,102	300,093	299,909	-	184
교정교화	11,920	11,420	11,319	-	101
<범죄예방활동>	164,395	165,350	162,059	-	3,29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5,568	15,568	15,028	-	540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연구개발사업(R&D)	877	877	877	-	0
소년원생수용	26,887	26,767	26,152	-	615
청소년비행예방	5,447	5,397	5,056	-	341
갱생보호활동	48,124	48,124	48,124	-	0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2,680	12,680	12,146	-	534
보호관찰활동	16,114	16,164	15,999	-	165
전자감독	32,427	33,502	32,543	-	959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6,271	6,271	6,134	-	137
<특별감찰관활동>	404	547	546	-	1
특별감찰활동	404	547	546	-	1
<법무교육훈련>	7,782	7,782	7,323	-	459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5,032	5,032	4,776	-	256
법무, 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605	1,605	1,427	-	178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137	118	-	19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1,008	1,008	1,002	-	6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114,191	117,422	108,876	3,175	5,37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608	608	532	-	76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94	-	26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7,993	17,993	16,205	-	1,788
정보기획지원	33	33	33	-	-
양성평등정책 지원	233	233	226	-	7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9,117	39,117	38,272	-	845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00	800	754	-	46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7,096	7,096	7,038	-	5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722	29,722	29,696	-	26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10,843	13,840	8,874	3,175	1,791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7,860	7,151	-	709

다. 예비비

예비비는 3억 4,5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그 전액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액의 91.9%인 3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음.

예비비의 구체적 지출내역은 특별검사 운영경비에 3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800만원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24년	345	345	317	-	28
2023년	1,525	1,525	821	647	58
증감	△1,180	△1,180	△504	△647	△30

2. 교도작업특별회계

가. 세　입

(1) 총　괄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1,205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6억 4,800만원으로, 이 중 1,312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 8,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120,529	131,648	131,264	108.9	99.7	-	384
2023년	121,479	124,536	124,214	102.3	99.7	-	323
증감률	△0.8	5.7	5.7	-	-	-	19.0

(2) 세입내역

재산수입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이 수납되었음.

경상이전수입은 설비부담금 및 국고금 반환금 등으로서 1억 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교도작업제품 판매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718억 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14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 5,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전년도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상반기 교도작업 운영자금에 사용되는 결산상 잉여금으로 111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484억 6,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4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현황(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0,529	131,648	131,264	-	384
• 재산수입	-	2	2	-	-
• 경상이전수입	103	195	170	-	25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4,712	71,817	71,458	-	359
• 전년도세계잉여금	6,560	11,168	11,168	-	-
• 정부내부수입	49,154	48,466	48,466	-	-

나. 세 출

(1) 총 괄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212억 1,800만원으로 97.6%인 1,182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교도작업제품 생산·공급, 작업장비 확충, 수형자 직업훈련비용 및 출소 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장려금 지급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28억 9,900만원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120,529	121,218	118,297	98.1	97.6	22	2,899
2023년	121,479	121,479	113,046	93.1	93.1	689	7,744
증감률	△0.8	△0.2	4.6	-	-	△96.9	△62.6

지출액 1,182억 9,700만원의 성질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 지출액은 8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액임.

물건비 지출액은 36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도작업 재료비 등의 지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임.

이전지출액은 24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형자 작업장려금 지급액 등이 늘어났기 때문임.

자산취득 지출액은 55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현황(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2024년	118,297	821	36,837	24,979	55,660
2023년	113,046	950	35,229	23,076	53,791
증감률	4.6	△13.5	4.6	8.2	3.5

2024년 세출예산 이월액은 2,200만원, 불용액은 28억 9,900만원으로 그 중 불용액이 22억 4,900만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은 예산 대비 실제 예탁금의 차액임.

(2) 세출내역

(가) 교도작업(1535-300)

2024년도 교도작업 사업은 예산현액 595억 4,700만원의 99.2%인 590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교도작업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58,651	-	-	5	891	59,547	59,062	-	485

(나) 직업훈련(1535-301)

2024년도 직업훈련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5,900만원의 99.0%인 4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직업훈련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4,164	-	-	△5	-	4,159	4,116	-	43

(다) 시설보완(1535-302)

2024년도 시설보완 사업은 예산현액 51억 6,400만원의 97.9%인 50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시설보완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4,475	689	-	-	-	5,164	5,054	22	88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가. 수 입

2024년도 수정수입계획액은 1,370억 5,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33억 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24억 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87억 5,400만원 증가하였음.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수입 계획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24년(B)	23년(C)				
합 계	137,054	143,361	142,412	133,658	103.9	106.5	-	950
자체수입	4,931	6,548	5,599	6,692	113.5	83.7	-	950
정부내부수입	86,121	86,121	86,121	94,200	100.0	91.4	-	-
여유자금회수	46,002	50,692	50,692	32,766	110.2	154.7	-	-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체수입은 55억 9,9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구상금 16억 1,7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익금 9억 7,9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200만원임.

정부내부수입은 861억 2,1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벌금 수납액의 8%)임.

여유자금회수는 506억 9,200만원으로, 이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70억원과 '23년도 결산상 잉여금인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36억 9,200만원임.

미수납액은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이자 미반납액임.

나. 지 출

2024년도 수정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현액은 1,370억 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24억 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87억 5,400만원 증가하였음.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A)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4년(B)	23년(C)				
합 계	137,054	137,054	142,412	133,658	103.9	106.5	-	2,897
사업비	88,606	88,606	85,717	80,343	96.7	106.7	-	2,889
기금운영비	48	48	48	46	99.1	102.4	-	-
정부내부지출	2,549	2,549	2,541	2,577	99.7	98.6	-	8
여유자금운용	45,851	45,851	54,106	50,692	118.0	106.7	-	-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업비 지출액은 857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7,4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지출액 증가임.

기금운영비 4,800만원은 기금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고, 정부내부지출 25억 4,1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출임.

여유자금운용 541억 600만원은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완전위탁펀드 투자금인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520억원과 '24년도 결산상 잉여금인 한국은행예치금 21억 600만원임.

불용액은 28억 9,700만원으로 사업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집행잔액임.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세 입 ◈

(1) 총 괄

▢ 결산 개요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대부분은 형사재판 등에 따른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가 차지하고, 그 외에는 각종 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포함한 ‘면허료 및 수수료(65)’와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액 등을 포함한 ‘기타경상이전수입(59)’ 등으로 구성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조 3,249억 3,000만원이고, 1조 5,310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5,143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6억 6,600만원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일반회계 세입 총계	1,324,930	1,531,022	1,514,352	16,666	2	1,543,683
・토지대여료 (51-511)	699	464	365	98	-	485
・건물대여료 (51-512)	703	736	694	43	-	613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액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17	13	13	-	-	13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331	1,113	1,106	7	-	264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	79	79	-	-	51
·벌금 및 과료 (56-561)	1,128,869	1,303,242	1,302,066	1,175	-	1,337,329
·몰수금 및 추징금 (56-562)	130,898	147,006	147,006	-	-	123,093
·과태료 (56-563)	12,167	21,638	11,124	10,512	2	11,514
·징계부과금 (56-564)	30	779	61	718	-	31
·변상금 (57-571)	252	2,552	83	2,470	-	202
·위약금 (57-572)	1,541	767	766	1	-	1,826
·가산금 (58-581)	39	1,334	10	1,324	-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9,094	7,142	6,884	257	-	7,945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22,061	23,925	23,925	-	-	32,427
·기타잡수입 (69-691)	740	821	821	-	-	871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651)	17,338	19,256	19,195	61	-	26,880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69-691)	151	147	147	-	-	13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8	8	-	-	-

▢ 토지대여료 등 수납실적 저조 항목 개선 필요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전체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1조 3,249억 3,000만원 대비 114.3%인 1조 5,143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당초 계획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납실적이 저조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대여료(51-511)'의 경우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억 6,5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52.2%로 나타났음. 또한,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액은 1,7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3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76.5%였음.

다음으로, '변상금(57-571)'의 경우 예산액은 2억 5,2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8,3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32.9%이었으며, '위약금(57-572)'은 예산액이 15억 4,1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7억 6,6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49.7%에 그쳤음.

그 밖에 '가산금(58-581)'의 경우에도 예산액은 3,9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5.6%이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의 경우 예산액은 90억 9,4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68억 8,4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75.7%에 그치는 등, 일부 세입항목의 실적이 저조하였음.

<2024회계연도 수납실적 저조 주요 항목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 대여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 이전수입
2021	예산액(A)	1,277	16	275	687	246	7,980
	수납액(B)	461	14	104	1,600	2	9,140
	B/A	**36.1%**	87.5%	**37.8%**	232.9%	**0.8%**	114.5%
2022	예산액(A)	699	17	336	687	246	7,980
	수납액(B)	542	12	387	2,383	1	8,923
	B/A	**77.5%**	**70.6%**	115.2%	346.9%	**0.4%**	111.8%
2023	예산액(A)	699	17	205	783	39	8,229
	수납액(B)	477	14	114	1,494	2	5,983
	B/A	**68.2%**	82.4%	**55.6%**	190.8%	**5.1%**	**72.7%**
2024	예산액(A)	699	17	252	1,541	39	9,094
	수납액(B)	365	13	83	766	10	6,884
	B/A	**52.2%**	**76.5%**	**32.8%**	**49.7%**	**25.6%**	**75.7%**

* 주: 예산액 대비 수납률 80.0% 미만 음영 표시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이 중에서도 '토지대여료(51-511)', '변상금(57-571)' 및 '가산금(58-581)' 등 항목의 경우 저조한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바, 이는 관련 제도 운용이나 예산 편성이 실적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18조[1]에 따라 국가의 세출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1)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하므로, 세입예산의 충분한 수납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의 합리적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집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이번 법무부 소관 일부 세입항목의 경우와 같이 수납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할 경우 세입결손으로 국가 전체의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수납실적이 저조한 주요 세입항목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 세입예산액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과태료 등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마련 필요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전체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총 1조 5,310억 2,200만원 대비 98.9%인 1조 5,143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66억 6,600만원 및 불납결손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음.

국가가 어떠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더라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고 버티거나 무자력 등을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 등에는 미수납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음.

그러나 법무부의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 항목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장기·과다 미수납에 기인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 주요 항목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토지대여료	과태료	징계부과금	변상금	가산금
2021	징수결정액(A)	690	22,320	610	2,452	1,326
	수납액(B)	461	12,074	△88*	104	2
	B/A	66.8%	54.1%	△14.4%	4.2%	0.2%
	미수납액	**229**	**10,246**	**698**	**2,287**	**1,238**
2022	징수결정액(A)	679	21,493	721	2,738	1,382
	수납액(B)	542	11,647	49	387	1
	B/A	79.8%	54.2%	6.8%	14.1%	0.1%
	미수납액	**137**	**9,845**	**672**	**2,350**	**1,381**
2023	징수결정액(A)	662	21,904	686	2,524	1,331
	수납액(B)	477	11,915	6	114	2
	B/A	72.1%	54.4%	0.9%	4.5%	0.2%
	미수납액	**137**	**9,989**	**680**	**2,405**	**1,293**
2024	징수결정액(A)	464	21,638	779	2,552	1,334
	수납액(B)	365	11,124	61	83	10
	B/A	78.7%	51.4%	7.8%	3.3%	0.7%
	미수납액	**98**	**10,512**	**718**	**2,470**	**1,324**

* 2019년 수납된 징계부과금의 환수결정에 따른 환급금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먼저, '과태료(56-563)'의 경우 2024년도에 216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51.4%에 해당하는 111억 2,400만원을 수

납하여 105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미수납액은 2024년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항임.[2)]

다음으로, '변상금(57-571)'은 징수결정액 25억 5,200만원 대비 3.3%에 불과한 8,300만원을 수납하여 24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이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미수납액임.[3)]

특히, '가산금(58-581)'의 경우 매년 실제 거의 수납되지 않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13억원 이상을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액에 편성 및 징수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밖에도 '징계부과금(56-564)'과 '토지대여료(51-511)' 등의 미수납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4)]

이처럼 장기·과다 미수납액이 과도할 경우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기능과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추가 행정비용을 유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향후 법무부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 수납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2)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검찰에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 미납액임.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지명수배·환형유치 등이 불가능하고, 벌금·추징금과 달리 결정과 동시에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납제도가 없어 신속한 집행을 담보할 강제력 있는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3)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은 과거 검찰 추징금·벌금 수납 담당자의 수입금 횡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금액(약 13억원) 및 그 친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금액(5억원)이고, 그 외에는 모 공업사의 국유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약 4억원) 및 영치금 횡령에 따른 변상금(약 2억원) 등임.

4)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수납액 대부분은 채무자의 사망이나 무자력 등이 원인임.

(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결산 개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법무부가 갱생보호활동 및 법률구조사업 등에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반납한 이자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당초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3,100만원이었으나, 11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0만원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기타재산 이자수입	331	-	331	1,113	1,106	7	-	264

▢ 고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편성 관행 시정 필요

보조사업의 수행을 마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5]에 따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법무부 소관의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항목은 이러한 보조금 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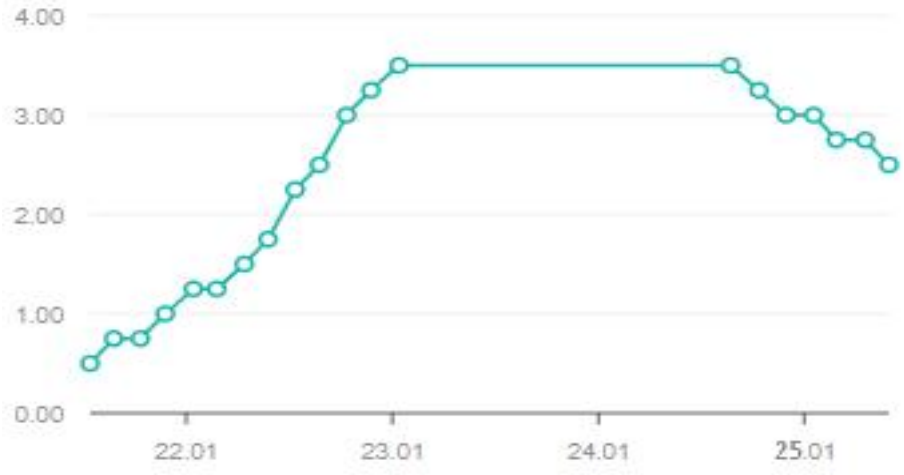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납액이 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납실적은 자연히 전년도 금리 수준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및 그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른 고금리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의 세입예산액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의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 3억 3,100만원 대비 334.2%에 이르는 11억 6,0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기준금리가 연초에 3.50%로 인상된 이후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임.

<최근 4년간 기준금리 변동 현황>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예산액과 수납액 간 격차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바, 당시에도 2022년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산액 대비 167.4% 수납하여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바 있었으며,[6]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되었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연 8회로서 연중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의 금리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다음연도 세입 규모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인정됨.

그러나 지난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 기준으로도 이미 기준금리가 3.50%에 이르는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고, 당시 미국의 장기 긴축 정책과 고금리 유지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수납실적 평균'이라는 관행적 기준에 따라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로 인해 예산액과 수납액 간에 이번과 같은 현격한 차이가 초래된 것임.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339	-	339	189	182	**53.7**	96.2	7	-
2022	319	-	319	147	140	**43.9**	95.2	7	-
2023	331	-	331	561	554	**167.4**	98.8	7	0.06
2024	331	-	331	1,113	1,106	**334.2**	99.4	7	-
2025	264								

자료: 법무부

6)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4. 8.

한편, 기준금리가 낮았던 지난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법무부의 기계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수납률이 오히려 예산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는바, 이처럼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는 사실상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예산액과 수납액 간 격차가 반복될 경우 국가 전체의 세입 규모를 왜곡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면밀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임. 향후 법무부는 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등 세입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결산 개요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예산액은 173억 3,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0.7%인 19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191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음.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면허 및 수수료 (수입대체 경비)	17,338	-	17,338	19,256	19,195	61	-	26,880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불일치 최소화 노력 필요

「국가재정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나, 당해 경비나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7)]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3만원,[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3만원, 사실증명 1통당 2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9)]

그런데 2024년 동 수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73억 3,8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92억 5,600만원으로 19억 1,800만원이 과

---

7)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개정2023. 6. 14.>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개정 2024. 12. 24.>

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개정 2016. 9. 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개정 2024. 12. 24.>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다 징수되어 수납률이 110.7%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4년간 동 수입의 결산 내역을 추가로 살펴보면, 2023년은 예산액 118억 5,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86억 5,200만원으로 68억 200만원 초과 징수에 따라 수납률이 157.4%였고, 2022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예산액 154억 5,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42억 9,600만원으로 11억 6,300만원이 과소 징수됨에 따라 수납률은 92.5%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액 154억 5,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07억 3,100만원으로 47억 2,800만원이 과소 징수되어 수납률이 69.4%였던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1	15,459	15,459	10,731	10,731	69.4	100.0	-
2022	15,459	15,459	14,296	14,296	92.5	100.0	-
2023	11,850	11,850	18,652	18,652	157.4	100.0	-
2024	17,338	17,338	19,256	19,195	110.7	99.7	61

법무부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과소 과다 현상에 대하여,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수의 감소로 과소 수납하였고, 2023년은 코로나 19 일상 회복에 따라 등록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2024년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등록외국인 수 증가 등으로 과다 수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예산액 산정 기준 및 징수결정액 불일치 사유>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불일치 사유
2021	15,459 최근 3년(2017~2019년) 수납액 평균	10,731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수의 감소
2022	15,459 (전년 동)	14,296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수의 감소
2023	11,850 최근 3년(2019~2021) 수납액 평균	18,652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등록외국인 수의 증가
2024	17,338 * 산출: 602,000매×30천원×0.96(수수료 징수율) =17,337,600천원	19,256	외국인 유학생 증가 및 계절근로자, 비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등록 외국인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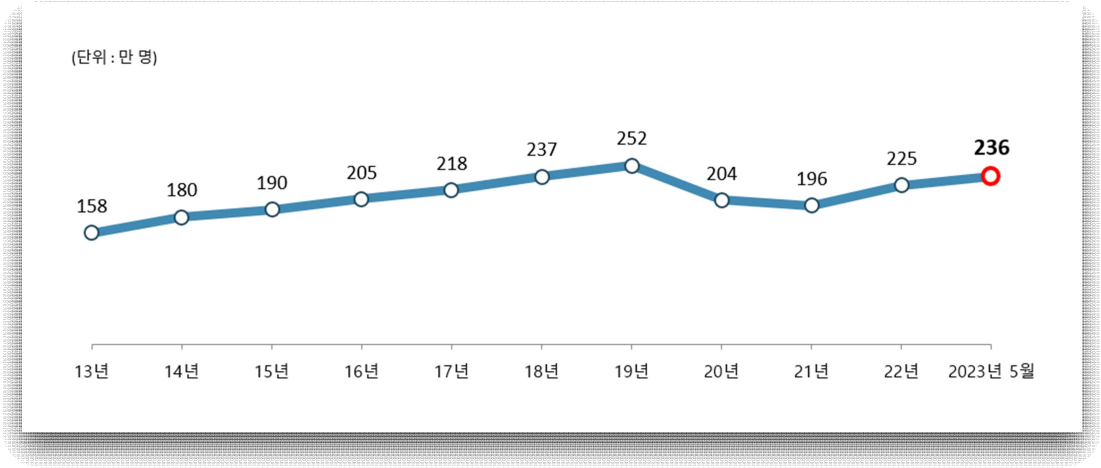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4년간 동 수입의 예산액 편성 당시 단가산정기준과 결산 시 징수결정액과의 불일치 사유 등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매년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021년과 2022년 예산액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의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급감한 징수결정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과소 수납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2023년 예산액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2022년도 징수결정액이 142억 9,600만원으로 회복되는 추세였음에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결국 157.4%로 과다징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2024년 예산액의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2023년 상반기에

코로나19의 종식에 따른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10] 법무부가 주도하는 각종 외국인력 확대 도입정책이 발표되며,[11][12][13] 체류 외국인 관련 통계지표에서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예산액 증액요인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2023년 징수결정액보다도 낮은 수치를 예산액으로 편성함으로써 과다 계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2024년 예산액 편성 당시 법무부 통계월보 상 체류외국인 현황(23.5말.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계	등 록	거소신고[14]	
2022년 5월	2,012,862	1,588,371	1,105,204	483,167	424,491
2023년 5월	2,364,894	1,766,131	1,255,608	510,523	598,763
전년대비 증감률	17.5%	11.2%	13.6%	5.7%	41.1%
구성비	100%	74.7%	53.1%	21.6%	25.3%

10)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종식' 선언…7일 격리 의무도 폐지」, JTBC, 2023.05.11.
11)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3.04.26.
12)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 2023.05.30.
13)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3.06.25.
14)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면허료 및 수수료와 같은 수입은 매년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액을 산정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계상이라 할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에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여 예산액을 편성하는 등 현행 수입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세 출 ◈

가.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1) 총 괄

▢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 규정 준수 펼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이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48억 9,500만원이고, 4,500만원 전년도 이월 및 9,5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50억 3,500만원이며, 이 중 146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 다음연도 이월 및 3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일반용역비(210-14)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일반용역비(210-14)	14,895	45	95	-	15,035	14,679	45	310	12,086
· 기획조정실(운영,감찰, 감사,대변인 포함)	2,839	45	38	-	2,922	2,793	45	83	3,626
· 법무실	581	-	21	-	602	602	-	-	581
· 검찰국	2,466	-	△38	-	2,428	2,331	-	97	2,665
· 범죄예방정책국	2,168	-	69	-	2,237	2,165	-	72	2,257
· 인권국	100	-	5	-	105	105	-	-	110
· 국제법무국	-	-	-	-	-	-	-	-	-
· 교정본부	294	-	-	-	294	280	-	14	500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6,397	-	-	-	6,397	6,365	-	32	2,325
· 연수원	50	-	-	-	50	38	-	12	2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15)]

그런데, 2024년 법무부에서 집행한 일반용역비 내역 중에는 동 지침에서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과는 무관한 ‘만족도 조사’, ‘친절도 점검’, ‘컨설팅’,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침을 위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를 집행한 대표사례>

(단위: 천원)

집행내역 (사업내역)	24년 집행액	업체명	계약기간	집행부서	적합비목
2024년 법무부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20,000	한국ㅇㅇ ㅇㅇ컨설팅	24.12.	기획조정실	260
2024년 법무부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10,400	ㅇㅇ ㅇTX (주)	24.10.~24.11.	기획조정실	260
2024년 1301 검찰콜센터 민원인 만족도 조사	12,000	㈜ㅇㅇㅇ ㅇㅇ브레인	24.5.~24.6. 24.10.~24.11.	검찰국	260
2024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449,000	ㅇㅇ공간 연구원	24.2.-24.12.	범죄예방 정책국	260
CPTED 효과성 분석	50,000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24.7.-24.12.	범죄예방 정책국	260

1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60p. 참조

특히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의 오집행을 방지하고자,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정책개발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하도록 별도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6] 이를 위반하여 '조사', '컨설팅', '분석' 등에 집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동 규정이 연구용역비(260목)를 일반용역비(210-14목)와 구분한 것은, 조사·연구나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할 때에는 과제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제수행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지식기반의 용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통상 부적합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원인으로는, ① 예산 편성 당시 적정 비목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 비목을 잘못 편성한 경우, ② 기존 비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답습하여 예산을 변경 편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족한 재원을 다른 비목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보충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따라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 목적의 용역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임. 향후 법무부는 제시된 일부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전 사업

1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60p. 참조

에 대해 비목 적합성을 확인하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목의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며, 타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면 해당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변경·재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17]

17) 예를 들어 법무부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세부사업(7023-301)」에서 '2024년 법무부 민원만족도 조사(1,200만원 집행)' 혹은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세부사업에서 '법률홈닥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1,400만원)'를 추진하면서 적합 비목인 일반연구비(260-01)로 사용한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집행 총괄 부서에서는 앞선 표에서 살펴본 대표사례들과 같이 부적합 비목으로 잘못 집행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정할 필요가 있음.

▢ 기본경비 내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조정·편성할 필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예산을 주요사업비, 기본경비, 인건비, 기금전출금으로 나누면, 이 중에서 기본경비로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599억 5,400만원이고, 2억 5,700만원 전년도 이월 및 59억 9,7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662억 800만원이며, 이 중 1,625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 다음연도 이월 및 35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주요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부 예산	4,293,578	12,345	416	345	4,306,684	4,255,881	10,071	40,732	4,340,427
· 인건비	2,621,040	–	△72,228	–	2,548,812	2,532,863	–	15,949	1,423,274
· 기본경비	159,954	257	5,997	–	166,208	162,549	87	3,571	167,311
· 주요사업비	1,426,463	12,088	66,647	345	1,505,543	1,474,348	9,984	21,211	2,661,080
· 기금전출금	86,121	–	–	–	86,121	86,121	–	–	88,76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기본경비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규정한 다음,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상 기본경비 예시(요약)>

구 분	내 용
① 기본행정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ㅇ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인건비, 일용임금 ㅇ 사무용품 구입·복사·인쇄 책자발간, 간행물 구입 등 ㅇ 전화사용료, 유선방송 수신경비 등 공공요금 ㅇ 특근근무자 매식비 ㅇ 일·숙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ㅇ 사무실 유지·보수공사비,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등 ㅇ 기관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비 등(예 : 검사용 시약) ㅇ 업무출장, 직무교육 여비 등 ㅇ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파견 공무원 여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동호회 지원 등 ㅇ 기본 연구용역비 ㅇ 업무용차량 구입(교체) 및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ㅇ 사무용자산 구입(자산취득비), 업무출장, 직무교육 여비 등 □ 기준성 경비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ㅇ 공무원 대상 급식비 등 □ 교육훈련 경비 ㅇ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ㅇ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재료비 등 ㅇ 교육훈련여비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ㅇ 자산취득비 등

구 분	내 용
②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ㅇ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ㅇ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ㅇ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ㅇ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ㅇ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ㅇ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ㅇ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③ 사회복무 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등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심사와 집행 과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예산 편성 및 심사과정과 관련해서, 기본경비는 경상적 성격의 기관운영 경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율적인 내역을 존중하며 진행되는 반면, 주요사업비는 개별사업별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기준, 사업의 효과,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됨.

또한, 예산집행 과정과 관련하여, 기재부 집행지침은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별다른 제약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주요사업비는 유류비와 같은 일부 비목의 경우 타 비목으로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존재함.

이와 같은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소속기관이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기본경비 중에는 편성지침이 규정

하고 있는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인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와는 무관한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먼저, 지침과 다르게 기본경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례(**A유형**)를 살펴보면, 법무부는 기본경비를 이용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법무부가 범죄자의 재범방지 혹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인 '보호관찰활동(1635-300)'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18]

또한, 법무부에서 기본경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국제투자분쟁(ISDS) 맥락에서의 경제 금융제재 및 국제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경우, 주요사업인 '정부부처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체크리스트'와 같은 연관 연구가 이미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당 세부사업에 주요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B유형**).

18)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해당 예산은 주요사업비로 편성하기에는 소액이어서 불가피하게 기본경비로 편성하고 있고, 해당 용역은 정책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서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와는 구별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요사업비를 통해 특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와의 연관성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기본경비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임.

<지침을 위반하여 기본경비를 '집행'한 대표 사례>

(단위: 천원)

기본경비명 (코드번호)	사업 집행 내역	24년 집행액	업체명	관련 세부 사업(예시)[19]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A유형)	20,000	한국○○○ 정책연구원	보호관찰활동 (1635-300)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 노동시장의 변화(A유형)	20,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B유형)	31,000	한국○○○ ○○○연구원	이민정책 개발지원 (1231-300)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국제투자분쟁(ISDS) 맥락에서의 경제 금융제재 및 국제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B유형)	20,000	법무법인 (유)○○	정부부처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1431-300)

다음으로, 기본경비로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법무부는 기본경비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비용을 편성하고 있는데, 비록 동 예산이 법무부 기록관의 인건비나 시설유지비와 같은 기관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경비의 성격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예산에는 기본경비성 비용보다, 동 조직의 핵심 업무인 기록물 보존처리, 이관 등과 관련된 장비도입, 작업환경구축, 용역비 예산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록물 관련 사업 중 형사사법기록관은 '검

19) 동 사례는 기본경비(7000번대 프로그램)에 부적합한 집행 예시이므로, 법무부가 수행업무의 성질 및 집행 실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보다 적합한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찰청시설운영(1333-300)’ 세부사업으로,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1041-301)’ 세부사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본경비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대표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7,626	234	-	-	7,860	7,151	-	709	5,566

<기록물 관련 사업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한 대표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041-301)	278	-	-	-	278	268	-	10	286
· 북한인권기록보존 관리시스템(DB) 운영	144	-	-	-	144	135	-	9	174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34	-	-	-	134	133	-	1	112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82,041	205	△1,796	-	80,450	80,128	-	322	82,703
· 형사사법기록관	2,005	-	-	-	2,005	1,505	-	500	2,005

통상 기본경비를 주요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부적합하게 편성·집행

하는 원인으로는, 주요사업비 재원이 부족하여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우회적으로 보충하여 집행하는 경우이거나, 관련 예산의 최초 편성 당시에는 사업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소규모 경비(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하여 추진한 뒤, 추후 사업이 확장·안정되어 주요사업비로 재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기본경비에 편성·집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앞서 제시된 일부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경비를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예산을 적절한 주요사업비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부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예산규모 적정성, 사업 효과성 등 검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 연말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점검 필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이 연구용역비(260목)로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414억 9,100만원이고, 3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 및 3억 1,0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21억 2,800만원이며, 이 중 411억 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 및 6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연구용역비(260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연구용역비(260)	41,491	327	310	-	42,128	41,166	330	631	20,596
·일반연구비(260-01)	38,435	217	270	-	38,922	38,129	236	556	17,779
·정책연구비(260-02)	3,056	110	40	-	3,206	3,037	94	75	2817

연구용역비(260목)는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이나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비용임.[20]

2024년 법무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건으로, 부서

20) 기획재정부「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86p.~190p.

별로는 검찰국 46건, 법무실 25건, 범죄예방정책국 14건 순으로 많고, 기획조정실 및 법무연수원 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부서별 연구용역(260목) 실시 건수>

(단위: 건)

연도	기획조정실·연수원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합 계
2022	6	24	46	14	9	-	5	12	116
2023	6	16	47	10	8	4	5	9	105
2024	4	25	46	14	5	9	9	11	123

그런데, 2024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중 이월 등의 사유로 단년도에 종료하지 못한 대표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연구용역 중 4/4분기에 시작하여 단년도에 미종료된 사례>

과업명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총액 (백만원)	선금 지급액 (백만원, 일자)	잔금 지급액 (백만원, 일자)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 연구(㉮)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 연구	2024. 10. 18.	2024. 10. ~ 2025. 3. **(A유형)**	20	16 (2024. 11. 29.) **(B유형)**	4 (2025. 4. 21.)
북한이탈주민 대상 형사정책 개선 방안(㉯)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감안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는 기소유예의 요건, 기소유예 조건의 설정, 그에 따른 예측효과 등에 관한 연구	2024. 11. 14	2024. 11. ~2025. 3. **(A유형)**	22	11 (2024. 11. 27.) **(C유형)**	11 (2025. 5. 2.)

과업명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총액 (백만원)	선금 지급액 (백만원, 일자)	잔금 지급액 (백만원, 일자)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수용자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한 형사처벌을 통한 위하력 강화를 위하여 즉결심판 제도의 교정기관 적용 가능성 검토	2024. 9. 10.	2024. 11. ~ 2025. 5. **(A유형)**	25	–	25 (지급 예정)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초안 작성	2024. 11. 21.	2024. 11. ~ 2025. 7. **(A유형)**	20	16 (2024. 12. 17.) **(B유형)**	4 (지급 예정)
가석방심사위원회 개편방안 연구(㉱)	공정하고 심도있는 가석방 제도 운영을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 등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모색	2024. 10. 10.	2024. 11. ~ 2025. 5. **(A유형)**	20	18 (2024. 12. 16.) **(B유형)**	2 (지급 예정)
대북제재 위반 선박 대응 및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 대응의 단계별·사안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2024. 12. 18.	2024. 12. ~ 2025. 3. **(A유형)**	22	11 (2024. 12. 24) **(C유형)**	11 (2025. 5. 16.)
독일 통일 후 공직통합 관련 분쟁사례 연구(㉳)	독일통일 후 공직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법적 분쟁사례 및 그에 대한 독일의 후속 조치·법제 연구	2024. 12. 24.	2024. 12. ~ 2025. 3. **(A유형)**	22	11 (2025. 2. 7.)	11 (2025. 5. 16.)
통일한국 형사처벌 절차의 쟁점 연구(㉴)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그 법치국가적 한계 등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북한법상 처벌불가능한 범죄 및 처벌가능 이론 등을 확인	2024. 12. 24.	2024. 12. ~ 2025. 4. **(A유형)**	22	–	22 (지급 예정)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제도 분석을 통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제도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2024. 12. 27.	2024. 12. ~ 2025. 3. **(A유형)**	20	16 (2025. 1. 16.) **(B유형)**	4 (지급 예정)

첫째,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4/4분기에 추진하거나 연말에 추진한 과업들이 존재하고 있음(**A유형**).

4/4분기에 추진한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 연구(㉮)'의 경우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연구기간을 넉넉히

확보한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고 할 것임.

특히, ‘대북제재 위반 선박 대응 및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 ‘독일 통일 후 공직통합 관련 분쟁사례 연구(㉯)’, ‘통일한국 형사처벌 절차의 쟁점 연구(㉰)’,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제도 분석을 통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으로 시급히 추진될 주제가 아님에도 사업공고를 12월 연말에 시작하고 사업비를 이월한 후 차년도 5월~7월에 종료한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향은 2024년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래표와 같이 2023년 및 2022년에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오랜기간 동안 잘못된 관행을 정착시켜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 시정이 필요할 것임.

<2022년~2023년 연구용역 중 4/4분기에 시작하여 단년도에 미종료된 사례>

과업명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총액 (백만원)	선금 지급액 (지급일자)	잔금 지급액 (지급일자)
의사록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사록 인증의 의의와 종류, 법적 성질, 현행법상 의사록 인증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사록 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2022. 11. ~ 2023. 3.	10	7 (2022. 12. 27.) **(B유형)**	3 (2023. 5. 19.)
전자공증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및 현행 우리나라 전자공증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2022. 11. ~ 2023. 3. **(A유형)**	10	7 (2022. 12. 26.) **(B유형)**	3 (2023. 5. 19.)
전자주주총회 도입 위한 입법 방안 연구(㉲)	전자주주총회 도입 위한 입법 방안	–	2022. 12. ~ 2023. 1. **(A유형)**	35	18 (2022. 12. 20.) **(C유형)**	17 (2023. 2. 7.)

과업명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총액 (백만원)	선금 지급액 (지급일자)	잔금 지급액 (지급일자)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위한 연구	교도관 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함	2022. 11. 4.	2022. 12. ~ 2023. 5. **(A유형)**	25	-	25 (2023. 6. 28.)
캄보디아 조정제도 활용 방안 연구(㉮)	캄보디아 조정제도 활용 방안 연구	2022. 12. 05.	2022. 12. ~ 2023. 1. **(A유형)**	10	8 (2022. 12. 22.) **(B유형)**	2 (2023. 3. 13.)
등록증지위확인시스템 구축	등록증지위확인시스템 구축	2022. 12. 1.	2022. 12. ~ 2023. 5. **(A유형)**	264	184 (2022. 12. 23.) **(B유형)**	80 (2023. 5. 24.)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법제 연구	재외 탈북민의 국제법적 지위 분석, 우리 국내 법제상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분석, 제3국의 탈북민 관련 법제 및 개관 연구	2023. 11. 24	2023. 11. ~ 2024. 1. **(A유형)**	22	11 (2023. 12. 8.)	11 (2024. 3. 11.)
반독점행위 관련 소송에서의 경제분석 연구	반독점행위 관련 소송에서의 경제 분석	-	2023. 12. ~ 2024. 6. **(A유형)**	20	-	20 (2024. 7. 17.)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2023. 12. ~ 2024. 5. **(A유형)**	20	-	20 (2024. 6. 26.)
리걸테크를 활용한 사건예측 서비스 등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리걸테크를 활용한 사건예측 서비스 등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	2023. 12. ~2024. 6. **(A유형)**	20	-	20 (2024. 7. 1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관한 권리 연구(㉯)	가족결합권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분석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의 제시 등	2023. 12. 4.	2023. 12. ~ 2024. 2. **(A유형)**	18	7 (2023. 12. 18.) **(C유형)**	11 (2024. 3. 21.)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관련 법무정책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실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정책개발	2023. 12. 1.	2023. 12. ~ 2024. 2. **(A유형)**	18	7 (2023. 12. 18.) **(C유형)**	11 (2024. 5. 7.)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 운영 방안(㉰)	캄보디아 신설기구인 NADR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2023. 12. 22.	2023. 12. ~ 2024. 3. **(A유형)**	10	7 (2023. 12. 26.) **(B유형)** **(C유형)**	3 (2024. 12. 12.)

둘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선급금(선금) 지급의 적절성 점검이 필요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B유형**).

상기 표의 2024년도 사례 중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 연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제도 분석을 통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는 80%(계약금 2,000만원 중 1,600만원 지급)를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가석방심사위원회 개편방안 연구(㉳)'의 경우에는 90%(계약금 2,000만원 중 1,800만원 지급)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음.

이는 「국고금 관리법」과 관련 법령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21] 기재부가 2024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통해 선금 지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상반기)이나, 100분의 100(하반기)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임.[22]

하지만 동 규정은 선금을 조건 없이 한도만큼 일괄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추진 경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라는 취지인데,

---

21)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22)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각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선금 지급 한도는 2024년 상반기는 100분의 80을, 하반기는 100분의 100으로 확대한 바 있음.

통상 선금을 50% 수준으로 지급한 다수의 타 사례들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사례들(㉮㉰㉵)만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한 것은 연말에 급히 추진한 연구용역비의 집행률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금집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2022년 ‘캄보디아 조정제도 활용 방안 연구(㉲, 1,000만원, 80% 선금 지급)’, 2023년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 운영 방안(㉳, 1,000만원, 70% 선금 지급)’과 같이 매년 동일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연말 선지급 비율이 높은 연구용역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을 착수하자마자 선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선금 집행 시기는 문제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C유형**).

상기 표에서 2024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형사정책 개선 방안(㉯)’ 과제는 11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월에 선금 50%를 바로 지급하였고, ‘대북제재 위반 선박 대응 및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 역시 계약을 체결한 12월에 선금 50%를 바로 지급하는 등 사업 착수 시점에서 바로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마찬가지로 2022년 ‘전자주주총회 도입 위한 입법 방안 연구(㉴)’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관한 권리 연구(㉷)’ 등에서도 동일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연말에 선금을 너무 빨리 지급한 것은 아닌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①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자 무리하게 연말에 계약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사업 진척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 즉시 선금을 바로 지급하여 집행률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키려는 경우,

② 연초부터 연구과제 선정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아 전반적인 지연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연말에 급박하게 선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③「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정책연구심의위원회」및 「소위원회」와 같은 모니터링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정책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등이라 할 것임[23].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사례(A~C유형)를 참고하여 소관 내 사업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점검 유형별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연구 용역이 보다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이 필요함.

---

2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2-300),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301)

▢ 결산 개요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변화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효율적 행정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6억 800만원이며, 이 중 5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08	-	-	-	608	532	-	76	608
• 변화관리교육	495	-	-	-	495	443	-	52	495
• 제도개선추진	46	-	-	-	46	23	-	23	46
• 자문단 운영	67	-	-	-	67	66	-	1	67

한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은 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민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 실무 교육 등을 진행하고, 법무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민원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이 중 9,4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 정책 피드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 정책 피드백	120	-	-	-	120	94	-	26	120

▢ 연례적 집행부진 주의 필요

두 사업은 법무부의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부 및 소속기관 전체 차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민원 업무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중요성이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사업의 집행실적은 전반적·연례적으로 부진하였음.

먼저,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2-300)' 사업의 경우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위하여 매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액은 매년 5억원 내외에 그쳐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8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13	613	△14	599	471	76.8	78.6	128
2022	613	599	-	599	504	84.1	84.1	95
2023	613	613	-	613	462	75.4	75.4	151
2024	608	608	-	608	532	87.5	87.5	76
2025	608	608						

자료: 법무부

특히, 이 중에서도 “선진 행정업무 개선 시스템 현지 조사”를 명목으로 편성된 국외여비(220-02)의 경우 지난 2019년 캐나다 토론토 소재 구치소 등 방문 이후 5년간 전혀 집행액이 없으며, 그 밖에도 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301)’ 사업의 경우 민원 담당자 교육 등을 위하여 매년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3.3%에 불과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 정책 피드백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20	120	-	120	77	64.2	64.2	43
2022	120	120	-	120	86	71.7	71.7	34
2023	120	120	-	120	95	79.2	79.2	25
2024	120	120	-	120	94	78.3	78.3	26
2025	120	120						

자료: 법무부

또한, 이 사업의 경우에도 “민원·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을 명목으로 편성된 국외여비(220-02)가 위 2019년 캐나다 토론토 출장에 함께 집행된 이후 5년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24)]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코로나-19 기간동안은 그 영향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2024년도의 경우 방문기관·일정 미확정 등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두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률 70~80% 수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향후 법무부는 이러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4) 한편, 이 사업에 편성된 임차료(210-07) 예산 또한 2023년 일부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전액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법무부가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힐링워크숍을” 실제로는 매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따라 임차료를 직접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워크숍 관련 비용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일반수용비(210-01)도 위탁실시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로 매년 세목조정되고 있음(2024년 기준 3,587만원).

(3)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결산 개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는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및 내부포털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고, 형사사법시스템(KICS) 중 보호관찰·소년보호·출입국 등 관련 시스템과 범죄예방·교정 등 정보시스템 및 기타 정보화 기반 등을 운영하는 정보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391억 1,700만원이며, 이 중 38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39,117	–	–	–	39,117	38,272	–	845	41,485
·법무정보 · 사이버 보안시스템 운영	6,740	–	△128	–	6,612	6,548	–	64	6,370
·형사사법시스템 (법무부) 운영	1,600	–	132	–	1,732	1,732	–	–	–
·범죄예방정보 시스템 운영	1,658	–	–	–	1,658	1,552	–	106	1,931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7,274	–	70	–	7,344	7,291	–	53	6,026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7,087	–	△74	–	17,013	16,429	–	584	16,784
·정보화사업 (ISP포함)	4,758	–	–	–	4,758	4,720	–	38	10,374

▢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이용절차 준수 필요

「국가재정법」 제21조[25]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은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같은 법 제47조[26]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간에 예산을 상호 이용(移用)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이나 환율변동·재해 등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25)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6)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법률에 따른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계약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였음.

먼저, 법무부는 “23-24년 PC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세부사업(7034-500)과 프로그램이 다른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을 본 사업(7034-500)의 관리용역비(210-15)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음.[27)]

<2024년도 정보화사업 중 예산 혼용 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업 체	기 간	2024년 집행예산		
				프로그램명 (코드번호)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액 (비목)
23-24년 PC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	1,691	한○○○㈜, ㈜퓨○○○	24.1.~ 24.12.	**교정활동 (1500)**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34 (210-09)
				법무 및 검찰 행정 지원 (7000)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7034-500)	1,680 (210-15)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610	주식회사 아○○○	24.1.~ 24.12.	**법무교육훈련 (5100)**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101 (210-09)
				법무 및 검찰 행정 지원 (7000)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7034-500)	577 (210-1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27) 한편, 위 계약은 PC 등 사무용 전산기기 일체에 대한 장기간의 지속적 유지·관리 용역계약이라는 점에서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직접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일부 함께 집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지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본 세부사업(7034-500)과 프로그램이 다른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 운영 및 개선(5131-301)’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을 본 사업(7034-500)의 관리용역비(210-15)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음.[28)]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유사한 과업의 두 사업을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로 발주하기보다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조달 공고 및 평가 등에 따른 행정력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경비 감소 등 예산 절감이 기대됨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임의로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이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장·관·항 및 사업 간 구분을 따르지 않고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28) 위 계약의 경우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어 2025년부터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임.

(4)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결산 개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은 법무부의 각종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8억원이고, 이 중 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00	-	-	-	800	754	-	46	811
·홍보사업비	383	-	-	-	383	383	-	-	383
·근로자 인건비	368	-	-	-	368	322	-	46	379
·홍보업무 운영비	49	-	-	-	49	49	-	-	49

▢ 법무부 유튜브 홍보업무 성과 제고 등 운영 활성화 필요

법무부는 '법치행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 쌍방향 소통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운영하고 있음.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하여 총 5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으며, 그 중 PD 2명, 작가 1명은 공무직임.

<법무부 유튜브 채널 운영 인력 현황>

(단위: 천원)

운영 매체	직 무	직 위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무부TV'	운영 총괄	일반임기제 서기관 (콘텐츠 기획 겸임)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임기제 다급 1명 공무직 **PD 2명** 공무직 **작가 1명**

자료: 법무부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근로자 인건비'에서 홍보 업무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29]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유튜브 운영 공무직 근로자 3인의 인건비로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근로자 인건비 사업 결산내역(비목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비목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근로자 인건비	368	-	-	-	368	322	-	46	379
· 상용임금 (110-03)	304	-	-	-	304	264	-	40	314
· 복리후생비 (210-12)	4	-	-	-	4	4	-	-	4
· 고용부담금 (320-09)	60	-	-	-	60	54	-	6	61

29) 온라인 미디어 운영, 공보업무지원 등을 위해 공무직 7인 채용 중
- 법무부 대변인실 운영 온라인 미디어 :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네이버 및 티스토리 블로그

그런데 2024년 법무부 유튜브 운영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살펴보면, 조회수와 구독자수 모두 2023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음. 특히 게시 영상수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64→78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은, 채널 개설 목적이었던 '쌍방향 소통을 통한 법무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법무부 유튜브 '법무부TV' 운영 현황>

구 분	2023	2024	증감
채널 영상 조회수	10,076,078회	7,915,578회	△2백만회
채널 구독자수	130,721명	123,807명	△7천명
게시 영상수	64개	78개	14개↑

자료: 법무부

또한, 19개 정부부처 공식 유튜브의 조회수 및 구독자수와 비교하여 살펴보아도 저조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TV 구독자수는 전체 19개 부처 중 8위 규모인데 반하여, 게시물수 및 조회수는 각각 18위, 15위로 구독자수 대비 게시물수와 조회수가 아주 낮은 수준임.

<대한민국 19개 부처 공식 유튜브 운영 현황>

(2025년 6월 23일 기준, 구독자수 기준 정렬)

연번	부처명	개설일	구독자수 (명)	게시 영상수 (개)	조회수 (회)
1	농림축산식품부	2016. 12. 27.	252,000	2,294	203,549,439
2	국토교통부	2011. 3. 9.	222,000	4,567	124,789,714
3	문화체육관광부	2010. 7. 9.	155,000	2,587	41,526,714
4	보건복지부	2011. 4. 25.	132,000	5,389	297,204,630
5	국방부	2010. 4. 16.	131,000	1,889	90,965,153
6	고용노동부	2011. 6. 27.	131,000	1,517	59,849,492

연번	부처명	개설일	구독자수 (명)	게시 영상수 (개)	조회수 (회)
7	환경부	2010. 11. 4.	128,000	2,707	155,862,187
8	**법무부**	**2012. 10. 24.**	**122,000**	**1,004**	**50,778,337**
9	행정안전부	2013. 3. 23.	109,000	3,245	109,345,234
10	통일부	2010. 7. 25.	98,300	3,765	57,429,266
11	외교부	2013. 3. 22.	94,800	1,878	67,191,639
12	교육부	2013. 3. 8	93,300	2,581	56,150,232
13	국가보훈부	2012. 5. 24.	86,800	2,179	60,148,172
14	산업통상자원부	2013. 3. 18.	82,200	2,452	63,825,479
15	해양수산부	2013. 4. 15.	81,600	2,134	42,687,830
16	중소벤처기업부	2010. 11. 12.	67,400	3,451	87,298,155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3. 4. 19.	66,700	2,008	28,965,481
18	기획재정부	2010. 6. 11.	53,100	2,064	67,564,048
19	여성가족부	2011. 4. 29.	43,100	1,454	100,143,808

자료: 각 유튜브 채널 직접 확인

한편, 법무부는 2021년 개편 이후 채널 카테고리를 ① [법TV] 법무부 소식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② [캠페인] 다양한 정책을 알리는 캠페인 영상, ③ [법무부TV] 라이브, ④ [법무부 내부자들] 법무부TV가 만난 법무부 사람들 이야기의 총 4가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법무부 내부자들] 카테고리는 마지막 영상이 2년 전에 게시된 이후 추가 콘텐츠가 없고, 채널 전체적으로도 가장 최근 영상이 1개월 전에 업로드 되었음. 이는 채널 운영이 국민과의 실질적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콘텐츠 생산·게시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함.

〈법무부 유튜브 카테고리 현황〉

(2025년 7월 9일 기준)

[법TV]	[캠페인]	[법무부TV] 라이브	[법무부 내부자들]
[법TV] 법무부 소식 가장 ㅌ	[캠페인]다양한 정책을 알	[법무부TV] 라이브 ▶ ㄸ	[법무부 내부자들]법무부ㅌ
			
e-Arrivalカード、5W1Hでかんたんにチェック！| 법tv	먹튀공탁 No! 기습공탁 No!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2025년...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양학선 선수 법무부 홍보대사 되고 달라진 점은?	법tv
법무부TV 조회수 43만회 · 1개월 전	법무부TV 조회수 29만회 · 5개월 전	법무부TV 조회수 5.2천회 · 스트리밍 시간 1개월 전	법무부TV 조회수 6.9만회 2년 전

또한, 가장 최근 [법TV] 카테고리에 게시된 동영상은 오직 일본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영상[30]으로, 채널의 주요 목적이 국민과의 소통임을 감안할 때, 한국어 자막이나 설명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향후에는 영상 업로드 전 영상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쌍방향 법무정책의 효과적 홍보 및 대국민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 업로드 주기를 단축하고, 영상 내용 적절성 확인 등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며, 영상 시청실적 및 구독자수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법무부 유튜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0)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상은 외국인의 전자입국신고에 관한 것으로, 한국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이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어로 제작한 것으로, 일본어 영상 게시 한달여 전에 한국어 영상을 먼저 게시하였다는 입장을 밝혔음.

(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038-301)

▢ 결산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 해경, 검찰의 시스템 구축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297억 2,200만원이며, 이 중 296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	29,722	-	-	-	29,722	29,697	-	25	20,751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27,903	-	-	-	27,903	27,902	-	1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감리	385	-	-	-	385	385	-	-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PMO	940	-	-	-	940	940	-	-	-
• 조달수수료	206	-	-	-	206	187	-	19	171
• 추진단 운영비	288	-	-	-	288	283	-	5	-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	-	-	-	-	-	-	20,580

▢ 대금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및 재발방지 필요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LG CNS 컨소시엄(이하 “LG CNS”)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KICS”)’의 구축을 위하여 총 1,296억 7,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사업기간은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 후 2028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협의 및 조달공고기간 장기화(2회 유찰)로 2021년 12월에 이르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축 및 운영 기간이 각각 2024년 및 2029년까지로 1년씩 순연된 바 있음.

LG CNS는 위 계약에 따라 2024년 9월 차세대 KICS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임. 그러나 최근(2025년 4월) LG CNS는 본 구축사업의 계약대금에 대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31]에 조정을 청구한바 있음.[32]

LG CNS가 주장하는 조정청구 사유는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도중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에서 추가 과업을 요구하여 당초 계약체결 시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생략)

32) 전자신문, “LG CNS,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분쟁위 간다”, 2025. 5. 7.

점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법무부는 133억 3,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임.[33]

LG CNS는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1월에도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506억 4,200만원 추가 증액)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법무부 과업심의위원회[34]는 LG CNS가 제출한 과업변경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LG CNS에서 증액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분쟁조정을 청구하게 된 것임. 이후 법무부는 조정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위원회의 조정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의 사업기간으로 대외 환경 변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33) LG CNS 측은 사업시행 직전 법·제도 변경에 따라 10개 과업이 추가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사업시행 도중 추가요구사항이 25건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업비 증가 등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 지출이 발생함은 물론,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있어 최근 정부 부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법무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음.

실제 2024년에는 법원행정처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인 LG CNS와 계약대금 증액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가 있었고, 조정결과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35]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계약대금 등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 해지되기도 하였으며,[36] 결국 사업자인 LG CNS가 보건복지부에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37]

따라서 법무부는 우선 현재 차세대 KICS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에 있어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필요 과업의 구체적 내용과 소요비용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수립·산출하고 사업자와

35) 머니투데이, "4년 공들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또 연기되나…용역대금 놓고 분쟁", 2024. 8. 28.
36) 이데일리, "복지부-LG CNS 컨소, 계약 해지 수순…'책임소재 공방' 본격화", 2023. 10. 20.
37) 조선비즈, "공공사업 수주 LG CNS 컨소, 복지부에 소송 제기", 2024. 7. 12.

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도 사업기간 설정 등을 협의하는 등,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증액 요구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6)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

▢ 결산 개요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은 노후되고 협소한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수용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8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9억 9,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38억 4,000만원이고, 이 중 88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10,843	2,997	-	-	13,840	8,874	3,175	1,791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200	-	-	-	200	198	-	2	200
·수용동 리모델링	733	-	-	-	733	680	-	53	733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	-	-	-	1,385	1,280	-	105	1,385
·기타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	-	-	1,823	1,735	-	88	1,823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2,980	-	-	2,980	2,952	-	28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3,625	17	-	-	3,642	706	2,799	137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1,421	-	-	-	1,421	644	-	777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721	-	-	-	721	333	-	388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리모델링	744	-	-	-	744	346	376	22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191	-	-	-	191	-	-	191	-

▢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내역사업인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리모델링 하여 만성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생활거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36억 4,200만원 중 27억 9,900만원[38]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은 대구소년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바, 예산현액 1억 9,100만원 전액[39]이 불용되었으며, 사업기간도 최초 3년에서 2025년 기준 5년으로 연장되었음.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사업 개요 등>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경기 지역 내 소년부 심리 상담 법원은 4개이나 위탁소년을 수용, 교육하는 소년보호기관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유일하며, 이에 따라 만성적인 과밀수용이 초래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거실 확충이 필요 ○ **사업규모** : 부지 19,683㎡, 건물연면적 6,298㎡ 중 1,590㎡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총사업비	○ **총사업비** : 3,779백만원 - 설계비 : 154백만원, 공사비 3,578백만원, 감리비 38백만원, 시설부대비 9백만원

38) 공사비 27억 5,600만원, 감리비 3,4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39) 기본조사설계비 8,7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400만원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3년	‘24년	‘25년
	총 계	3,779	56	3,622	-
	기본설계비	62	38		-
	실시설계비	92	56		-
	공 사 비	3,578		3,578	-
	감 리 비	38		35	-
	시설부대비	9		9	-

자료: 법무부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개요 등>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탁소년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 ’13년 대구소년원 보호소년 생활관은 리모델링 완료 ○ **사업규모** : 부지 33,994㎡, 건물연면적 1,743㎡(지상 2층) ○ **사업기간** : (변경) 2024 ~ 2028(5년), (기존) 2024 ~ 2026(3년)
총사업비	○ **총사업비** : 4,168백만원 (※ ‘25년 국유기금 예산 편입) - 설계비 : 191백만원, 공사비 3,922백만원, 감리비 42백만원, 감리비 13백만원

연도별 집행계획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3년	‘24년	‘25년 이후
	총 계	4,168	191	-	4,168
	기본설계비	87	87	-	87
	실시설계비	104	104	-	104
	공 사 비	3,922		-	3,922
	감 리 비	42		-	42
	시설부대비	13		-	13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와 같은 예산 미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본 공사 이전에,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설계 이전에 진행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서 내진보강공사를 선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본 공사를 위한 공사비·설계비

등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리모델링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3,642	706	2,799	137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실시설계비(420-02)	17	17	-	-
공사비(420-03)	3,578	689	2,756	133
감리비(420-04)	38	-	34	4
시설부대비(420-05)	9	-	9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191	-	-	19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87	-	-	87
실시설계비(420-02)	104	-	-	104
공사비(420-03)	-	-	-	-
감리비(420-04)	-	-	-	-
시설부대비(420-05)	-	-	-	-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40]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41]

---

4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및 대구소년원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그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42]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2002년,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의 경우 1999년에 각각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건축물이므로,[43] 사업 착수 전 내진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43)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
-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의무제도 최초 도입.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내진설계 의무화
- 1995년: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기준 완화
-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의무대상 확대
- 201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 2016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 연면적 기준이 500㎡ 이상에서 200㎡ 이상(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으로 확대

성능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설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회계연도 예산에 공사비 등을 일괄하여 편성하였고, 계획에 없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설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상황 등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사업 전년대비 사업공정 변경 현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23년</th><th colspan="4">'24년</th><th colspan="4">'25년</th></tr>
<tr><th>1Q</th><th>2Q</th><th>3Q</th><th>4Q</th><th>1Q</th><th>2Q</th><th>3Q</th><th>4Q</th><th>1Q</th><th>2Q</th><th>3Q</th><th>4Q</th></tr>
<tr><td>2023
계획</td><td>사업
기획</td><td>설계
발주</td><td>기본
설계</td><td colspan="3">실시설계,
선행공사발주</td><td>석면해체
내진보강</td><td colspan="3">본 공사</td><td>개
청</td><td></td></tr>
<tr><td>2024
현황</td><td></td><td>설계
발주</td><td>기본
설계</td><td>내진
성능
평가
완료</td><td>실시
설계</td><td colspan="2">내진보강 공사
발주 · 진행</td><td>실시설계
완료
·
공사발주</td><td colspan="2">본 공사</td><td colspan="2">준공
(11.14.)</td></tr>
</table>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24년 기준 법무부 소관 교정·법무시설 및 청사·관사시설 1,870개 중 20년 경과 시설은 1,423개(전체 시설의 76%)인바,[44]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44) **<법무부 소관 법무시설(교정·보호시설 포함) 경과연수 별 건축물 개수 현황>**

연도	30년 경과	25년~30년	20년~25년	15년~20년	10년~15년	5년~10년	5년 미만
청사, 관사 등	422	584	262	161	128	70	34
교정시설	87	20	36	5	11	16	13
법무시설	4	1	7	2	1	4	2
합계	513	605	305	168	140	90	49

자료: 법무부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철저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 결산 개요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법무부 기록관이 2024년 1월 수원시에 건립됨에 따라 기록관 운영, 시설유지·관리 및 기록물 보전처리를 위한 운영비·인건비·시설장비 도입비 등을 지원하여 기록물의 장기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76억 2,600만원이고, 2억 3,4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8억 6,000만원이며, 이 중 7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부 기록관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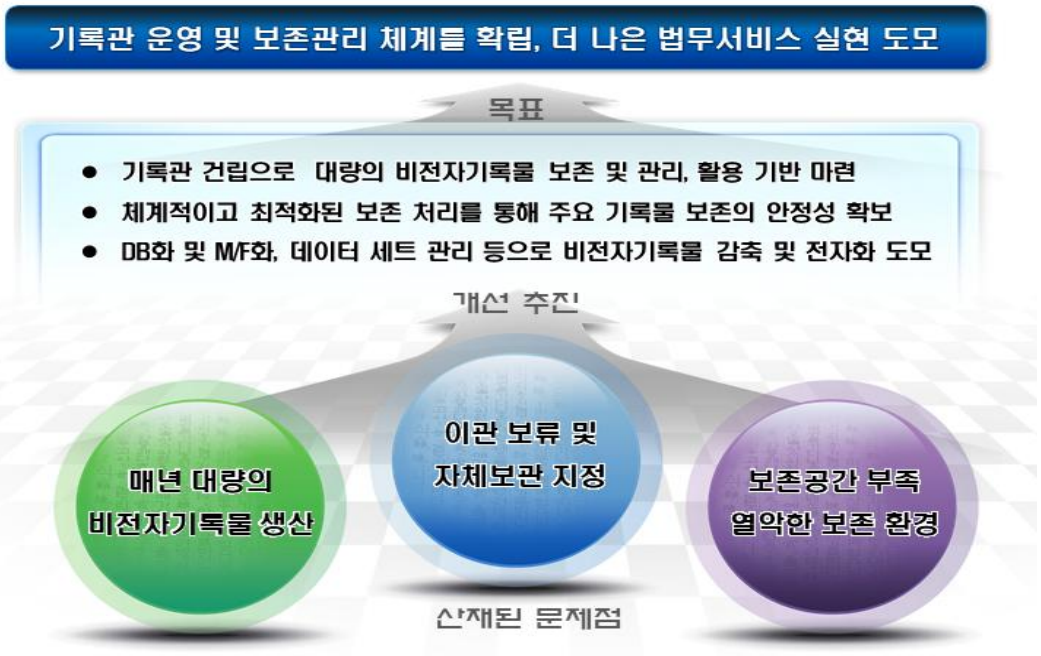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234	-	-	7,860	7,151	-	709	5,566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234	-	-	7,860	7,151	-	709	5,566

▢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국가기록원은 2015년 3월 법무부의 보존공간 부족을 이유로 법무부 기록물 일체 이관 보류를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해 자체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기록관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020년 공사 착공, 2024년 1월 기록관 준공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법무부는 기록관 운영사업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비전자기록물 감축 및 전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개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된 이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라 1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국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집행으로 시정을 받은 바 있음.

<동 세부사업의 과거 지적사항 및 조치경과>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후속 조치 경과
'24년 회계연도 예산 검토보고서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감액 조치(△114백만원)
'23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 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이처럼 다양한 지적과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2024년 추진한 동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시정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사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연초부터의 사업의 면밀한 추진과 관리는 미흡해 보이는바,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사업추진 시기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매년 반복적이고 정례화되어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에는 6월에 사업공고를 진행하고 8월에 계약을 하였고,

2024년의 경우에는 4월이 되어서야 사업공고를 진행하여 5월에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함.

<2023년, 2024년 법무부 기록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수행 업체명	계약방식	사업 공고일	계약 기간	계약 총액	선금 (집행일)	잔금 (집행일)
2023년	㈜디앤디 기술	경쟁→수의 (단일응찰)	23.6.1.	23.8.~ 24.1.	214	150 (23.9.12.)	64 (23.12.29.)
2024년	㈜디앤디 기술	일반경쟁	24.4.15.	24.5.20.~ 24.12.	2,200	1,540 (24.5.29.)	660 (24.12.20.)

따라서 사업의 연초 미시행 등의 사항은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인바, 법무부는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즉각 시정함으로써, 사업이 향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법무실

(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1031-300)

▢ 결산 개요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은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각 정부부처를 지휘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법률구조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40억 2,200만원이고 2억 3,700만원이 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37억 8,500만원인데, 이 중 36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800만원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4,022	–	△237	–	3,875	3,677	–	108	2961
• 소송 및 자문예산	700	–	△215	–	485	485	–	–	700
• NDSL 운영경비	2,734	–	–	–	2,734	2,675	–	59	1,676
• 송무관련 운영경비	588	–	△22	–	566	517	–	49	585

▢ 공익법무관 배치 적정성 검토 필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장관이 임용하여 법률구조업무[45]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46]에 종사하는 임기제공무원[47]으로서, 「병역법」[48]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병역을 대체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등에 총 171명이 배치되어 있음.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단위: 명, 2025. 5. 기준)

구분	법무부	검찰청	소송수행청*	법률구조공단	기타	총계
배치인원	81	38	18	31	3	171

* 소송수행청 : 법무부 국가소송과 소속으로 각 소송수행청에서 파견 근무

자료: 법무부

45)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4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4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8)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7) 공익법무관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등 공적 목적이 강한 공익법무관의 업무 특성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익법무관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수는 감소하고 있어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이 줄고 수요 대비 충원률도 70%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추세임.

실제로, 2017년도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은 583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는 171명으로 2017년 대비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2017년 대비 필요 인원을 약 100명으로 줄였음에도 충원률 역시 2017년도 92.7%에서 2025년은 5월 기준 64%로 감소하였음.

〈2017년 및 최근 4년간 공익법무관 업무별 배치현황 및 충원률〉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전체인원		583	142	122	131	171
업무	법률구조	255	31	20	21	31
	국가송무	328	111	102	110	140
충원률	필요인원(A)	192	100	100	100	100
	충원인원(B)	178	28	40	68	64
	충원률 (B/A)	92.7%	28%	40%	68%	64%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공익법무관의 신규임용자 수 및 충원률 감소원인에 대해 법무부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법무사관후보생[49] 수가 많았으나,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숫자는 감소한 반면, 법무사관후보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하는 군법무관의 수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의 대폭 감소로 인한 국가기관의 소송수행·법률구조 등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 2024년 6월 기준 총 51명을 선발·배치하였음.

그러나,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이고 6개월 한정으로 선발·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 잦은 조기 퇴직으로 업무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등 위 제도가 공익법무관 감소 방지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2024년 법무실 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실제 근무기간별 인원 〉

(단위: 명)

3개월 미만	3개월~5개월	6개월 이하	총 인원
11	14	7	32

자료: 법무부

49) 법무사관후보생 중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을 충원함.

또한, 현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50]인 법률구조·국가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구조공단, 소송수행청이 아닌 법령검토나 법률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에 다수 배치(총원 171명 중 81명, 약 47%)하고 있음. 법률구조공단에는 2025년 현원 171명 중 31명만 배치하고 있는바, 법률구조·국가 송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확대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 추세로 법률구조·국가송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해당 지역 변호사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재배치 및 변호사 채용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공익법무관 감소 현황에 대응하고 배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 결산 개요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특별회계 소관, 국방부 소관 제외)으로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1,000억 원이고 이·전용 등 증액 77억 4,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077억 4,3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국가배상금 지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배상금 지급	100,000	-	7,743	-	107,743	107,743	-	-	131,765

▢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51]에 따라 배상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상 인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간 지급 규모 산출이 쉽지 않음.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52]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시 본부심의회 및 지구심의회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1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53] 단서는

---

5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2)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지급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배상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54]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55]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회계연도의 경우 2022년, 2023년과 달리 그 이·전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2024년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당초 편성된 예산액 1,000억 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법무실 소관 사업으로부터 2억 2,800만원을 내역변경하고, 법무부 소관 기관들의 인건비 등에서 75억 1,5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의견임.

<2024년도 국가배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10.3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10-01	9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231

55)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4).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10.3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10-01	103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내역변경 (2024.12.19.)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10-01	27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내역변경 (2024.12.19.)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10-02	5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내역변경 (2024.12.19.)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10-05	3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전용 (2024.10.31.)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210-01	5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전용 (2024.10.31.)	성장동력 확충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210-01	5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전용 (2024.12.19.)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20-01	9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전용 (2024.12.19.)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1041-300)	210-07	5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전용 (2024.12.19.)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1041-300)	220-02	1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210-01	국가송무 업무 수행 (감정료, 송달료 등 부족)
이용 (2024.12.26.)	교도소운영인건비 (7002-103)	110-01	2,9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부족
이용 (2024.12.26.)	검찰청운영인건비 (7002-101)	110-01	1,0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부족
이용 (2024.12.26.)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 (7002-106)	110-01	5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부족
이용 (2024.12.26.)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 (7002-100)	100-01	5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부족
이용 (2024.12.26.)	법무연수원 인건비 (7002-102)	110-01	1,2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부족
이용 (2024.12.26.)	법무연수원 인건비 (7002-102)	110-02	1,3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부족
합 계			7,743			

자료: 법무부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과거사 사건의 경우 매우 오래전이고 보상 대상자도 많아 보상액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 등 절차를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음.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제출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도 있음.

이에 지난 2023년에도 예산 전용 등 부정확한 예산편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024년도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급증하였음.

<국가배상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1	150,000	108	150,108	124,450	83.0	82.9	25,657
2022	150,000	343	150,343	149,311	99.5	99.3	1,032
2023	100,000	254	100,254	100,253	100.2	99.9	1
2024	100,000	7,743	107,743	107,743	107.7	100.0	-
2025	131,765						

자료: 법무부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국가배상 사건의 진행 상황과 연도별 집행실적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배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함으로써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56]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법원의 결정 등이 필요한 현행 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국가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배상금의 분할 지급 등 예산집행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임.

5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 결산 개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은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세사업으로 법령 제·개정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자료집 발간, 중소기업 초청세미나,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선진법제포럼 개최 및 선진 상사법률연구 발간, 창업·중소기업 법률지원,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34억 원이고 2,000만원이 이월로 증액, 5,000만원이 이·전용되어, 예산현액은 33억 7,000만원인데, 이 중 3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600만원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결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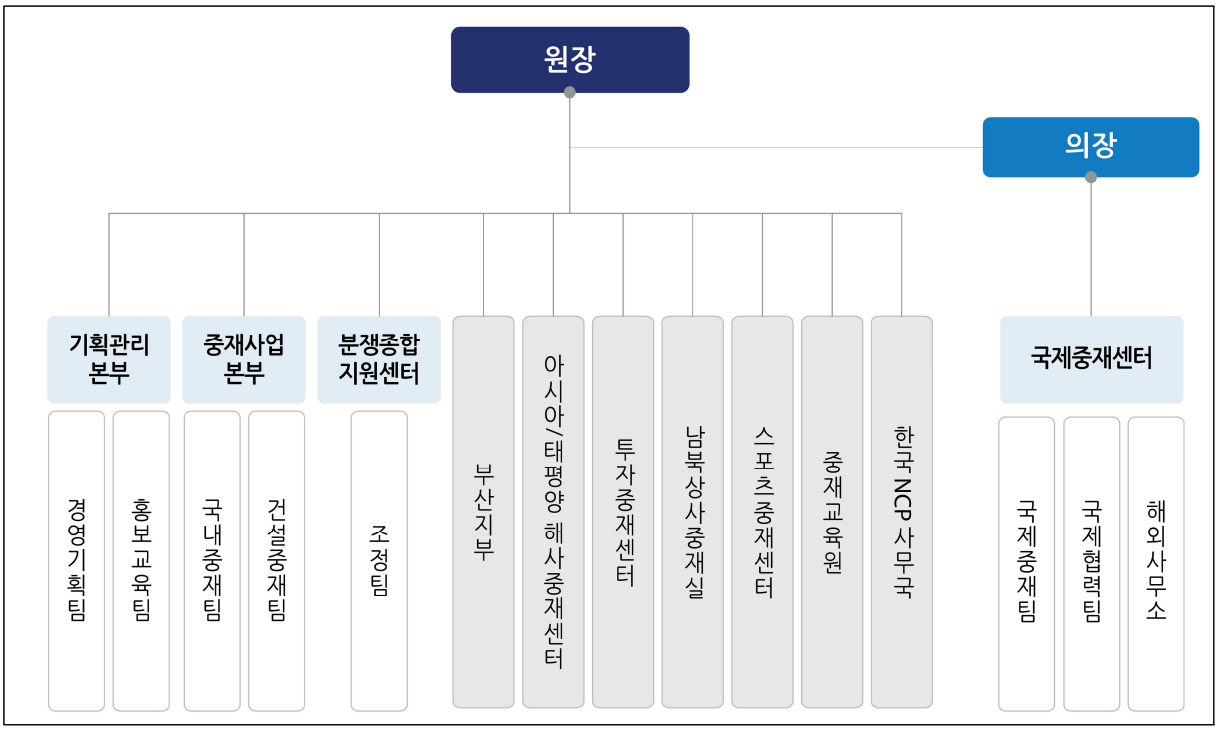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400	20	△50	-	3,370	3,354	-	16	2,595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57]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제정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58]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2024년 예산은 25억 7,8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대한상사중재원 조직도>



57)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당초 중재기관으로는 중재사건을 담당하는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시설을 운영하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국제중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8년 5월에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통합되었고, 서울국제중재센터의 기능은 대한상사중재원 내 의장직속의 “국제중재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었음.[59)60)]

지난 5년간 동 “국제중재센터”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12억 6,800만원, 2021년~2023년 13억 4,500만원, 2024년 13억 4,900만원이었음.

<최근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2,235	2,522	2,347	2,364	2,577
- 해외설명회	64	83	30	45	15
- 국제중재 행사개최	60	116	80	139	133
- 중재콘텐츠 강화	132	300	223	136	141
- 국제중재유치 강화 및 해외관리 인력	377	346	321	351	266
- 국내중재설명회	111	106	104	74	35
- 중재전문인력양성	223	226	244	274	188
- 국제중재센터 운영	1,268	1,345	1,345	1,345	1,349
-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	-	-	-	450

자료: 법무부

59)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재센터의 통합 이전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각각 심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중재 선진국의 시설에 비하여 규모가 협소하여 대형 국제중재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심리시설은 약 400㎡에 불과

60)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중재 심리시설인 맥스웰 체임버스와 유사한 규모의 중재시설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18년 4월 세계적 규모의 복합중재심리시설인 서울중재센터(’19. 2. 명칭 변경 서울중재센터 ->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가 개소하여, 물적 인프라를 갖추게 됨(연면적: 2,000㎡)
※ 중재원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심리시설 규모(4,500㎡)를 참고하였음

국제중재센터는 2019년 사건접수 70건 및 수수료 수입 약 8억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 접수 건수 48건 및 수수료 수입 약 5억원임.

국제중재유치 강화 등(약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4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보조금은 13억 4,900만원 정도이나 국제중재의 수수료 수입은 5억 700만원으로서, 국제중재의 국내유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대한상사중재원이 수임한 국내 · 국제중재사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중재사건	사건접수 건수	373	336	450	304	314	301
	수수료 수입	1,916	2,204	1,915	1,898	2,009	1,689
국제중재사건	사건접수 건수	70	69	50	38	54	48
	수수료 수입	795	694	634	328	344	507
합계	사건접수 건수	443	405	500	342	368	349
	수수료 수입	2,711	2,898	2,549	2,226	2,353	2,196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인력·시설 확충, 국내기업으로부터의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통하여 국제중재 유치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국제중재는 국제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이어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사건 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61]이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사건 중재 역량 강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재 등 대한상사중재원의 특성화 방안,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상대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국제중재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1) 참고자료: 해외 국제중재기관 현황 및 실적

[참고] : 해외 국제중재기관 현황 및 실적

※ 일반현황

기관명	주요내용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ICC ICA, 프랑스)	- 1923년 설립 - 중재기관 내에 합의체 의결기관인 중재법원(court)이 있고, 동 법원의 주도로 중재절차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 * 중재인 기피신청, 예납액 결정, 중재판정 심사 등 - 프랑스 파리(본부), 홍콩, 뉴욕 등 사무소 운영 중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AAA ICDR, 미국)	- 1926년 설립되었으며, 1996년 국제중재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국제분쟁해결센터를 산하기구로 설립하였음 -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서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최근 ICDR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뉴욕(본부), 싱가포르 등 사무소 운영 중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영국)	- 1892년 설립 - 영국법이 준거법인 중공업, 해외건설, 조선 관련 사건 등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 중재절차가 영국 소송제도에 친숙한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장을 영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중재전문가 35명을 상임위원(court member)으로 선임하여 이들이 중재법원(court)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 런던(본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사무소 운영 중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 싱가포르)	- 1991년 설립 - 최근 ICC와 마찬가지로 중재법원(court) 제도를 도입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동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싱가포르(본부),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대한민국 서울 등 사무소 운영 중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홍콩)	- 1985년 설립 - 다양한 국적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에 의해 운영되며, 주요 절차적 결정을 하는 위원회, 정책적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일상적 사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을 두고 있음 - 중국과 외국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홍콩(본부), 대한민국 서울에 사무소 운영 중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중국)	- 1956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된 후, 19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 중국 내 존재하는 중재기관(CIETAC, BAC, SHIAC, SCIA 등)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재기관으로 평가됨 - 중국 베이징(본부), 선전, 상하이, 톈진, 홍콩 등 사무소 운영 중

자료: 법무부

※ 기관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

연도	사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KCAB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78	62	70	69	50	38	54	48
	전체	385	393	443	405	500	342	368	349
ICDR	전체	1,026	993	882	704	685	755	848	미공개
ICC	전체	810	842	869	946	853	710	미공개	831
LCIA	전체	285	317	395	440	377	293	327	미공개
SIAC	전체	452	402	479	1,080	469	357	663	625
HKIAC	전체	297	265	308	318	277	344	281	352
CIETAC	국제	476	522	617	739	636	642	645	758
	전체	2,298	2,962	3,333	3,615	4,071	4,086	5,237	6,013

자료: 법무부

(4)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 결산 개요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은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예방 강화, 마을 변호사 제도운영 등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업무 수행 등을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7억 4,4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억 8,400만원이며, 이 중 7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00만원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44	40	-	-	784	778	-	6	779
·법조윤리협의회 민간경상보조	232	-	-	-	232	232	-	-	232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필요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8조[62]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윤리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63]로 2024년 예산 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되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금지 등의 제한[64]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65]은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은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의 비목을 구분[66]하여 편성 및 산정하도록

62)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63) **「변호사법」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66)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2024년도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일반수용비(210-01)로 4,439만원, 업무추진비(240-02)로 3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식음료비, 연회비 등의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 약 2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였음.

동 사업 내에서의 최근 3년간 일반수용비 중 식음료비, 연회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435,000원, 2023년 3,890,190원, 2024년 2,084,560원 등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는바,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일반수용비 중 식음료비, 연회비 집행 내역>

(단위: 원)

연도	비목	집행액	연도	일반수용비 중 식음료비 집행내역	
				집행일	집행금액
2022년	일반수용비(210-01)	65,339,210	2022년	2022. 4. 28.	235,000
	업무추진비(240-02)	2,478,000		2022. 10. 21.	200,000
				합계	435,000

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연도	비목	집행액	연도	일반수용비 중 식음료비 집행내역	
2023년	일반수용비 (210-01)	90,821,810	2023년	집행일	집행금액
				2023. 5. 10.	253,000
				2023. 5. 19.	678,700
				2023. 6. 15.	460,000
				2023. 6. 23.	358,490
	업무추진비 (240-02)	2,663,000		2023. 7. 6.	290,000
				2023. 7. 14.	518,000
				2023. 8. 18.	743,500
				2023. 11. 16.	588,500
				합계	3,890,190
2024년	일반수용비 (210-01)	44,392,000	2024년	집행일	집행금액
				2024. 5. 10.	711,200
	업무추진비 (240-02)	3,348,500		2024. 11. 5.	390,000
				2024. 11. 11.	983,360
				합계	2,084,560

자료: 법무부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67],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는 사업추진비(240-01)에서 집행하여야 함.

6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 ④ (생 략)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일반수용비(240-01목)

가. ~ 마. (생 략)

바.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 자. (생 략)

차. 위원회 참석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4-1. 사업추진비(240-01목)

가.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따라서,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수용비(220-01)에서 집행되고 있는 식음료비 및 연회비는 전액 사업추진비(240-01)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전체회의 행사를 위해 업무추진비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일반수용비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전용(轉用)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등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후 법무부는 동 사업의 비목별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인권국

(1) 인권교육(1133-300)

▢ 결산 개요

‘인권교육’은 법무·검찰공무원에게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직무적합성 높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억 400만원이고, 이 중 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교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인권교육	204	–	–	–	204	188	–	16	191
• 인권감수성훈련	171	–	–	–	168	154	–	14	158
• 1:1 맞춤형 교육	24	–	–	–	24	22	–	2	24
• 외부강사 기관방문	9	–	–	–	12	12	–	–	9

▢ 인권감수성훈련의 임차료 집행 및 계약방식 개선 필요

인권교육의 내역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은 법무부 소속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

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렬별 내부 인권 강사들을 초빙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차별의 극복, 인권 실천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인권국 자체 개발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됨. 구체적으로,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각 직렬 주무부서를 통해 교육대상자 20명을 선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사전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직렬별 내부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

인권감수성훈련은 예산현액 1억6,800만원 중 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감수성훈련 절차>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각 직렬 주무부서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20명)	→	교육대상자 사전설문조사	→	직렬별 내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	→	교육대상자 사후설문조사

<인권감수성훈련 각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인권감수성훈련	171	-	-	-	168	154	-	14	158
- 일반수용비 (210-01)	21	-	-	-	18	18	-	-	21
- 특근매식비 (210-05)	3	-	-	-	3	3	-	-	3
- 임차료 (210-07)	84	-	7	-	91	90	-	1	98
- 국내여비 (220-01)	63	-	△7	-	56	43	-	13	36

그동안 인권감수성 훈련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 및 수행방식, 임차료 집행방식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특히 22년도 국회 결산에서는 사업의 전체 예산 중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임차료 비중이 과도하고 훈련 대상 인원수는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므로 합숙교육 방식을 재검토하여 축소하고, 비대면 교육, 당일 교육 등 보다 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음.[68]

<최근 3년간 인권 감수성 훈련에 대한 결산 국회 지적사항>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2021년 결산 국회 지적사항	교육실적 대비 임차료를 과다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당초 예산 편성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심리상담교육 외부강사료를 집행하였음
2022년 결산 국회 지적사항	인권교육의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교육대상 정원에 비해 소규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2023년 결산 국회 지적사항	법무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 목적의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고, 분할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집행된 국내여비 중 출장자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직접 계좌이체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됨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4년도 인권감수성 훈련 총 집행액(1억5,400만원) 중 임차료

68) 법제사법위원회,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78면

집행액(9,000만원)은 약 58.4%에 해당하고[69], 임차료 집행액이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강사료 등 훈련의 실질에 관한 비용인 일반수용비 집행액(1,800만원)의 5배에 해당하며, 여전히 합숙 훈련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의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한편, 법무부는 2024년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포함한 인권감수성 훈련을 총 22회 진행(□□인재개발원에서 19회, 법무연수원에서 3회)하면서 임차료를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87,569,400원, 법무연수원에 대하여 2,887,700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인권감수성훈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번	교육명 (일시, 장소)	집행내역					비고
		임차료	여비(식비)	출장여비	특근매식비	수용비	
1	내부강사역량강화과정 (교정, 출입국) (3. 6.~8. □□인재개발원)	3,835	1,441	547	150	1,526	수용비에 강사료 1,310천원 포함
2	인권감수성훈련(교정) (3. 13.~15., 법무연수원)	448	884	688	299	154	
3	내부강사역량강화과정(검찰,보호) (4. 3.~5. □□인재개발원)	4,842	2,282	616	70	1,418	수용비에 강사료 1,310천원포함
4	인권감수성훈련(검찰) (4. 17.~19., □□인재개발원)	3,681	1,441	999	70	162	
5	인권감수성훈련(출입국) (4. 17.~19., □□인재개발원)	3,527	1,441	1,473	-	-	
6	인권감수성훈련(교정) (5. 8.~10., □□인재개발원)	3,619	1,802	800	70	159	

69) 참고로, 법무부는 2024년 인권감수성 훈련의 국내여비(220-01) 6,300만원 중 70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전용하였음.

연번	교육명 (일시, 장소)	집행내역					비고
		임차료	여비(식비)	출장여비	특근 매식비	수용비	
7	인권감수성훈련(보호) (5. 8.~10., □□인재개발원)	3,542	1,502	421	–	162	
8	인권감수성훈련(검찰) (5 22 ~24., □□인재개발원)	3,219	1,469	1,477	300	126	
9	인권감수성훈련(출입국) (5 22 ~24., □□인재개발원)	3,157	1,201	942	–	–	
10	인권감수성훈련(교정) (6 3 ~5., 법무연수원)	516	1,012	898	–	126	
11	인권감수성훈련(교정) (6 19 ~21., □□인재개발원)	3,465	1,802	1,268	360	270	
12	인권감수성훈련(보호) (6 19 ~21., □□인재개발원)	3,338	1,502	1,071	335	108	
13	인권감수성훈련(교정) (7 10 ~12., □□인재개발원)	3,927	1,802	1,487	325	108	
14	인권감수성훈련(검찰) (9 4 ~6., □□인재개발원)	5,807	–	1,289	347	–	
15	인권감수성훈련(교정) (9 4 ~6., □□인재개발원)	6,037	–	1,312	–	144	
16	인권감수성훈련(교정) (9 25 ~27., □□인재개발원)	5,883	–	1359	–	822	
17	인권감수성훈련(보호) (9 25 ~27., □□인재개발원)	5,198	–	720	–	322	
18	인권감수성훈련(교정) (10 16 ~18., □□인재개발원)	6,191	–	1393	–	734	
19	인권감수성훈련(보호) (10 16 ~18., □□인재개발원)	5,506	–	1,278	–	360	
20	인권감수성훈련(출입국) (10 16 ~18., □□인재개발원)	5,355	–	828	–	980	
21	인권감수성훈련(교정) (11 4 ~6., 법무연수원)	1,923	–	1,399	192	126	
22	내부강사 역량강화과정 (11. 20.~22.□□인재개발원)	7,443	–	1263	286	2,003	수용비에 강사료 1,550천원포함
23	인권감수성훈련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	–	–	–	7,970	

자료: 법무부

이러한 임차료 예산 집행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 법무부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인재개발원과 진행하는 매 훈련마다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계약 내용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의[70]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7월~12월)부터 2025년 상반기(1~5월)까지 3년간 대부분의 훈련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면서 □□인재개발원에 임차료로 연평균 약 8,200만원씩 지급하여 총 2억 4,618만 4,250원을 지급하였음.

<인권감수성훈련 연도별 임차료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2022년(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상반기)	계
임차료 지급액	38,495,600	81,085,500	87,569,400	39,663,750	246,814,25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주: 2022년 상반기 자료는 법무부에서 자료 미보유 등을 이유로 미제출

회차별 훈련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국가계약법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회차의 훈련은 해마다 통합하여 발주하거나, 훈련 회차는 줄이고 훈련 회차 당 훈련대상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경쟁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임.[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0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계약할 수 있는 경우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71) 설령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각 직렬에 대한 교육의 성격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통합 발주가 가능한 인권감수성 훈련의 숙박비 등을 수년간 특정 민간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하였음. 이러한 분할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하여 법무부는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아가 이는 수년간 시정되지 않은 연례적인 임차료 과다집행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집행 관행으로 보임.

둘째, 동일한 내용의 훈련임에도 법무연수원과 □□인재개발원에서의 임차료 금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인권감수성 훈련의 회차 당 평균 임차료 지급액은 법무연수원이 약 96만원, □□인재개발원이 약 461만원으로 □□인재개발원에게 지급되는 회차 당 평균 임차료는 법무연수원에 지급되는 회차 당 평균 임차료의 약 4.8배에 해당함.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보다 주로 □□인재개발원에서 인권 감수성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임차료의 과다한 집행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연간 인권감수성 훈련 임차료 지급 계약을 다수의 회차로 나누어 회차별로 □□인재개발원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분할 수의계약 관행을 시정하여 연초에 경쟁계약으로 통합하여 발주하거나 법무연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임차료 과다지급 문제를

상의 <2024년 인권감수성훈련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교정 직렬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인재개발원에 대한 연간 임차료 집행액의 합계가 약 2,964만원임. 법무부는 연간 교육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어도 동일 직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임차료 집행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경쟁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훈련 방식을 비대면 교육, 당일 교육 등 보다 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훈련 대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아동인권 증진(1133-302)

▢ 결산 개요

아동인권 증진은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인권 증진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사법 영역에서의 아동의 권익 보장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4,500만원이고, 이 중 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아동인권 증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아동인권 증진	245	–	245	241	–	4	245
·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지원	28	–	28	24	–	4	28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197	–	197	197	–	–	197
· 아동인권 증진	20	–	20	20	–	–	20

자료: 법무부

▢ 아동인권증진 교육예산: 지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아동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는 '아동인권 증진'의 내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보호위탁시설 종사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인권 증진 교육사업(예산현액 127백만원)’과 ‘홍보사업(예산현액 7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편성된 예산현액 1억9,7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각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197	–	–	–	197	197	–	–
– 일반수용비 (210-01)	127	–	–	–	127	127	–	–
– 일반용역비 (210-14)	70	–	–	–	70	70	–	–

내내역사업인 아동인권 증진 교육의 경우, 법무부는 국정과제 추진[72] 등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을 2023년부터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부서 간 교육을 일원화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대관, 복지부는 잔여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교육 장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섭외하여 예상 소요비용을 추산하며, 법무부와의 논의를 통하여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하여 정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음. 법무부는 2024년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의 부담 비용을 전액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으며, 회차별 교

72) 국정과제 63-1: 권력형성 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육 장소, 교육대상 인원수, 법무부 부담 비용 등은 다음과 같음.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각목별 결산내역>

회차	법무부 부담비용(원)	집행비목	정원	숙소명 (지역)
제1기	8,190,000	일반수용비 (210-01)	93명	□□호텔 (대구)
제2기	9,230,000	일반수용비 (210-01)	108명	□□호텔 (대구)
제3기	7,629,000	일반수용비 (210-01)	71명	◇◇호텔 (광주)
제4기	7,321,000	일반수용비 (210-01)	66명	◇◇호텔 (광주)
제5기	14,760,000	일반수용비 (210-01)	94명	△△호텔 (대전)
제6기	9,064,000	일반수용비 (210-01)	86명	▽▽호텔 (부산)
제7기	13,526,400	일반수용비 (210-01)	76명	◎◎호텔 (서울)
제8기	17,900,000	일반수용비 (210-01)	79명	☆☆호텔 (서울)
제9기	13,500,000	일반수용비 (210-01)	69명	★★호텔 (경기)
제10기	13,500,000	일반수용비 (210-01)	85명	▲▲호텔 (경기)

자료: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료 비목(210-07)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73],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

73) 예외적으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74]

그런데, 법무부는 교육에 소요되는 숙박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임차료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전액 편성하였음. 아울러 주요 교육 내용은 크게 교육생 간 워크숍 등을 포함하는 '협업체계 구축(6~8시간 소요)'과 외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법무부 교육(4시간 소요)' 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기 교육 주요내용(예시)>

구분	교과목	시간	교육내용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협업체계	워크숍	3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실무 관련 토의 등
	소통의 장	3	팀 빌딩 및 공동 업무수행방안 논의
	화합의 장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교육	아동의 발달특성 및 피해아동 심리	2	아동의 발달특성 및 피해아동의 심리 교육
	아동학대범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2	아동학대 시스템의 법적 개관 및 주요쟁점 소개, 아동보호사건에서의 가사조사관의 역할 등
행정	입교 및 수료	2	입교 및 안내, 수료 및 평가
합계		12	

자료: 법무부

회차별 소요 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는 점, 강의식 교육인 법무부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이 주로 이

7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222면

루어지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인권 증진 교육은 일부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면 교육은 당일 교육으로 진행하는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2024년도 모든 회차의 교육은 호텔에서 1박 2일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숙박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어 보임.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교육 및 그 예산 집행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향후 법무부는 적정한 비목으로 숙박료를 편성 및 집행하고, 교육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여 교육 장소 대관비용을 절감하는 등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인권 증진 교육의 지역 불균등성 개선 필요

‘법무부 교육’의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하더라도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최대한 동일한 취지와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설령 교육 내용 또는 강사의 경우 다소 세부적 부분에서 회차별(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미세한 차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교육 차등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이는 전국의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신장시키려는 본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그런데 아동인권 증진 교육의 '법무부 교육'의 경우 회차별로 교과목 종류 및 「법무연수원 강사·자문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전문강사 등급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 '법무부 교육' 의 회차별 전문강사 및 교과목 내역>

회차	전문 강사 수(단위: 명)				강사료 (단위:천원)	교과목
	전문 강사 I	전문 강사II	전문 강사III	계		
제1기	2	–	–	2	720	아동의 발달특성 및 피해아동 심리, 아동학대범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제2기	1	–	1	2	570	아동학대 사례분석, 아동학대범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제3기	–	1	1	2	470	피해아동 진술의 특성, 아동학대범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제4기	–	1	1	2	470	아동학대 사례분석, 아동학대범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제5기	1	–	1	2	570	아동학대 사례분석, 아동학대범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제6기	2	–	–	2	720	아동학대처벌법 개관(수사 실무를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특성과 심리
제7기	–	1	1	2	470	아동학대처벌법 개관(수사 실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판례분석
제8기	–	1	1	2	470	아동학대사건과 사례의 이해, 아동학대 판례분석
제9기	–	1	1	2	470	아동학대사건과 사례의 이해, 아동학대 판례분석
제10기	–	1	1	2	470	아동학대사건과 사례의 이해, 아동학대 판례분석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주: 제7기부터 제10기까지 각 회차별로 지급된 강사료 실지급액은 428,640원임.

〈강사 · 자문수당 등 지급대상 및 기준(집합교육)〉

구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전문 강사 (Ⅰ)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판사 – 고위공무원단(상당)에 속하는 공무원(실·국·본부장급)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 10년 이상 경력의 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연구기관 연구원 – 사회 주요단체 강의 전문가, 방송·문화·예술(지휘자 포함)·종교인 – 대기업 이사급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연구소·센터 등 대표 – 원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최초 1시간	24만원
		초과 시간당	12만원
전문 강사 (Ⅱ)	–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판사, 3급·4급 상당 공무원 – 관련 학위 소지한 10년 이상 경력 예술가, 예능 관련기관 대표 – 전문강사(Ⅰ) 이외의 외부강사(전산·체육·외국어·보조강사 제외)	최초 1시간	17만원
		초과 시간당	9만원
전문 강사 (Ⅲ)	–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공익법무관 – 전산교육 강사, 외국어교육 강사 – 예술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 경력자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시간당	7만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주1: 법무연수원 훈령인 「법무연수원 강사 · 자문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에서 발췌
* 주2: 전직 경력은 현직에 준하여 적용함.

구체적으로, 아동의 발달특성 및 피해아동 심리,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등 특정과목은 일부 회차에서만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문강사의 등급도 제1기 교육의 경우 모든 강사가 1급으로 구성되었으나, 제7기 교육의 경우 1급 강사가 없는 등 강사 구성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발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회차마다 균등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야 할 해당 교육에서 강사의 경력 차이 및 교과목 구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 수준의 지역 간 불균등성, 나아가 지역별 아동학대 대응 서비스 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법무부는 대구에서 진행된 제2기 교육은 교육생 1명당 약 85,462원, 서울에서 진행된 제8기 교육은 교육생 1명당 약 226,582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편차는 지역별 교육생이 누릴 편익의 차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법무부 교육'에 대하여는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등급의 강사에 의하여 교육이 균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지역 간 교육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부담비용도 지역 간 편차가 적정 수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기관 간 협력 체계화를 통한 아동인권 증진 교육사업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인권교육을 공동 수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분담 비율이나 분담 방식 등의 기준을 명문화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의 회차별 지출 범위는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 나아가 법무부는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분담한 비용 총액, 분담 비율, 지출 세부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를 보유하기 어렵게 되어, 추후 부처 간 비용분담 협의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법무부-보건복지부의 비용 분담 내역 및 총비용>

회차	법무부 부담비용(원)	보건복지부 부담비용(원)	총비용(원)	숙소명 (지역)
제1기	8,190,000	-	-	□□호텔 (대구)
제2기	9,230,000	-	-	□□호텔 (대구)
제3기	7,629,000	-	-	◇◇호텔 (광주)
제4기	7,321,000	-	-	◇◇호텔 (광주)
제5기	14,760,000	-	-	△△호텔 (대전)
제6기	9,064,000	-	-	▽▽호텔 (부산)
제7기	13,526,400	16,100,000	29,626,400	◎◎호텔 (서울)

제8기	17,900,000	18,240,000	36,140,000	☆☆호텔 (서울)
제9기	13,500,000	17,430,000	30,930,000	★★호텔 (경기)
제10기	13,500,000	–	–	▲▲호텔 (경기)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주1: 제1기~제6기 및 제10기 교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란처리('–' 로 표시)하였음.

* 주2: 제7기~제9기의 보건복지부 부담 비용은 법무부 제출자료에 기재된 계약비 총액 및 법무부 부담비용의 차액으로 계산하였음.

아울러, 법무부가 제출한 일부 회차 교육의 행사 계약서 등(제7기, 제8기, 제9기)에는 해당 회차 교육에 소요된 호텔과의 총 계약금 및 계약 세부항목이 명시되어 간접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부담 비용을 추산하고 지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일례로 제8기 교육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호텔 측과 실질적으로 단일한 행사(교육)에 대한 계약(계약비용 3,614만원)의 약정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을 '식음료 사항(총 18,240,000원)'과 '일반적 사항(객실료, 대관료 등 총 17,900,000원)' 항목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보건복지부가, 후자는 법무부가 각 항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제8기 아동인권 증진 교육 호텔 계약 약정서(예시)>

식음료 사항				
구분	수량(인원수)	단가(단위: 원)	금액(단위: 원)	비고
음식	96	45,000	4,320,000	도시락 (중식)

	96	100,000	9,600,000	뷔페(석식)
	96	45,000	4,320,000	도시락 (중식)
식음료 합계			18,240,000	
일반적 사항				
대실료(행사장)	1		2,350,000	1일차
	1		2,350,000	2일차
객실(숙박료)	44	300,000	13,200,000	2인1실
일반적 사항 합계			17,900,000	
총계			36,140,00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각자의 예산으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실질적으로 단일한 행사에 대한 계약에 법무부와 복지부가 지출한 계약금 총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해당 행사에 대한 계약이 분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음. 공식적인 비용분담 기준 및 계약방식을 명문화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이러한 계약 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심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나아가, 아동인권 증진교육에는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경찰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이 교육 대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교육비 등을 법무부에 지급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교육 관련 비용을 전액 교육 시행 주체(법무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교육 대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교육비 등을 법무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의 구체적인 비용 분담 비율이나 분담 방식 등에 대한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준을 명문화하여 사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무부-보건복지부 공동계약을 진행하는 등으로 행사 관련 계약을 최대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교육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인권국 기본경비(총액, 7011-263)

▢ 결산 개요

인권국 기본경비(총액) (7011-263)는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9억 5,300만원으로 8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국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인권국 기본경비	953	-	-	953	891	0	62	1,099
· 운영비	440	-	-	440	423	0	17	538
· 여비	163	-	-	163	162	0	1	193
· 사업지원경비	350	-	-	350	306	0	44	367

▢ 정책연구비(260-02)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인권국은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우선 집행하되, 정책연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업이나 기타 특이소요(국정과제 또는 사회적 이슈 과제 등)가 발생하는 경우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인권국 기본경비(총액)(7011-263) 내에 정책연구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4

년도 정책연구비(260-02) 예산현액은 1억8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인권감수성훈련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사업지원경비	350	-	-	350	306	0	44	36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24	-	-	124	123	0	0	147
- 특정업무경비 (250-03)	28	-	-	28	27	0	1	39
- 정책연구비 (260-02)	108	-	-	108	70	0	38	108
- 포상금 (310-03)	20	-	-	20	20	0	0	0

인권국 기본경비(총액)(7011-263)의 정책연구비(260-01)의 경우 2022년에는 당초 편성액인 1억800만원보다 1,7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고, 2023년에도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당초 편성액보다 3,8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예산집행을 하여왔음.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 정책연구비 (260-02)	108	125 [125]	108	56 [56]	108	70 [7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최근 3년간 인권국기본경비 정책연구 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는 총 1억3,700만원, 2023년도에는 총 1억3,000만원을 계획하여 해당 년도의 예산편성액 1억800만원 대비 소요예상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8,000만원을 계획하여 예산편성액 대비 소요예상액이 과소 편성되었음.

<인권국기본경비 정책연구 계획 (2022~2024년)>

(단위:백만원)

년도	예산과목	연구용역 과제명	금액
2022	일반연구비 (260-01)	인권정책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	20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훈련 프로그램 개선 내부인권강사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20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15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검토 연구	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 22년) 이행 평가 및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 27년) 수립	40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에 관한 연구	20
2023	정책연구비 (260-02)	유엔 사회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작성 대비 연구	30
		유엔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연구	20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	50
		외국의 범죄피해 구조금(Crime Victim Compensations) 상호보증 관련 연구	30
2024	정책연구비 (260-02)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개편	50
		법률구조 관련 연구(국정과제 추진 과정)	30

자료: 법무부

* 주: 2022년까지 인권국기본경비의 연구개발은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 및 집행되었으나, 2023년부터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 및 집행되었음.

한편,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에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듬해인 2024년에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고 집행되었음. 이와 같이 사실성 성격이 거의 동일한 연구용역을 일반회계인 인권국기본경비 뿐만 아니라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기금과 일반회계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향후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권국기본경비 정책연구비 집행내역 (2022~2024년)>

(단위:백만원)

년도	계약건명	예산과목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활용
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과제제시	7000-701 1-263-260-01	47.5	22.04.-22.0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평가 및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시 활용
2022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4차) 심의대비 연구	7000-701 1-263-260-01	30	22.10.-22.12.	UPR 심의대비를 위해 활용
20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연구	7000-701 1-263-260-01	20	22.05.-22.08.	(제도개선)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및 배포
2022	감염병으로 인한	7000-701 1-263-	15	22.01.-22.03.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 18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260-0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임증감청구권 관련 분쟁 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2022	인권감수성 훈련 교육과정 개선 및 교재 개발	7000-7011-263-260-01	25	22.09.-23.02.	정책반영
2023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발	7000-7011-263-260-02	36	23.07.-23.11.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등에 제작·배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
2023	세계 각국의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및 상호보증 현황 조사	7000-7011-263-260-02	20	23.06.-23.10.	각 지방검찰청 구조심의회 구조금 심사 시 활용 및 법률개정 · 구상권행사 등의 정책적 판단 시 참고
2024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연구용역	7000-7011-263-260-02	50	24.04-24.10.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활용
2024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수체계 개선안 분석 및 검증 연구용역	7000-7011-263-260-02	20	24.12.-24.12.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수체계 개선안 도출 반영 · 참고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우선 집행하는 등 그 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특별한 소요가 없어도 예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만성적으로 불용 처리되기 쉬운 인권국기본경비 내의 정책연구비 예산은 편성 및 집행을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이민정책개발 지원(1231-300)

▢ 결산 개요

이민정책개발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대상 교육과 이민정책소식지 발간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확산하고, 주요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연구용역 실시로 이민정책개발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이고, 이 중 3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민정책개발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이민정책개발지원	386	–	–	–	386	327	–	59	190
·영문에디터 운영	54	–	–	–	54	35	–	17	55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교육 및 소식지 발간	101	–	–	–	101	99	–	2	38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 등	91	–	–	–	91	61	–	30	91
·이민국 방문경비 등	7	–	–	–	7	7	–	–	–
·이민정책연구용역	135	–	–	–	135	125	–	10	–

▢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점검 필요

법무부는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협업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정책 설명, 지자체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발표,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협업방안 마련 등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주요 일정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실적>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1일차	13:00~14:00	참석자 등록 및 교육 일정 안내
	14:00~16:00	법무부 및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및 우수정책사례 발표
	16:00~18:00	주제별 그룹토론(회의) 지역기반 이민정책(계절근로, 광역형비자, 지역특화비자 등) 및 사회통합정책
2일차	09:00~10:30	중앙부처(법무부, 행안부) 및 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및 우수정책사례 발표
	10:30~11:00	지역이민정책 연구과제(전문가) 발표
	11:00~12:00	종합토론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건의사항 수렴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 계획	5회	5회	5회
실적	4회	5회	6회

법무부는 동 교육을 2022년과 2023년에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를 활용하여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관리 인원 부족 해결 및 보다 원활

한 교육 진행을 위해 2024년부터는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직접 사업에서 일반용역을 통한 간접 사업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첫 해인 2024년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먼저, 사업추진 시기와 관련하여, 동 교육사업은 매년 반복적이고 정례화된 교육임에도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3월이 되어서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4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024년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과업명	수행 업체명	계약 방식	수의 계약 사유 및 근거	사업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 총액	집행액	
							선금 (지급월)	잔금 (지급월)
2024년 중앙부처 ·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용역	이민정책연구원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③	3.18.	4. 9. ~ 12.16.	48	38 (4월)	10 (12월)

또한, 아래 표와 같이 2024년도에 실시한 교육 내역을 살펴보면, 총 6차에 걸친 교육 실적 중 상반기는 2차례에 불과하고, 4차례는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집중 실시되고 광역단위 권역 위주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추진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4년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실적>

(단위: 천원)

회차		개최 일자	개최 권역	참석인원	집행액
상반기	1차	6. 13.(목)	서울	104명	6,842
	2차	6.27.(목)~6.28.(금)	강원, 경북, 대구	124명	7,929
하반기	3차	9.26.(목)~9.27.(금)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29명	9,597
	4차	10.31.(목)~11.1.(금)	부산, 울산, 경남	79명	7,118
	5차	11.21.(목)~11.22.(금)	대전, 세종, 충북, 충남	87명	7,438
	6차	12. 4.(수)	경기, 인천	86명	3,050

끝으로, 사업 수행자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을 동 사업의 계약자로 지정하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동 사업은 외국인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장소 마련, 물품 구입, 자료제작 및 강사연계와 같은 교육 진행 행정대행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75]

동 교육이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면, 동 사업비를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변경·통합하는 방식과 같이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사업으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심사 및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75) 법무부가 용역대행이 아닌 사업을 직접 수행하던 2022년과 2023년 일반수용비(210-01)과 임차료(210-07)이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교육장소 마련 및 물품 구입 등에 예산을 지출하였음.

(2)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

▢ 결산 개요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은 이민정책연구원 구성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임차료·공공요금·수용비 등의 운영경비, 그리고 국내외 이민동향과 정책의 조사·연구·분석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여,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하며, 해외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이민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5억 6,200만원이고, 전액을 집행하였음.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562	-	-	-	2,562	2,562	-	-	3,455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562	-	-	-	2,562	2,562	0	0	3,455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이민정책연구원은 2007년부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이주기구(IM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이주(이민) 분야에 관한 종합적·중장기적 연구·교육을 위한 국제적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76]체결을 통해 개원한 IMO의 협력연구원으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임.

이민정책연구원은 ①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이주·이민동향 및 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하는 '연구사업', ② 국내외 이주·이민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강화를 통한 이민 정책 분야 연구·교육 개발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사업', ③ 유관기관 종사자 업무 전문성 제고 및 이민자 인식개선 목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교육사업', ④ 국제이주·이민 관련 통계DB 구축·운영하는 '이민통계분석사업' 등 총 4개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의 경우 법무부는 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연구원 인건비 17억 3,200만원, 연구원 운영비 2억 2,700만원, 연구사업비 등 6억 300만원 총 25억 6,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였고, 연구원은 이·전용 및 불용없이 전액을 실제 집행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7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조약 제2196호)」

<2024년도 이민정책연구원운영 민간경상보조금 '편성' 세부 내역>

편성 근거
○ 연구원 인건비 : ('23) 1,522 → ('24) 1,732, 210백만원 증액 – 연구원 보수 : 1,459백만원 [현원(22명×4.8백만×12월) + 추가 (5,654천x2명×8월)+(3,608천x3명×8월)] – 고용부담금 : 273백만원 ○ 연구원 운영비 : ('23) 277 → ('24) 227, 50백만원 감액 – 공공요금및제세 : ('23) 12,000 → ('24) 12,000천원(1,000천원×12월) – 차량 · 사무기기임차료 : ('23) 21,400 → ('24) 16,400천원(1,367천원×12월) – 시설 임차료 · 관리비 : ('23) 154,848 → ('24) 115,848천원(9,654천원×12월) – 청소용역비 : ('23) 20,400 → ('24) 20,400천원(1,700천원×12월) – 기타 수용경비 : ('23) 68,151 → ('24) 62,151천원(5,179천원×12월) ○ 연구사업비 등 : ('23) 469 → ('24) 603, 134백만원 증액 – 연구사업비: 기본연구 등(21.9×14건) + 중점과제(50×4건) = 507백만원 –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 1백만원(전년 수준) – 이민정책연구 국제협력 : 4백만원(전년 수준) – 이민정책연구 전문저널 발간 : 7백만원(전년 수준) –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 ('24) 84백만원(순증) · 집합교육 강사료 : 300천원×20회=6,000천원 · 교육콘텐츠 제작(촬영/편집 용역 등) : 2,900천원×10회=29,000천원 · 홈페이지 제작 · 운영 : 25,000천원(제작비+300천원×12월(운영비)=28,600천원 · 교육진행 부대경비(홍보 등) : 1,000천원×20회=20,000천원

그런데 2024년에 이민정책연구원의 핵심 사업비인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집행한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발견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 확인 점검 및 시정이 필요해 보임.

먼저,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목적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예산에 대한 집행용도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사례5와 같이 표시하여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는데, 사례2처럼 "R3"과 같은 약칭으

로 표현하거나 심지어 사례4처럼 “회의비 지급”으로만 단순하게 표기하여 구체적인 집행목적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례3은 지급주체와 객체(거래처)가 IOM이민정책연구원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함에도 누락한 경우이며, 사례1은 거래처가 백화점이어서 부적절 집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용도를 보다 명백히 표현해야 하는 경우임.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연구사업비 중 집행용도 불명확 사례>

사례	집행일자	집 행 용 도	거래처명	합계(원)
1	2024-03-18	회의비 지급(일본 재류관리청 간담회)	○○백화점	113,400
2	2024-04-03	R3 연구진 회의비	투○○○○	11,300
3	2024-04-03	이민정책네트워크 회의비 지급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	509,300
4	2024-06-27	회의비 지급(24.05.24)	하○○	56,100
5	2024-12-31	회의비(이민정책연구원 - 건대 다문화소통 플랫폼 협력 교육_)	박○○	90,000

또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사업에 집행된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동 사업이 필요 사업인 경우 사업추진 경위・목적・근거・효과 등에 기초하여 예산액을 산정・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아래 표는 연구원이 ‘논문공모전’을 사유로 연구사업비를 집행한 홍보유인비, 심사비, 회의비 지출 내역인데, 동 사업의 필요성, 근거, 목적 및

사업비 총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공모전 사업 전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임.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연구사업비 중 사업 근거 불명확 '집행' 사례>

집행일자	집행용도	거래처명	합계(원)
2024-06-21	제4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_홍보유인비	주식회사 디자인○○	440,000
2024-11-11	국내협력 논문공모전 심사비 지급	신○○	456,000
2024-11-11	국내협력 논문공모전 심사비 지급	변○○	456,000
2024-11-11	국내협력 논문공모전 심사비 지급	문○○	456,000
2024-11-11	국내협력 논문공모전 심사비 지급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	132,000
2024-12-11	논문공모전 홍보유인비 지급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	504,000
2024-12-11	논문공모전 시상식 회의비 지급	톰○	90,500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2024년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집행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집행용도 등록 시 사유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고 사업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1232-300)

▢ 결산 개요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사업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45개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인력 운영, 청사시설관리, 물품구입, 시설·장비 개보수 및 업무용 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을 통해 출입국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민원환경을 개선하며,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14억 1,900만원이고, 4억 1,2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18억 3,100만원이며, 이 중 506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51,419	-	412	-	51,831	50,658	-	1,173	55,163
·공무직근로자 운영	16,519	-	△11	-	16,508	16,182	-	327	17,872
·소속관서운영경비	29,211	-	423	-	29,634	28,916	-	717	29,264
·출입국관서 시설 공사 및 자산취득	5,689	-	-	-	5,689	5,560	-	129	8,027

▢ 이·전용한 예산 불용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전용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다만,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거나,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한 뒤 집행하는 경우 등에 유의하고,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법무부의 동 세부사업에 대한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이·전용등을 통해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각 10억 8,300만원, 8억 9,000만원, 5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11억 7,300만원, 2023년 9억 7,300만원 등을 불용하였음.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세부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1,168	41,168	△539	40,629	39,824	96.6	98.0	805
2022	43,843	43,843	△890	42,953	42,164	96.2	98.2	789
2023	48,462	48,462	△1,083	47,379	46,406	98.8	97.9	973
2024	51,419	51,419	412	51,831	50,658	98.5	98.5	1,173

이와 같은 이·전용 및 불용 주요 사유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 2023년은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 소요 충당을 위해 전용 감액한 것이고, 2024년에는 출입국관서 공공요금 증가분 해소를 위해 전용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77]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이·전용된 해당 증액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음영), 사례4와 같이 전액 집행된 사례도 있으나, 사례5와 같이 2억 3,800만원을 자체 전용 후 24%에 달하는 5,800만원을 불용한 경우처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용으로 증액한 뒤 해당 예산을 10%이상 불용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전용의 필요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관련 이·전용 후 불용 사례 등>

(단위: 백만원, %)

사례	일자 구분	~에서		금액 (A)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집행	불용 (B)	비율 (B/A)	이월·불용, 실집행저조 사유
		세부사업	비목		세부사업	비목					
1	2024 12.3. 자체 이용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인건비 (7002-100)	110 -01	600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210 -02	전기사용량 증가, 단가인상 등 사유로 부족분이 발생한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600	67	11	-
2	2024 10.11 자체 전용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210 -07	188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220 -01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으로 국외강제퇴거, 보호소 이송 등 호송여비 소요가 증가하여 부족분 충당	170	18	10	예산 현액 대비 188백만원 부족 예상되어 전용하였으며, 이후 집행잔액 18백만원 발생

77) 보다 엄밀히 본다면 당해연도 마다 증액과 감액이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를 합산한 총액이 당해연도 최종 증감액이 되고 있어 여기서는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함.

사례	일자 구분	~에서		금액 (A)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집행	불용 (B)	비율 (B/A)	이월·불용, 실집행저조 사유
		세부사업	비목		세부사업	비목					
3	2023 8.10 자체 전용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210-09	123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220-01	불법체류 등 사유로 보호 수용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이송 여비 부족	117	6	5	예산 현액 대비 123백만원 부족 예상되어 전용하였으며, 이후 집행잔액 6백만원 발생
4	2023 11.22 자체 전용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250-03	50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210-02	전기요금 등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	349	-	-	-
			260-01	27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210-02	76							
			210-14	196							
5	2023 12.4. 자체 전용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110-03	239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110-03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상용임금 지출 증가 충당	239	58	24	예산 현액 대비 239백만원 부족 예상되어 전용하였으며, 이후 집행잔액 58백만원 발생
6	2022 11.28 자체 전용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1232-300)	110-03	385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110-03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상용임금 지출 증가	333	52	14	예산 현액 대비 385백만원 부족 예상되어 전용하였으며, 이후 집행잔액 52백만원 발생
7	2021 11.23 자체 전용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1232-300)	110-03	392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110-03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상용임금 지출 증가	313	79	20	예산 현액 대비 392백만원 부족 예상되어 전용하였으며, 이후 집행잔액 79백만원 발생

법무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전용을 통해 충당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은 45개 소속기관에서 나누어서 집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전용 당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불용 비율이 20%에 달하는 사례5와 사례7의 경우처럼, 이·전

용시점이 11월말 회계연도 종료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전용 금액을 세밀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높은 것은 기재부 집행지침이 규정한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 최소화 제한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이·전용 금액이 관례 등에 의해 과다 계상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이·전용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예산 편성단계에서의 적정 사업비 편성과 적절한 운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 결산 개요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업무시스템 임차,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출입국 업무장비 도입·교체등을 통해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체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46억 800만원이고, 이 중 240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출입국정보 시스템운영(정보화)	24,608	-	-	-	24,608	24,027	-	581	30,410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13,043	-	-	-	13,043	12,646	-	396	14,224
·업무시스템 임차	526	-	-	-	526	526	-	-	465
·시스템개발 연구용역	3,118	-	-	-	3,118	3,077	-	41	3,025
·출입국업무장비 도입 ·교체	7,922	-	-	-	7,922	7,779	-	143	12,696

▢ 세부사업비 혼용 지출 유의 및 법적 근거 마련한 사업 추진 필요

동 사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법무행정정보화(기획조정실 소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3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2018년 당시 출입국정보시스템 관리예산 통합 편성·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상세집행내역			
			계약명	금액	계약기간	수탁기관
법무행정정보화	2,191	1,712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5,107	18.1~ 18.12	㈜시ㅇㅇ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4060	3,309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17	117				

그런데 202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개편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업비와 다른 사업의 기본경비를 함께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장비」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하드웨어와 소프드웨어 조달구매는 동 세부사업인 출입국정보

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조달수수료를 함께 지출하여 사업비를 혼용 조달하고 있음.

특히, 기재부 집행지침에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지만, 조달수수료나 공공요금 부족분 등의 지원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세부 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하여 조달수수료 납부가 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세부 사업비가 아닌 타 사업비(기본경비)에서 조달수수료를 대신 지출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하나의 사업에 두 개의 세부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한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일 자	금 액	건 명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2024-07-29	388,617,510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장비(2차)」 물품(HW, SW) 조달구매
	2024-08-09	4,679,400	
	2024-09-03	21,962,600	
	2024-11-01	66,920,000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 (7018-250)	2024-08-02	1,993,560	조달수수료 (외국인행정정보종합플랫폼 구축장비(2차)물품구매)
	2024-08-16	24,000	
	2024-09-04	118,590	
	2024-09-20	361,360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 집중수요가 있는 농·어업 분야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임.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135개 지자체에 5만 7천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음.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도입·체류·귀국 모든 단계를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로 지원하고, 기관간 데이터 공유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인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4년 ISP 예산 1.1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개발연구비와 자산취득비로 총 25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 일반연구비(260-01)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ISP 수립 : 1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개발비 : 96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HW/SW : 1,541,000천원

그리고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일반용역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2024년 5월부터 시스

템 구축 사업비 9,020만원과 기술평가수당 및 사업수수료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집행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일 자	금 액	건 명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2024-05-21	2,000,000	기술평가수당
	2024-05-23	902,400	조달수수료
	2024-06-04	63,140,000	선금 지급
	2024-09-24	27,060,000	잔금 지급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하위 법령상 장·단기 체류자격의 일부 형태로(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운영되고 있고, 내부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이므로,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사업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한 사업임.[78]

과거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 내 '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절근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78) 참고로 외국인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신설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마련 근거를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2)」이 2024년 11월 21일에 발의되었으나, 2024년 5월에 이미 ISP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음.

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국내 체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부터 시범 추진 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다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79] 향후 법무부는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0]

79) 기재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제도개선과 관련 있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을 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80)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및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7월 3일이 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됨.

(5)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결산 개요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은 단속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의 국내외호송, 수용관리 및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외국인 보호업무 지원을 위한 출입국 공무직근로자를 고용·운영하며, 외국인 보호시설 보강·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한 보호관리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22억 8,700만원이고, 2억 9,5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25억 8,200만원이며, 이 중 222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국인보호관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외국인보호관리	22,287	-	295	-	22,582	22,226	-	356	21,372
·공무직근로자 운영	11,809	-	-	-	11,809	11,748	-	61	12,171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5,675		295	-	5,970	5,890	-	80	5,794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2,655	-	-	-	2,655	2,462	-	193	2,756
·외국인보호시설개선	2,148	-	-	-	2,148	2,127	-	21	652

▢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제고 노력 시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국가재정법」및 하위 법령에 따라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81] 평가 대상 세부사업을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등급으로 구분하며, '미흡'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에서 10% 이상의 삭감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82]

법무부가 2025년 5월에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평가대상 세부사업 총 32개 중 우수 6개(18.7%), 보통 21개(65.6%), 미흡 5개(15.6%)를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은 세부사업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외국인보호관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으로, 5개 미흡사업의 차년도 예산 삭감 규모는 총 47억 7,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83]

---

8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2) 기획재정부는 전년도사업을 평가 하기 위해 매년 1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음.

83) '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미흡' 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우수' 등급의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지출구조조정액(삭감액)은 기준에 비해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요약>

(단위: 억원, 개)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 (개)				평가대상사업 ' 24년 예산 규모 (억원)			
	계	우수 (20%이하)	보통 (65%내외)	미흡 (15%이상)	계	우수	보통	미흡 (5%이상)
평가기준	32	6	21	5	5,947.9	-	-	297.4 이상
평가결과		6 (18.7%)	21 (65.6%)	5 (15.6%)		1,779.0 (29.9%)	3,506.9 (59.0%)	662 (11.1%)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재구성

<2024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등급 사업>

(단위: 억원, 점)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지출구조 조정액 △47.76
		24년	25년			
일반회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4.6	192	92.5	미흡	△10.53
일반회계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72.6	66.5	92.1	미흡	△6.65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5	55.4	91.4	미흡	△5.54
일반회계	외국인보호관리	222.9	213.7	90.2	미흡	△11.54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5.6	135	88.4	미흡	△13.50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재구성

이 중에서 '외국인보호관리'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2회'와 '보통 1회' 등급을 받아 평가결과가 계속 저조한 상황이고,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는 사업비 중 18억 2,000만원, 2023회계연도에는 8억 8,700만원, 2024회계연도에는 11억 5,400만원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비 고 (평가결과 미흡 또는 지출구조조정 발생 사유·내역 설명)
평가 대상연도	사업비 총액	평가 결과	지출구조 조정액	
2022	19,736	보통	△1,820	· 총 지출구조조정 규모 충족을 위한 감액
2023	22,287	미흡	△887	·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2024	21,370	미흡	△1,154	·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재구성

특히, 기재부는 재정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이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강조한 바 있어,[84] '외국인보호관리' 세부사업이 내년에 또다시 미흡 평가를 받아 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

동 세부사업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 받고 있는 원인을 평가서 상에 있는 2024회계연도 사업별 지출구조조정안을 통해 살펴보면, 보호외국인 관련 소요비용을 매년 전용함에 따른 집행률 제고 노력이 부족한 점, 과거 동일한 반복 지적에도 일부만 개선되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85]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84)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공지하면서, 2022회계연도 평가부터 3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을 강조한 바 있음.

85) 이 외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및 언론보도 등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실적이 부족한 것도 미흡평가를 받게 되는 사유로 언급되고 있음.

동 세부사업에서 2021년 13억 3,700만원, 2022년 1억 5,200만원(감), 2023년 15억 9,700만원, 2024년 2억 9,500만원의 이·전용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유로는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및 구호 교정비 부족분과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 호송여비 소요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6,665	16,665	1,378	18,043	17,851	107.1	98.9	192
2022	18,200	18,200	△152	18,048	17,891	98.3	99.1	157
2023	19,736	19,736	1,497	21,233	20,976	106.3	98.8	257
2024	22,287	22,287	295	22,582	22,226	99.7	98.4	356

<연도별 이·전용 주요 내역 및 사유>

연 도	주요내역 및 사유
2021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보호외국인 증가로 구호 및 교정비 부족분 충당 증 774백만원
2022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사업 상용임금에서 385백만원 전용 증
2023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급식비 및 의료비, 피복비 증액 및 보호실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상용임금 지출 증가 등 충당분 전용 증 1,497백만원
2024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 국외강제퇴거, 보호소 이송 등 호송여비 소요 증가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증 188백만원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증감

추이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의 인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전체 불법체류율은 오히려 매년 낮아지고 있어, 이·전용등의 발생 사유를 단순히 보호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음영 참고).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불법체류율[86] 증감 추이>

(단위: 명)

연 도	총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불 법 체류율
		소 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14년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2019년	2,524,656	390,281	95,815	1,316	293,150	15.5%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1,674	281,857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1,427	262,251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3,725	269,532	18.3%
2023년	2,507,584	423,675	137,954	2,034	283,687	16.9%
2023년 12월	2,507,584	423,675	137,954	2,034	283,687	16.9%
2024년 12월	2,650,783	397,522	134,580	2,124	260,818	15.0%
증감률	5.7%	−6.2%	−2.4%	4.4%	−8.1%	−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12월)

더욱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이·전용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근 3년간 지출구조조정의 패널티를 받아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그 금액 규모를 비교해 보아도 최근 3년간 연평균 5억 4,600만원 이·전용등

86)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외국인(합계) ÷ 총체류외국인 × 100

으로 증액[87]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을 받아 연평균 12억 8,700만원이 감액[88]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라 할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의 이·전용등 발생 사유를 분석·점검하고, 불법체류외국인을 포함한 보호외국인의 증가 추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업무별 소요액을 재산정한 다음, 내역 사업간 예산액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재편성하는 한편, 보다 면밀하게 집행관리함으로써 더이상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미흡 등급으로 인해 동 세부사업에 대한 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87)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발생한 이전용등 금액에 대한 연평균액을 산정한 값임.
88)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발생한 지출구조조정 금액에 따른 연평균액을 산정한 값임.

(6)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 결산 개요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사회통합지원 업무보조원 등을 고용하여 출입국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54억 4,270만원이고, 1억 7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53억 2,000만원이며, 이 중 147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5,427	-	△107	-	15,320	14,787	-	533	17,639
• 공무직근로자 운영	1,308	-	-	-	1,308	1,290	-	18	1,458
• 사회통합업무지원	13,155	-	△107	-	13,048	12,533	-	515	9,272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964	-	-	-	964	964	-	0	1,919

▢ 귀화 민간면접관 구성에 있어 사회통합분야 확대 등 다양성 필요

법무부는 귀화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와 귀화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2011년 9월부터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에 따라 민간면접관을 선발·위촉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귀화신청자의 기본소양 요건을 6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

<귀화 면접심사 평가항목>

01	02	03	04	05	06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여부	예의 및 태도

민간면접관은 2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하며, 1조(2인)가 일 평균 11명 내외 인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며 1일 수당은 16만원으로 산정하고 별도로 산정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2022년 6억 4,780만원, 2023년 5억 9,610만원, 2024년 5억 9,590만원을 면접심사비로 각각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면접심사비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520,000	596,000	596,000
결 산	647,801	596,160	595,907

그런데 2025년 4월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면접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접관 45명 중 80%에 해당하는 36명이 퇴직 공무원이고, 6명

(13%)은 퇴직 교사이며, 사회통합분야는 3명(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민관면접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부권을 제외한 대다수 권역에서 동일하게 확인됨.

<귀화면접관 구성 현황>

(단위: 명, 2025년 4월 기준)

구 분	소 계	퇴직 공무원	퇴직 교사	사회통합분야
수도권	26	23	3	0
영남권	7	5	2	0
중부권	5	2	1	2
호남권	4	4	0	0
강원권	1	1	0	0
제주권	2	1	0	1
합계	45	36	6	3

비록 관련 근거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에서 전직 공무원과 교사를 귀화 민간면접관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성·운영하려는 위원회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귀화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다양성에 비추어 전직 공무원에 치우친 구성이라고 할 것임. 향후 법무부는 다양한 경력의 민간위원을 선발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격이나 경력별 위원들의 구성비율을 명시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민간면접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로 초・중・고등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으로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3.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80호)에 따른 한국사회이해과정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관리규정」(법무부예규 제1338호)에 따른 구술시험관으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1년 이상 또는 전임강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 중인 사람

▢ 국적심의위원회 경비 재산정을 통한 예산 재편성 필요

국적심의위원회는 「국적법」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특별귀화 허가, 국적 이탈 허가, 국적 상실 결정 등에 관한 필수 심의기구임. 위원회는 연간 3~4회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민간위원 과반수) 이내 참석 위원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음.[89)90)]

89) **「국적법」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0)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민간위원(위촉직)						정부위원(당연직)	
	분과 위원장	학술·경영	첨단·이공계	문화·예체능	법률	동포·병역	법무부	타부·처·청
1분과	1명	2명	7명	3명	–	–	외국인 본부장	국정원·과기부·문체부 국장
2분과	1명	–	–	–	5명	3명		외교부·동포청·병무청 국장

* 위원장(법무부차관) 및 위원 29명(정부 7, 민간 22), 위원회 간사 : 국적과장, 분과위 간사(국적과 담당사무관), 2025년 4월 기준

최근 3년간 동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22년 전체위원회 3회, 2023년에는 분과위원회 6회와 전체위원회 3회를 합쳐 총 9회, 2024년에는 분과위원회 8회와 전체위원회 4회 총 12회를 개최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분과위원회	–	6	8
국적심의위원회	3	3	4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국적심의위원회 개최로 참석비 집행액도 함께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매년 동일하여, 2023년에는 집행률이 114.3%로 상승하였고, 2024년에는 135.7%까지 상승하면서, 관련 재원도 이·전용을 통한 증액으로 해결하지 않고 같은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비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법무부는 증가하는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국적심의위원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14	14	-	14	4	28.6	28.6	10
2023	14	14	-	14	16	114.3	114.3	-
2024	14	14	-	14	19	135.7	135.7	-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1233-304)

▢ 결산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업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과 정보 취득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정보제공을 지원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활동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07억 5,400만원이고, 이 중 107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754	-	-	-	10,754	10,720	-	34	13,909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10,439	-	-	-	10,439	10,439	-	-	13,594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운영	315	-	-	-	315	281	-	34	315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비의 적정 집행 필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세사업)은 총 2개로서 202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 예산은 총 104억 3,900만원으로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있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 예산은 3억 1,500만원으로 전액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어 있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내역사업 예산편성 상세내역>

내역사업 (세사업) 명	편성 근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23) 10,097 → ('24) 10,439백만원, 342백만원 증액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 ('23) 7,252 → ('24) 6,747백만원(△505) * 한국어 과정 : ('23) 5,645 → ('24) 347개기관×26천×582.2시간=5,252 *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 : ('23) 1,607 → ('24) 347개기관×26천×165.7시간=1,495 - 운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 ('23) 1,577 → ('24) 1,614백만원(+37) * ('23) 50개기관×1명×2,628천×12월=1,577 → ('24) 50개기관×1명×2,690천×12월=1,614 - 운영기관 운영비 : ('23) 1,155 → ('24) 1,155백만원(전년수준) -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 ('23) 113 → ('24) 113백만원(전년수준)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24) 810백만원(순증)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 ('23) 315 → **('24) 315백만원** (전년수준)

이 중에서 ‘국제결혼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관련 법령, 배우자의 현지문화・관습,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임.

그런데, 법무부가 2024년에 집행한 동 내역사업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국제결혼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타 내역사업의 공공요금에 일반수용비를 집행한 사례임.

아래 사례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출한 웹관련 사용요금인데, 이는 국제결혼 프로그램 운영과는 무관한 타 내역사업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온라인 화상 웹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고, 아울러 비목과 관련해서도 회선 사용료나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납부는 지침 상 공공요금(210-02)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일반수용비를 타 내역사업의 공공요금에 집행한 사례>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요청관서명
2024-01-25	온라인 시스코웹엑스 관리과-944(2021. 2.16.)	20,35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4-02-26	온라인 시스코웹엑스 관리과-944(2021. 2.16.)	20,35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4-03-29	시스코웹엑스 사용요금	20,35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	⋮	⋮
2024-12-26	시스코 웹엑스 사용료	20,35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연간 합계	244,200	

또한, 다른 세부사업의 목적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사례임.

법무부는 아래 표와 같이 '국제결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준법시민교육 또는 국적수여식이나, 세계인의 날 물품 구매 목적을 위해 지출하였음.

그러나, ① 준법시민교육은 영주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질서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고(A사례), ②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이민자간 소통・교류를 통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며(B사례), ③ 국적수여식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C사례), 세 가지 모두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세부사업의 시행사업이며, '국제결혼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사업임.

특히, 상기 3개 사업(①~③) 모두 2024년 기준으로 준법시민교육(영주 및 귀화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에 2억원, 세계인의 날 6,800만원, 국적수여식 3억 5,100만원의 일반수용비 예산이 이미 별도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제결혼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 예산이 이른바 쌈짓돈으로 타 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 사례

를 참고하여 유사사례를 전수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업비를 국제결혼프로그램과 무관한 타 세부사업 추진에 집행한 사례>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요청관서명
2024-02-13	준법시민교육 물품구매(**A사례**)	24,54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4-03-11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물품구매(**A사례**)	102,340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4-05-27	세계인의 날 물품(기념품) 구매(**B사례**)	870,00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4-05-27	세계인의 날 물품(기념품) 구매(**B사례**)	230,00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4-12-10	국적수여식 운영비(물품 구매)(**C사례**)	93,63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와 같이,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 등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전혀 무관한 타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한 뒤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이 여유 재원으로 활용되어 자유롭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필요경비라면 규정에 적합한 비목으로 사업비를 재편성한 뒤 예산심의를 받는 등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 결산 개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6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14개), 출장소(22개), 외국인보호소(2개), 출입국외국인센터(1개) 총 45개 소속기관 공무원의 봉급 및 관련 수당 등 인건비 제공을 통해 원활한 기관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666억 3,100만원이고, 17억 8,5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648억 4,600만원이며, 이 중 1,640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166,631	-	△1,785	-	164,846	164,060	-	786	172,906
·소속기관 인건비	166,631	-	△1,785	-	164,846	164,060	-	786	172,906

▢ 관례적인 인건비 이·전용을 통한 여유 재원 활용 지양 필요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인건비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 인건비에서 국제법무국기본경비(7011-266) 5억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7018-250) 1억 8,500만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1232-300) 6억원,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5억원, 총 17억 8,500만원을 이·전용한 뒤, 타 사업비 부족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배상금 또는 미지급 자문비용 지급과 같이 법률상 지급의무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우편요금·전기료·전화 요금과 같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경비 부족 재원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음.

<2024년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인건비(총액)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4.8.9.)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110 -01	500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210 -01	ISDS 사건 중재행정비용 및 미지급 연체 법률자문

	인건비(총액) (7002-100)			(7011-266)		비용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한 전용 재원 활용
자체전용 (24.12.2.)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인건비(총액) (7002-100)	110 -01	185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기본 경비 (7018-250)	210 -02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충당
자체이용 (24.12.3)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인건비(총액) (7002-100)	110 -01	600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210 -02	전기사용량 증가, 단가인상 등 사유로 부족분이 발생한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자체이용 (24.12.27)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인건비(총액) (7002-100)	110 -01	500	국가배상금지급 (1031-301)	320 -02	국가소송법 등 법률상 지급의무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배상금 지급 소요 충당

특히, 최근 4년간 이·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매년 평균 4.8억원 가량 이·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에는 17.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용이 관례화되는 추세로 보임.

<최근 4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인건비(총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51,898	151,898	△506	154,312	143,375	92.6	92.9	10,937
2022	151,120	150,893	△456	150,437	14,9743	99.2	99.5	694
2023	157,706	157,706	△478	157,228	155,234	98.4	98.7	1,994
2024	166,631	166,631	△1,785	164,846	160,060	98.9	97.1	786

법무부는 예산 이·전용 현상에 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간호인력 추가 채용 등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분 해결을 위해, 2023년에는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활성화방안”에 따른 채용 및 임금 충당 등을 위해 이·전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연도별 이·전용 주요 내역 및 사유>

연 도	주요내역 및 사유
2022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 PCR 검사 등 신속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추가 채용 등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감 436백만원
2023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활성화방안” 에 따른 채용 및 임금 등 충당을 위해 전용 감 478백원원
2024	국제법무국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한 전용 재원 활용, 체류외국인 증가로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감 685백만원, 전기·수도 요금 등 부족분 충당 및 국가소송법 등 법률상 지급의무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배상급 지급 수요 충당을 위해 이용 감 1,100백만원

하지만, 2023년 국무조정실 요청으로 청년인턴을 활성화하는 것이나, 2024년 공공요금 부족분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 최소화를 규정한 기재부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여유 재원 활용으로서 적절한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집행 점검을 통해 동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면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적정 예산이라면 향후 이·전용 최소화 노력을 통해 더 이상의 여유 재원으로 반복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난민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방식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필요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인력 보강을 위해 단속인력 226명을 증원하는 2023년 하반기 수시직제 요구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이 중 증원 55명, 재배치 33명 등 총 88명을 보강하였음.

다만, 단속인력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중인 난민업무 담당자 33명을 단속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대신, 난민심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전문임기제 33명을 정원 외로 신규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전문임기제 공무원(다급) 33명 채용을 준비중이었으나, 관련 예산 소요액을 2024년도 기타직 보수(110-02)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이·전용으로 마련한 7억 6,700만원으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증원과 그에 따른 예산안 미반영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전문임기제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 전문임기제 운영	771	771	767	-	1,538	1,538
- 기타직보수(110-02)	771	771	767	-	1,538	1,538
봉급	681	681	663	-	1,344	1,344
가족수당	4	4	4	-	8	8
시간외수당	32	32	51	-	83	83
정액급식비	20	20	24	-	44	44
직급보조비	27	27	31	-	58	58
연가보상비	7	7	△5	-	2	2

특히, 2024년 실제 선발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듬해인 2024년 6월에 최초 임용되기 시작하였고, 4개 청(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는 2024년 11월에서야 7명이 최초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음영 참조), 현재까지도 당초 계획인원 총 33명 중 30명 채용으로 3명이 공석인 등 반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어 인력충원 및 운영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난민심사 전문임기제(다급) 채용 현황>

(단위: 명)

소속	정원	현원	성명	채용 공고일	면접일	채용일	비고
서울청	13	13	권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박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정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임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위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김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김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이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전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김OO	2024-05-22	2024-06-03	2024-07-22	
			박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이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서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부산청	4	3	성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박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 25. 5. 의원면직 - 사유 : 일신상의 사유 - 25.10. 채용예정
			류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이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인천청	4	3	한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양OO	2024-05-03	2024-06-03	2024-07-22	
			박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안OO	2024-05-03	2024-06-03	2024-07-22	* 25. 5. 의원면직 - 사유 : 개인 사정 - 25.9. 채용예정
수원청	4	2	한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 25. 6. 의원면직 - 사유 : 이직 - 25.9. 채용예정
			김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박OO	2025-03-24	2025-04-30	2025-07-01	- '25년 채용

소속	정원	현원	성명	채용 공고일	면접일	채용일	비고
제주청	1	1	진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대구 사무소	1	1	정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광주 사무소	2	2	정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송OO	2024-08-22	2024-10-02	2024-11-18	
인천 공항청	1	1	이OO	2024-02-26	2024-04-05	2024-06-03	
양주 사무소	1	1	공OO	2024-05-03	2024-06-03	2024-07-22	
울산 사무소	1	1	고OO	2024-05-03	2024-06-03	2024-07-22	
안산 사무소	1	1	이OO	2024-05-03	2024-06-03	2024-07-10	
합 계	33	29					

아울러 전문임기제는 정원외 현원으로서 예산상 운영되는 직제 외의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난민심사 수요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난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임기제가 아니라 정식 직제내의 정원으로 필요 인력을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임기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전반적 인력 충원 및 운영에 대해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이 필요할 것임.

마. 검찰국

(1) 검찰청 소관 결산 개요

법무부는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의 '검찰활동(1300)' 프로그램 내 주요사업비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내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02, 7018-252)' 등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검찰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2,255억 2,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조 2,153억 9,500만원임.

<연도별 검찰청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2020	1,099,439	1,074,074
2021	1,165,986	1,120,818
2022	1,162,670	1,134,512
2023	1,187,350	1,178,488
2024	1,225,520	1,215,395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검찰청 소관 예산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속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에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이 중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는 다음 표와 같이 법무부 소관 예산과 검찰청 소관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음.

<검찰청 소관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검찰청**	82,041	205	△1,796	80,450	80,128	–	32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법무부	6,770	–	△123	6,647	6,638	–	9
	검찰청	1,154	–	△83	1,071	953	–	118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법무부	142	–	△1	141	141	–	–
	검찰청	10,879	97	△1,209	9,767	9,742	–	25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법무부	2,128	–	△2	2,126	2,125	–	1
	검찰청	573	–	–	573	564	–	9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법무부	651	–	△1	650	650	–	–
	검찰청	24,806	–	△182	24,624	24,528	49	47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검찰청**	1,800	–	–	1,800	1,756	–	44
검찰업무 정보화(정보화)	**검찰청**	36,839	–	–	36,839	36,312	–	526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정보화)	법무부	46	–	△9	37	37	–	–
	검찰청	10,373	–	9	10,382	10,033	–	349
형사부 등 수사지원	**검찰청**	86,475	37	△1,381	85,131	84,934	145	52
공공수사	법무부	289	–	△266	23	23	–	–
	검찰청	2,987	–	△7	2,980	2,979	–	1

사업명	소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법무부	173	-	-	173	168	-	5
	검찰청	14,471	-	△111	14,360	14,346	-	15
마약수사	법무부	295	-	△3	292	213	-	79
	검찰청	7,909	-	△494	7,415	7,387	-	29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검찰청**	3,481	-	△150	3,331	3,328	-	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법무부	143	-	△9	134	134	-	-
	검찰청	6,109	-	△42	6,067	6,059	-	7
공판활동지원	**검찰청**	2,037	-	△2	2,035	2,034	-	1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법무부	200	-	△21	179	179	-	-
	검찰청	7,062	-	11	7,073	7,042	-	30
형사보상	**검찰청**	40,000	-	37,225	77,225	77,219	-	6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	**검찰청**	829,262	-	△32,538	796,724	790,870	-	5,855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검찰청**	31,365	-	△788	30,577	29,885	-	692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검찰청**	14,711	-	△7	14,704	14,653	-	51

(2)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

▢ 결산 개요

‘검찰청 시설운영’은 전국 67개 검찰청의 기본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편성되는 기본경비성 사업으로, 청소·시설·조경 등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각 청사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한편, 각 청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 관사 및 비상대기소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2024년도 예산액은 820억 4,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억 500만원 및 이·전용 등 감액 17억 9,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04억 5,000만원이며, 이 중 80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 시설운영 결산내역(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검찰청 시설운영	82,041	205	△1,796	-	80,450	80,128	-	322	82,703
·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27,290	-	△996	-	26,293	26,281	-	12	28,594
· 검찰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45,223**	**205**	**△484**	**-**	**44,944**	**44,636**	**-**	**308**	**42,525**
· 어린이집 운영 위탁	3,132	-	-	-	3,132	3,132	-	-	3,187
· 관사 및 비상 대기소 운영	6,396	-	△315	-	6,081	6,079	-	2	8,397

한편,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는 검찰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항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47억 1,1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7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47억 400만원이며, 이 중 14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결산내역(비목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14,711	-	△7	-	14,704	14,653	-	51	16,079
• 일반수용비(210-01)	1,994	-	△62	-	1,932	1,932	-	-	2,12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308	-	-	-	2,308	2,305	-	3	2,308
• 피복비(210-03)	386	-	△40	-	346	346	-	-	386
• 임차료(210-07)	2,443	-	124	-	2,567	2,567	-	-	2,753
• 유류비(210-08)	1,782	-	-	-	1,782	1,740	-	42	1,78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18**	**-**	**△557**	**-**	**261**	**260**	**-**	**1**	**818**
• 복리후생비(210-12)	1,632	-	△30	-	1,602	1,601	-	2	2,032
• 일반용역비(210-14)	150	-	△25	-	125	123	-	2	170
• 기타운영비(210-16)	18	-	-	-	18	18	-	-	48
• 국내여비(220-01)	1,845	-	754	-	2,599	2,598	-	1	2,295
• 국외업무여비(220-02)	88	-	25	-	113	113	-	-	8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68	-	-	-	368	368	-	-	394
• 자산취득비(430-01)	879	-	△197	-	682	682	-	-	879

▢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전용 지양 필요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이나 통신시설 및 차량·선박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집행되는 비목으로, 기관의 적극적 사업수행이나 신규 업무추진 등을 위한 항목이 아니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시설·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항목에 해당함.

이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91]도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다른 항목으로 과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 및 검찰청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다른 사업·항목 등으로 과다하게 전용·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의 경우 전국 검찰청의 건물 유지보수 및 차량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1,8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의 68.1%에 이르는 5억 5,7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4억 8,2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7,500만원) 집행하였음.[92]

91)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157

<2024회계연도 검찰국 소관 세부사업별 시설장비유지비(210-09)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802**	**△614**	**4,188**	**4,185**	**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923	△103	820	819	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85	△6	179	179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6,323	-	6,323	6,178	145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334-501)	312	-	312	296	17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 (1335-306)	15	-	15	15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818**	**△557**	**261**	**260**	**1**
합 계	13,378	△1,279	12,099	11,932	167

자료: 법무부

또한,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의 경우에도 전력설비 및 통신시설, 출입통제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물·기계설비 점검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 중 6억 1,4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3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2억 7,400만원) 집행하였음.

이는 2023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당시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본경비(7018-252)에서 4억 3,000만원을, 검찰청시설운영(1333-300)에서 4억 1,600만원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음.

92) 법무부는 국내여비 단가 인상 등으로 예산 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한 불요불급한 수요의 집행을 연기·취소하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전용하였다는 설명임.

<2023회계연도 검찰국 소관 세부사업별 시설장비유지비(210-09)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128**	**△416**	**3,712**	**3,711**	**1**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785	△10	775	773	2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85	△6	179	179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6,192	-	6,192	6,136	5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334-501)	285	-	285	247	38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 (1335-306)	15	-	15	15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818**	**△430**	**388**	**388**	**-**
합 계	12,408	△862	11,545	11,449	97

자료: 법무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이나 세목조정 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법무부 및 검찰청과 같이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타 비목 이·전용이 과다할 경우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청사·차량·장비 유지보수 소요 등에 적시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기관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과다한 이·전용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이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전용 등이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공공수사(1335-302)

▢ 결산 개요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은 과학수사기법 개발, 연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 등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지원하고, 과학수사에 필요한 첨단 시설·장비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해외 학회·교육 참석 등 국제과학수사 협력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110억 2,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9,700만원 및 이·전용 등 감액 12억 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99억 800만원이며, 이 중 98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1,021	97	△1,210	-	9,908	9,883	-	25	12,250
· 과학수사활동 지원	4,752	-	△707	-	4,045	4,021	-	23	4,974
·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 운영	5,951	97	△451	-	5,597	5,595	-	2	6,951
· 국제과학수사 협력 지원	316	-	△51	-	265	265	-	-	317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반영

한편, ‘공공수사’는 선거사범, 국가안전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 등 공공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사업추진비 등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국가보안유공자 및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32억 7,6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2억 7,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0억 300만원이며, 이 중 30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공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수사	3,276	-	△273	-	3,003	3,002	-	1	3,246
·공공수사 지원	523	-	△20	-	503	502	-	1	522
·공공수사활동 경비	2,464	-	13	-	2,477	2,477	-	-	2,467
·포상금 지급	289	-	△266	-	23	23	-	-	258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 예산 증액 시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법무부는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19.4%인 18억 1,300만원 증액하여 111억 4,900만원 규모로 제출한 바 있음.[93]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해당 사업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법무부가 실제 소요에 맞지 않게 과다 증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2023년에 7억 7,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던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2024년도에는 법무부가 '통신자료 제공 통지 대행료'[94] 등 명목으로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음.

이는 예산안 편성 당시 법무부와 검찰청이 통지 대행 비용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연간 9억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였으나, 관련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실제 통지가 2024년 9월경부터 가능했기 때문임.[95] 그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청은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약 1억원만을 통지 대행료로 지출하였고, 8억원 이상의 잔액을 형사보상금 및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

93)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최종적으로 110억 2,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94) '통신자료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등)에 따라 202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을 근거로, 검찰청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 이를 문자·우편 등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말함.

95) 2023년 말 법률 개정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시스템이 즉시 구축되어 2024년 초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무리였다고 볼 수 있음.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주요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9,336	8,797	11,021 (+1,813)	97	△1,210	9,908	9,883	25	12,250
· 일반수용비 (210-01)	771	718	1,737 (+966)	-	△867	870	870	-	1,73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85	773	923 (+138)	-	△103	820	819	1	895
· 자산취득비 (430-01)	3,984	3,686	4,224 (+240)	-	△340	3,884	3,883	1	5,900
· 국내여비 (220-01)	188	261	188 (-)	-	195	383	383	-	188

* 주: 기타 비목이 생략되어 금액 합계 불일치,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반영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3년도에 7억 8,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던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경우에도 2024년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2,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1,900만원이어서 1억원 이상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였음. 그 밖에도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이 전년도 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잔액 3억 4,0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공공수사(1335-302) 사업의 내역사업 중 '포상금' 예산안 또한 전년 대비 77.3%인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900만원 규

모로 제출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2,300만원으로 집행률이 8.0%에 그쳤고,[96] 나머지 2억 6,600만원은 전부 형사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공공수사 중 포상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수사	3,109	3,106	3,276 (+167)	-	△273	3,003	3,002	1	3,246
· 포상금 (310-03)	163	162	289 (+126)	-	△266	23	23	-	258

* 주: 기타 비목 생략,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예산 편성은 한정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사업예산을 증액함에 있어서는 실제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청은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향후의 실제 소요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여 증액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97] 그 결과 해당 증액분은 사실상 그대로 다른 사업을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었음.

96) 특히, 이 중 '선거범죄포상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극히 저조한 문제가 있으나, 매년 지적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97) 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반대로, 법무부와 검찰청은 2023년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사업의 국내여비(220-01)가 크게 부족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7,3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음에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이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4년 예산도 크게 부족하여 1억 9,50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부터 전용받아 집행하였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 및 검찰청은 예산 증액 시 그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항목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 결산 개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은 전국 검찰청의 사무원·전화상담원 등 공무직 채용·운영을 지원하고, 수사·정보수집 등 검사 및 수사관의 검찰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검찰의 인력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검찰청의 감찰·인권보호·양성평등 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254억 5,7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1억 8,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52억 7,400만원이며, 이 중 25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이월,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457	-	△183	-	25,274	25,178	49	47	23,967
·검찰업무지원 인력 운영	9,387	-	△160	-	9,227	9,221	-	6	9,631
·검찰업무지원	9,350	-	534	-	9,886	9,873	-	12	8,566
·인력선발 및 관리 지원	3,796	-	△39	-	3,758	3,694	49	15	3,665
·감찰활동 강화	945	-	-	-	944	930	-	14	937
·인권감독 강화	1,829	-	△519	-	1,310	1,309	-	-	1,017
·양성평등 강화	150	-	-	-	150	150	-	-	15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8.9%로 높고, 이·전용액이나 이월·불용액도 크지 않아 전체 집행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반적으로 철저한 예산 편성·집행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 지침[98]에 따른 비목 구분 등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예를 들어, 용역비는 크게 '일반용역비(210-14)'와 '연구용역비(260)'로 구분되고, 연구용역비(260)는 연구의 내용·성격에 따라 다시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나뉘는데, 법무부와 검찰청은 이들 비목 간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로 인해 다음 표와 같이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인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99]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인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9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99) 타 기관은 '역량평가'를 대부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등 다른 부서는 모두 이를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연구용역비(260) 전체 과제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계약방법
일반연구비(260-01)	**2024년도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	**292**	**24.1.30. ~12.31.**	**주식회사 휴먼컨설팅 앤메니지먼트**	**일반경쟁**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45	24.7.4. ~12.1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한경쟁
	형사조정제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0	24.5.31. ~11.30.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검찰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 합리적 의사소통 강화 방안 연구	30	24.6.14. ~12.13.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수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제도 연구	30	24.6.11. ~10.10.	한국형사 소송법학회	수의계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법 운용방안 연구	30	24.6.25. ~12.24.	한국안전학회	수의계약
	안보위해범죄 관련 각국의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 논의 및 적용 실태	30	24.7.10. ~25.7.9.	한국헌법학회	수의계약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헌법불합치 등 결정 사례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20	24.7.31. ~25.5.3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AI 기술 이용 기업 공시자료,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20	24.12.23. ~25.6.22.	한국과학 기술원	수의계약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33	24.7.15. ~11.30.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한경쟁
정책연구비(260-02)	AI 등 생성형 디지털기술 등을 이용한 신종 명예훼손 범죄의 대응방안 연구	25	24.6.3. ~11.26.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수의계약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정서적 학대의 유형 및 판단 기준에 관한 해외 법제 및 해외 처벌 사례 연구	25	24.6.14. ~12.13.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수의계약
	해외 주요국가의 수사기관 내 인권보호 담당자 제도 연구	20	24.5.27. ~11.26.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계약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의 석방과 관련한 심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권 강화 연구	20	24.6.13. ~11.12.	한국피해자 학회	수의계약

자료: 법무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청이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한 그 외의 연구용역 또한 해당 과제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정책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는 '각 부처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인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됨.[100]

둘째, 세부사업 전체의 집행실적이 양호한 것과 달리, 개별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례가 있었음.

예를 들어, '전문검사·수사관 육성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검찰의 전문분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매년 국외 전문가 초청 예산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다음 표와 같이 실제 집행액은 매년 2,000만원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국외 전문가 초청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101]

---

100)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4. 8.

나아가 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정책연구비(260-02)는 예산편성지침 상 전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차년도 정책연구비 총액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이소요 발생으로 지출한도 보다 증액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감편성·집행을 위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예산집행지침 상으로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록·공개 의무, 행정안전부의 기관별 정책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할 수 있는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은 가급적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하여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101) 아울러,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수사역량 강화 교육'이나 '직원 직무교육훈련비' 등의 경우에도 그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내 일부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전문검사·수사관 육성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150,000	16,693	150,000	25,708	150,000	19,580
전문수사역량 강화 교육	150,000	150,000	185,000	108,205	185,000	110,103
직원 직무교육훈련비	150,000	112,940	150,000	99,500	150,000	112,800

자료: 법무부

셋째, 그 외에도 '공사비(420-03)' 및 '자산취득비(430-01)' 등 항목의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항목의 잔액을 다른 항목으로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음.

먼저, 구치감 및 민원실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의 경우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14억 2,500만원이었으나, 이 중 9억 600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6.2%인 나머지 5억 1,600만원을 모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또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장비 구입 및 각 청사 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의 경우에도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었으나, 이 중 4억 600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4.5%에 해당하는 2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집행하였음.

이러한 사유 등으로 본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전체 예산액 대비 98.9%로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및 동 시행령[102]에 따라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바,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0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5)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마약수사(1335-304),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등

▢ 결산 개요

‘형사부 등 수사지원’은 전국 검찰청의 각종 수사활동 일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사와 수사관의 범죄수사 활동비(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경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형사부 등 검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2024년도 예산액은 864억 7,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700만원 및 이·전용 등 감액 13억 8,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51억 3,100만원이며, 이 중 849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500만원을 이월,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86,475	37	△1,381	-	85,131	84,934	145	52	85,664
• 수사보조인력 운영	23,584	-	△2,354	-	21,230	21,223	-	7	24,143
• 수사활동 일반	62,354	37	973	-	63,364	63,176	145	42	60,840
•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195	-	-	-	195	195	-	-	339
• 호송 인치 업무	342	-	-	-	342	339		3	342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한편, ‘마약수사’는 마약수사에 필요한 장비구입·차량임차 등의 경비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을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주최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103])’ 및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대응을 목표로 설립된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104])’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82억 4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4억 9,7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7억 700만원이며, 이 중 76억원을 집행하고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마약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마약수사	8,204	-	△497	-	7,707	7,600	-	107	9,584
• 마약사범 수사	7,902	-	△497	-	7,405	7,298	-	107	9,176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138	-	-	-	138	138	-	-	138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운영(APICC)	164	-	-	-	164	164	-	-	27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103)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04)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끝으로,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는 공공부문에서의 부정·불법을 근절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 행위 및 권력형 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하여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증거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62억 5,2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5,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2억 100만원이며, 이 중 6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52	-	△51	-	6,201	6,193	-	7	6,124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	5,412	-	△35	-	5,377	5,375	-	2	5,284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지원	840	-	△16	-	824	818	-	5	84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 일반수용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

‘일반수용비(210-01)’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해 편성되는 비목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고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예산낭비 소지도 큰 항목임. 이에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105]에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106]

그러나 법무부 및 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예산에 일반수용비(210-01)를 과다하게 편성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

①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및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 내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가 2024년도 기준 각각 3억 510만원, 1억 4,000만원 및 45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이는 금융회사 등이 검찰의 요구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목적·일자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임.[107]

---

10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7

106) 나아가 위 지침에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07)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매년 반기별로 통보비용 청구 현황을 취합하여 검찰 등에 송부하고, 검찰 등이 그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고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문제가 지적되었고,[108] 그에 따라 총 1억 9,000만원의 감액 의결도 하였음.[109]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회 감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처음부터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합 계
2021	예산액	435,100	200,000	75,000	710,100
	집행액	-	172,656	-	172,656
2022	예산액	435,100	200,000	75,000	710,100
	집행액	61,419	25,062	-	86,481
2023	예산액	435,100	200,000	75,000	710,100
	집행액	-	169,407	-	169,407
2024	예산액	305,100	140,000	4,500	449,600
	집행액	92,445	66,060	-	158,504
2025	예산액	305,100	90,400	4,500	400,00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108)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109) 이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재차 문제가 제기되어 5,0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와 검찰청은 당초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 금융거래정보 통보건수를 32만 550건으로,[110] 건당 통보비용을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설정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2024년 전체 통보건수는 8만 548건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당 통보비용이 500원 수준으로 저렴한 모바일 통보도 7,086건이었는바, 이는 당초 예산액 산출내역과 현격히 차이나는 부분임.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단위: 건, %)

연 도	전체 통보(A)	우편 통보	모바일 통보(B)	B/A
2021	49,544	49,333	211	0.43
2022	67,342	62,798	4,544	6.74
2023	106,695	98,167	8,528	7.99
2024	**80,548**	**73,462**	**7,086**	**8.8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② 또한,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의 일반수용비(210-01)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111]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110)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 산출 내역의 통보 건수 또한 10만건 줄어든 22만 550건으로 변경되었음.

11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 ⑤ (생 략)

위하여 소요되는 위원 수당 등도 1억 3,3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이 또한 과거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어[112] 예산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음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대비 4.8%에 불과한 645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여전히 실제 소요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연도별 영장심의위원회 수당 등 집행실적>

(단위: 천원,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210-01)	780,000	780,000	200,000	133,000
집행액	10,572	4,672	5,520	6,450
개최실적	5	2	3	3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③ 한편, 최근 국내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113] 2024년도부터 마약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한 바 있음.[114] 그에 따라 2024년도 ‘마약수사’의 일반수용비(210-01) 항목에는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4억 4,000만원,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6,700만원 및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 1억 9,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기도 하였음.

112)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4. 8. 등

1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마약 대응 예산 대폭 확대…정부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2023. 9. 12.

114) 2023년도 기준 48억 5,700만원이었던 법무부 및 검찰청의 마약수사 관련 예산은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68.9%인 33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8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은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분석·추적할 수 있는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사업이며,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및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은 모두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실무협의체 회의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사업임.

그러나 이들 사업서도 지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출내역의 정확성이 떨어져 예산액 규모의 과다함이 지적되었는바,[115]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 사업 모두 실제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이 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마약수사 내 일반수용비 중 2024년 주요 신규사업의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B/A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440,000	345,000	78.4%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67,000	13,200	19.7%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	199,160	65,253	32.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반수용비(210-01)는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에 관한 감시가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측

115)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면이 있는바, 위 ①~③의 사례와 같이 일반수용비(210-01)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 범용성이 넓은 비목 특성상 예산낭비 소지가 커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한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위 사례 모두 일반수용비(210-01)가 과다 편성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에도 해당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전체에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116] 이는 과다편성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집행잔액을 행정사무 비용이나 소규모 물품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모두 지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수용비(210-01)의 과다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음.

116) 마약수사(1335-304) 사업에서만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다른 두 세부사업에서는 불용액이 전혀 없었음.

(6)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등

▢ 결산 개요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는 주가조작,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생활침해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에게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조치 및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146억 4,4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1억 1,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45억 3,300만원이며, 이 중 145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4,644	-	△111	-	14,533	14,513	-	20	14,456
·국민생활침해 사범 수사	14,138	-	△111	-	14,027	14,007	-	20	13,950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276	-	-	-	276	276	-	-	276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	230	-	-	-	230	230	-	-	23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반영

▢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과다전용 반복에 대한 주의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우편·전화·통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상경비성 비목으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액 발생 시 기관 업무수행 자체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이는 각종 수사·공판 등 활동을 위하여 우편·전화·통신비는 물론, 전국 청사의 전기요금 등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검찰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117] 단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매년 예산총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118] 필요시 자체 전용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119]

다만, 이러한 예외는 당초 예산편성 시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실제 소요를 파악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목적의 경비

---

11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231

119)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4).

를 사후에 얼마든지 이·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법무부와 검찰청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2024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당초 총 29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이어 재차 상당 규모의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14.1%인 41억 2,1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로부터 전용하여, 총 33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1	27,631	△545	27,086	26,935	97.5	99.4	151
2022	28,197	437	28,634	28,621	101.5	100.0	13
2023	27,762	**4,727**	32,489	32,482	117.0	100.0	7
2024	29,158	**4,121**	33,279	33,234	114.0	99.9	45

자료: 법무부

검찰청의 수사·공판 등 주요활동 규모, 전국적인 청사 운영 규모 및 연간 공공요금 등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항목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실제 집행소요가 당초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예산집행의 전반적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음.

실제로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5)'의 경우 자산취득비(430-01)에서 6억 3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액 대비 129.8%에 해당하는 2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해당 자산취득비(430-01)는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6억 9,400만원에서 7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한 것인바, 이는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청이 국회 증액분을 그대로 다른 용도에 전용하여 집행한 결과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음.

<검찰청 소관 주요 세부사업의 공공요금 충당을 위한 이 ·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0.22)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60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2	공공요금 부족
소 계			603	당초 예산액: 2,019, 집행액: 2,621(129.8%)		
자체전용 (2024.9.6.)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430-01	270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4.10.22)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430-01	900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2.6.)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110-03	709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소 계			1,879	당초 예산액: 6,910, 집행액: 8,775(127.0%)		
자체전용 (2024.10.22.)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420-03	516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4.10.22.)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430-01	19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2	공공요금 부족
소 계			707	당초 예산액: 1,131, 집행액: 1,832(162.0%)		
자체전용 (2024.10.22.)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17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4.10.22.)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71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4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소 계			932	당초 예산액: 5,884, 집행액: 6,795(115.5%)		
합 계			4,12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의 경우 자산취득비(430-01)에서 11억 7,000만원을, 상용임금(110-03)에서 7억 9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액 대비 127.0%인 87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그로 인해 자산취득비(430-01)의 예산현액이 2024년도 예산액 대비 57.4%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당초 계획하였던 장비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내 자산취득비의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내역>

(단위: 천원)

2024년도 당초 계획		2024년도 실제 집행 내역	
항목	예산액	항목	집행액
수사기록 작성용 복사기(교체용)	135,000	복사기	394,840
기록열람, 등사용 복사기	252,000		
수사기록 입력용 디지털 스캐너	27,000	스캐너	93,590
검사실용 문서세단기	58,080	세단기	43,367
검사실 등 집기	777,708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 캐비닛 등)	978,112
사건관계인 대기실 등 노후집기교체	260,000		
검사실 복합기 등	836,000	복합기	105,623
수사보조장비 및 환경개선 등	558,000	프린터	51,776
합 계	2,903,788	합 계	1,667,308

자료: 법무부

그 밖에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의 경우 7억 700만원을,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사업의 경우 9억 3,200만원을 공사비(420-03)와 자산취득비(430-01)에서 전용하였는바, 특히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의 경우 전용액을 더한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의 162.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이는 공사비(420-03) 예산액의 36.2% 및 자산취득비(430-01) 예산액의 30.8%를 각각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전반적 성과와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고, 2024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검찰청 공공요금 부족분이 크게 발생하여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최근의 공공요금 등 인상은 주로 2023년 단행되었던 것이고, 2024년도는 전년 대비 진정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도 실제 집행액 규모는 예산안 편성 시 전혀 예측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다른 항목의 큰 증액에도 2024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향후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편성함으로써, 필수경비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1335-305)

▢ 결산 개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34억 8,1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3억 3,100만원이며, 이 중 3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3,481	-	△150	-	3,331	3,328	-	3	3,70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2,364	-	△13	-	2,351	2,349	-	2	2,549
·진술분석관 운영	1,117	-	△137	-	980	979	-	1	1,153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반영

▢ 각종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 주의 및 개선 필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는 디지털성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찰청 소관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특히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와 검찰청도 2024년도 예산계상액 대비 95.6%의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개별 내역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

먼저,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본 내역사업은 이른바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등 관련 수사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고,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매년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4년 기준 771만원만이 집행되어 8.5%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실적이 저조함. 특히, 본 내역사업은 처음 실시된 2021년에는 3,681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그 이후 집행실적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문제가 있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 일부 내역사업의 최근 4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관련 전문화 교육	91,000	36,812	91,000	11,060	91,000	7,122	91,000	7,712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	–	–	–	67,000	1,441	67,000	14,365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60,000	2,291	60,000	–	22,800	3,254	15,800	3,600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70,000	825	58,527	–	58,527	6,721	40,527	20,826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자문료	222,000	100	200,000	5	60,000	18,500	30,000	16,000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도 집행률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전담 검사·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나, 2024년도 기준 6,700만원의 예산 중 1,437만원만 집행되어 21.4% 집행에 그쳤음.

또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도 2024년도 기준 집행률이 22.8%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였음.

그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의 경우, 실적 부진을 수차례 지적[120]받은 이후 이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4년도 집행률이 각각 51.4% 및 53.3%로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부진이 각 내역사업에 대한 일선 청의 인지 부족 및 수사·공판 등 사건처리 업무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라는 본 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120) 법제사법위원회,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3. 8. 등

(8) 공판활동지원(1337-300)

▢ 결산 개요

‘공판활동지원’은 각급 검찰청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공판부 검사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의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20억 3,7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2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0억 3,500만원이며, 이 중 20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판활동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판활동지원	2,037	-	△2	-	2,035	2,034	-	1	2,037
·공소유지 지원	1,892	-	△62	-	1,829	1,829	-	-	1,892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정립	145	-	60	-	205	205	-	1	145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반영

▢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신중한 상고제기 필요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은 기계적 상고를 지양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발표하였음.[121] 이는 당시 운영되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검찰청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122]을 마련하여 각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50명 이하의 변호사·교수·법학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1심 및 2심에서 각각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함. 이를 위해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

121) 파이낸셜뉴스, "형사상고심의委 첫발... 상고 남발 막는다", 2018. 1. 11.

122)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2018. 1. 1.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각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 대상) ①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여 검사로 하여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다만, 공소심의위원회 등 다른 절차의 심의에 따른 시간 소요, 위원회 심의 정족수 충족 곤란, 법원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 청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 관계자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최 실적	51	13	33	**84**	**78**
예산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집행액	41,240	10,100	27,940	75,000	69,75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연도별로 담당 검사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준수 여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상고 포기 의견 등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음. 또한, 다른 유사 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준수율이 유독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심의결과 준수 여부 관련 통계>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형사상고 심의위원회	상고 포기 의견	1	9	**30**	**29**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	1	**15**	**12**
	상고 제기 의견	20	36	116	153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	–	–	1
검찰시민 위원회	총 심의건수*	347	520	898	852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11	13	30	16
영장심의 위원회	영장청구 적정의견	1	–	–	–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	–	–	–
	영장청구 부적정의견	4	2	3	4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	–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허가 의견	456	601	562	638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	1	4	–
	불허가 의견	130	224	193	168
	심의와 다른 검사 결정	–	–	1	–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최건수**	3	–	–	3

* 심의대상: 기소 · 불기소 · 구속취소 · 구속영장(재)청구 · 항고의 적정성 등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지난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검사 결정의 상당 비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랐던 것으로 보임. 법률신문, “수심위 결론 67% 검찰과 달랐다”, 2024. 8. 2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위원회의 의견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123]에 따라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상고 포기 의견에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대검찰청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당초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이미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심의위원회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심의기준[124]에 따라 상고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123)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심의 효력)** ①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124)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심의기준)**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하고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고하되, 아래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1. 1심 및 2심에서 판단한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의 오류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고 포기
2. 공범의 무죄가 확정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고 포기

상고 포기 의견을 의결하였음에도[125] 검사가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공권력을 통해 피고인의 형사절차로부터의 해방을 지연시켜 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무리한 공소 유지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126] 따라서, 검찰청은 향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취지 및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상고제기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127] 나아가, 심의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한계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하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심의위원회 개최건수 자체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심의위원회는 1심 및 2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된 사건이 심의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등으로 1심·2심의 전부 무죄 판결 자체가 증대된 때문은 아닌지[128]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129]

---

3.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공판 중 진범이 밝혀진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대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상고 포기

125)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검찰 출신 위원이 많으며, 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여 '상고 제기' 의견을 지나치게 많이 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파이낸셜뉴스, "10건 중 8건 '상고 권하는' 상고심의위…"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해 한계" 지적", 2025. 3. 3.

126) 매일경제, "檢, 무죄에도 끝까지 대법원行 … 국내기업 골병, 외국기업은 韓기피", 2025. 2. 23.

127)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검사의 상고 제기가 무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고심 판결의 최종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청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음. 한편, 위 2025. 2. 23.자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1·2심 무죄가 나온 이후 검찰이 상고한 사건의 최종심 결과에 대한 통계 자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128)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1심 및 2심의 무죄 판결 건수는 2024년 들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부산일보, "검찰 기소 사건 1심 무죄율, 4년 연속 1% 육박", 2025. 2. 18, 매일경제, "檢 '묻지마 기소'에 2심까지 무죄 3823건", 2025. 2. 23. 등 참조.

129) 나아가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기계적 상소를 막기 위해 무죄 등 사건에 대한 사후 검토를 통해 검사를 평정하는 '사건평정위원회' 등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매일경제, "檢 항소 남발해도 승승장구…'무죄평가제' 있으나 마나", 2025. 2. 23.

(9) 형사보상(1337-302)

▢ 결산 개요

‘형사보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의자, 검사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심·비상상고 등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속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구금·형집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400억원이고, 이·전용 등 증액 372억 2,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72억 2,500만원이며, 이 중 77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보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형사보상	40,000	-	37,225	-	77,225	77,219	-	6	42,000

▢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형사보상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30]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간 지급 규모 산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위 법률 제21조의2[131]에 따라 검찰청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132] 단서는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매년 예산총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보상금' 등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

13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1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32)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133] 법무부와 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발생 시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134]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회계연도의 경우 그 이·전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심 등과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지급 소요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당초 편성된 예산액 400억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검찰청 소관 거의 모든 사업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대비 93.1%에 달하는 총 372억 2,5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지급하였음.

<2024년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4.9.10.)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5,3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0.2.)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5,42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1.22.)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3,34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1.22.)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430-01	19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13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231

134)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4).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1.22.)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1	4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9	48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430-01	2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430-01	6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공공수사 (1335-302)	430-01	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마약수사 (1335-304)	210-01	25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마약수사 (1335-304)	430-01	11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6)	430-01	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공판활동지원 (1337-300)	430-01	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301)	43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6.)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3,034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3.)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7,05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110-04	2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430-01	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5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210-01	26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5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1	3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430-01	34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10-03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430-01	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110-03	1,0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430-01	0.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6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마약수사 (1335-304)	210-01	108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마약수사 (1335-304)	430-01	18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110-03	9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6)	430-01	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4.12.24.)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4,90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4.)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5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4.)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110-04	7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4.)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210-06	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4.)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210-12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26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320-09	24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4	7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40-00	31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220-02	4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10-03	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110-03	24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310-04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320-09	3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2.24.)	공공수사 (1335-302)	310-03	26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310-04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320-06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110-03	4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310-04	1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6)	310-04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4.)	형사법정비 (1338-300)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7.)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7002-101)	110-01	8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7.)	검찰국기본경비 (총액, 7011-204)	320-09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7.)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110-04	1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7.)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210-06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4.12.27.)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총액, 7018-202)	210-12	5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7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320-09	1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1333-301)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2.27.)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110-03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320-09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110-03	7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320-09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공공수사 (1335-302)	310-03	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공공수사 (1335-302)	320-06	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마약수사 (1335-304)	210-07	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110-03	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320-09	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7.)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6)	310-04	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합 계			37,225			

*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 등에 따라 합계 금액에 다소 차이

자료: 법무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심 등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 자체가 매우 오래전이고 보상 대상자의 수가 많아 보상액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

으며,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 등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음.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135] 예산집행의 전반적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제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음.

이에 지난 2023년을 포함하여[136] 과거에도 유사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형사보상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1	40,000	**4,390**	44,390	44,387	111.0	100.0	3
2022	40,000	**2,323**	42,323	42,323	105.8	100.0	-
2023	40,000	**16,852**	56,852	56,851	142.1	100.0	-
2024	40,000	**37,225**	77,225	77,219	193.0	100.0	6
2025	42,000						

자료: 법무부

135) 실제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서 각종 장비 등의 구입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일부 유지·보수 등 항목의 지출을 추후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음.

136) 특히 2023년에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재심·무죄 사건 및 관련 보상의 진행 상황과 연도별 집행실적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보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함으로써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137]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138]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139]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법원의 결정 등이 필요한 현행 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형사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보상금의 분할지급 등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37)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검찰청은 연간 형사보상금 집행에 대한 사건 건수, 구금 기간 등 형사보상금 지출액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형사보상금 예산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가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Ⅰ)”, 2024. 8.
아울러, 위 보고서에서는 형사보상액 산정 시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시에 예산에 반영하는 등을 통해 형사보상금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138)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39)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심사건 외에도 검사의 과오 등으로 인한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매년 130억에서 160억원 수준), 검찰청이 보다 적정한 수사 및 기소를 통해 형사보상이 필요한 무죄 판결 사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4. 7.

(10)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 결산 개요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는 검찰청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2024년도 예산액은 8,292억 6,2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325억 3,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967억 2,400만원이며, 이 중 7,90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결산내역(비목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829,262	-	△32,538	-	796,724	790,870	-	5,855	856,312
· 보수 (110-01)	806,146	-	△35,627	-	770,519	765,365	-	5,154	832,808
· 기타직보수 (110-02)	16,632	-	3,589	-	20,222	20,066	-	155	16,763
· 연가보상비 (110-05)	6,484	-	△500	-	5,984	5,438	-	545	6,741

▢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검찰청의 인건비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실무관 등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수(110-01)' 및 이들에 대한 '연가보상비(110-05)', 그리고 청원경찰 등을 비롯한 직원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직보수(110-02)'로 구성되어 있음.

기관의 인건비는 그 특성상 일정한 여유분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고, 소속 직원의 연중 채용·휴직·퇴직 인원수 등을 사전에 전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 예산을 실제 집행액 규모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러나 검찰청 운영 인건비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인건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검찰청 인건비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24년도에는 인건비 325억 3,8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고 5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49억 2,600만원을 이·전용, 75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140)]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789,187	789,187	-	789,187	748,373	94.8	94.8	40,814
2022	789,252	788,012	△3,000	785,012	764,424	97.0	97.4	20,588
2023	803,946	803,946	△14,926	789,020	781,485	97.2	99.0	7,535
2024	829,262	829,262	△32,538	796,724	790,870	95.4	99.3	5,855
2025	856,312	856,312						

자료: 법무부

또한, 이·전용 등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22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각각 205억 8,800만원 및 408억 1,400만원 규모로 발생하였는바, 검찰청 인건비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141]이 있었으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임.

둘째, '기타직보수(110-02)'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를 매년 '보수(110-01)'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의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40)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퇴직, 휴직 인원 발생 등 사유로 인해 인건비 여유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여유분은 형사보상금 등 의무지출 사업에 대부분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141)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 2014. 10. p.52 등.
이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검찰청 인건비 예산의 과다편성은 인건비 산출 시 검사의 결원율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실무수습 직원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각 검찰청 검사실 및 사무국 등에 배치되어 지도를 받으며 업무보조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142]에는 '임용 전 수습·견습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로 편성·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무부 및 검찰청은 이를 매년 '보수(110-01)'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바,[143] 그에 따라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는 해당 예산을 다시 '기타직보수(110-02)'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로 인해 2024년 기준 35억 8,900만원 규모의 세목조정이 발생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세목조정되고 있는 것임.

<검찰청 운영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110-02)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13,745	**2,319**	16,064	15,688	376
2021	14,785	**1,911**	16,697	16,366	331
2022	14,895	**2,540**	17,435	17,050	385
2023	15,030	**4,713**	19,742	19,388	354
2024	16,632	**3,589**	20,222	20,066	155

* 세목조정 포함
자료: 법무부

14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p.7

143) 법무부는 과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재정당국이 실무수습 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기타직보수(110-02)에서 보수(110-01)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여 조치하였으나, 예산 관련 지침에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해당 항목을 다시 기타직보수(110-02)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처럼 인건비 예산 편성이 부정확할 경우, 잔여 인건비를 임의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문제로 국가재정이 낭비되거나, 기관 전체의 재정운용에도 왜곡이 발생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일선 검찰청 검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노력 필요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144]에 따라 총 2,292명이나, 실제 현원은 2024년 말 기준 총 2,033명으로 결원이 259명이고, 결원율이 11.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대검찰청을 포함한 수치로,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을 제외하면 각 지역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의 결원율은 11.7%이며, 개별 청에 따라서는 결원율이 43.8%에 이르는 경우(부산고등검찰청)도 있음.

<각급 검찰청별 검사 정원 및 현원 현황>

(2024년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합 계	2,292	2,033	259	11.3%

144)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대검찰청	77	77	0	0.0%
서울고등검찰청	50	44	6	1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67	245	22	8.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70	65	5	7.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1	99	2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2	62	10	13.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3	57	6	9.5%
의정부지방검찰청(관내)	126	99	27	21.4%
인천지방검찰청(관내)	157	141	16	10.2%
춘천지방검찰청(관내)	59	47	12	20.3%
대전고등검찰청	12	10	2	16.7%
대전지방검찰청(관내)	141	128	13	9.2%
청주지방검찰청(관내)	56	52	4	7.1%
대구고등검찰청	12	11	1	8.3%
대구지방검찰청(관내)	178	153	25	14.0%
부산고등검찰청	16	9	7	43.8%
부산지방검찰청(관내)	151	132	19	12.6%
울산지방검찰청	53	45	8	15.1%
창원지방검찰청(관내)	95	82	13	13.7%
광주고등검찰청	12	11	1	8.3%
광주지방검찰청(관내)	131	114	17	13.0%
전주지방검찰청(관내)	59	53	6	10.2%
제주지방검찰청	31	31	0	0.0%
수원고등검찰청	16	14	2	12.5%
수원지방검찰청(관내)	287	252	35	12.2%
(대검 제외 합계)	(2,215)	(1,956)	(259)	(11.7%)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선 검사의 결원율은 최근 검사 퇴직의 증가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검사 퇴직 및 신규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79명이었던 퇴직 검사 수는 2022년 1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지속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매년 100명 내외의 검사를 신규로 충원하더라도 실제 현원은 크게 늘지 못하거나,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50명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됨.[145]

<연도별 검사 퇴직 및 신규충원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퇴 직(A)	75	111	94	79	146	145	132
신규충원(B)	112	118	132	101	89	95	145
B-A	37	7	38	22	△57	△50	13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이러한 퇴직자가 저연차의 '평검사급'에서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 내 간부급 검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146] 일선 검찰청에서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147]

145) 이투데이, "'탈검찰' 움직임 가속화?…뽑는 인원보다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 2025. 6. 17.

146) 머니투데이, "'간부 비율 38%' 일할 검사가 없다…인력난 어쩌나", 2025. 6. 2.

147) 최근에는 이른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일선 검사의 파견근무를 다수 요청함에 따라 당분간 검찰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머니투데이, "3대 특검 수사팀 구성 본격화…검찰·공수처는 인력난 비상", 2025. 6. 17.

그러나 검찰청은 이러한 일선 검사 인력 부족의 지속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검사 인력을 대검찰청 등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 등 외부기관 및 해외 파견 인력도 적지 않게 운용하고 있음.

먼저, 2021년 감사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148]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정원 외에 다수의 일선 검찰청 검사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고 있는바,[149] 이를 모두 반영한다면 대검찰청에 실제로 근무하는 검사의 수는 77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각 지역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의 '사실상' 결원율은 앞서 살펴본 수치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150]

<연도별 대검찰청 정원 및 실제 근무인원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검사	검찰공무원	계	검사	검찰공무원	계	검사	검찰공무원	계	검사	검찰공무원	계
정원(A)	68	513	581	68	515	583	77	534	611	77	535	612
실제근무인원(B)	79	652	731	78	674	752	91	695	786	89	702	791
B-A	11	139	150	10	159	169	14	161	175	12	167	179

자료: 법무부

148) 감사원, "감사보고서-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법무부 검찰국 소관사무 포함)", 2021. 3. 아울러, 이 문제는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2021년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149) 다만, 법무부는 일선 청의 수사인력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내 19명의 대검찰청 직무 파견인력을 감축한다는 입장임.

150) 파견·업무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소속은 각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들은 앞의 '각급 검찰청별 검사 정원 및 현원 현황' 표의 각 일선 검찰청의 결원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검사의 외부기관 및 해외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체 파견검사 인원수가 지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46명을 파견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50명의 검사를 환경부 등 타 부처, 한국거래소 등 타 기관 및 해외 주요국 대사관 등에 파견하고 있는 상황임.[151]

<연도별 외부기관 파견검사 수>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파견인원	68	62	58	58	46	46	49	49	50

자료: 법무부

대검찰청 또한 전국 검찰사무의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외부기관 등의 경우에도 검사 보임이 필요한 직위가 다수 있을 수 있으나, 일선 검사의 인력 부족으로 다음 표와 같이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152]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장기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151) 다만, 최근 법무부는 파견을 일부 감축하여 2025년 4월 기준 파견검사 수는 46명임. 서울경제, ""교육부·복지부에 검사 못 보낸다"…檢, 인력난에 외부 파견 축소", 2025. 2. 24.

152) 동아일보, "검사 1인당 사건, 3년새 25%↑…장기 미제사건도 4배로", 2024. 10. 13.

<연도별 검사 1인당 사건 수>

(검사 현원은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건,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연간 접수 사건 수(A)	1,072,558	1,170,810	1,206,419	1,243,126
검찰청 소속 검사 현원(B)	2,143	2,142	2,092	2,108
1인당 사건 수 (A/B)	500.5	546.6	576.7	589.7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및 검찰청 홈페이지 '형사사건동향'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청은 경력 검사 채용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선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검사 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검찰청 근무 검사 인력의 적정 규모 및 검사의 외부 파견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 인원만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1)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 결산 개요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는 검찰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받는 항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313억 6,5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7억 8,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05억 7,700만원이며, 이 중 298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비목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31,365	-	△788	-	30,577	29,885	-	692	31,498
• 일용임금 (104-04)	**494**	**-**	**△285**	**-**	**209**	**206**	**-**	**3**	**510**
• 특근매식비 (210-05)	92	-	-	-	92	92	-	-	92
• 일숙직비 (210-06)	3,043	-	△207	-	2,836	2,825	-	11	3,043
• 복리후생비 (210-12)	8,361	-	△463	-	7,898	7,822	-	75	8,361
• 기타운영비 (210-16)	3,335	-	-	-	3,335	3,335	-	-	3,437
• 직책수행경비 (250-02)	15,556	-	-	-	15,556	14,961	-	594	15,572
• 특정업무경비 (250-03)	14	-	-	-	14	14	-	-	13
• 고용부담금 (320-09)	470	-	167	-	637	630	-	7	471

▢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 부진 개선 필요

「변호사법」 제21조의2[153]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위해 법무부 및 검찰청에서도 매년 일정 수의 실무수습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법무부가 채용하는 실무수습 변호사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소송지원, 법률자문, 소관 법령해석 등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12억 9,5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3억 1,300만원)하거나 불용(2억 5,500만원)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총 6억 9,4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

153)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⑫ (생 략)

〈실무수습 변호사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 기관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합 계	1,295	–	△313	–	982	694	–	255	1,265
법무실	514	–	△14	–	500	312	–	188	507
인권국	61	–	–	–	61	28	–	–	63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77	–	△40	–	37	29	–	8	31
검찰청	**535**	**–**	**△275**	**–**	**260**	**229**	**–**	**31**	**552**
검찰국	46	–	–	–	46	38	–	8	48
국제법무국	46	–	–	–	46	42	–	4	48
교정본부	–	–	16	–	16	16	–	–	–
범죄예방정책국	16	–	–	–	16	–	–	16	16

자료: 법무부

2024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법무부는 당초 총 86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2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음. 이는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부서·기관별 세부 실적에 따르면, 법무실을 비롯한 각 부서는 당초 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검찰청의 경우 당초 35명 채용을 계획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은 19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의 실적을 보였음.

〈부서 · 기관별 실무수습 변호사 최근 4년간 채용실적 및 2025년 계획〉

(단위: 명)

부서 · 기관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 계	41	41	72	57	74	60	86	62	71
법무실	29	28	31	29	31	30	32	32	26
인권국	5	6	5	4	5	4	4	2	1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3	2	2	3	3	5	5	2	2
검찰청	**–**	**–**	**29**	**18**	**29**	**18**	**35**	**19**	**35**
검찰국	3	4	3	3	3	3	3	3	3
국제법무국	–	–	–	–	–	–	3	3	3
교정본부	–	–	–	–	2	–	3	1	–
범죄예방정책국	1	1	2	–	1	–	1	–	1

자료: 법무부

검찰청의 이 같은 채용실적 부진은 2024년 외에 2023년 및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민간 법무법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에 비해 근무여건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국가송무업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무실과 달리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 쌓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적극 지원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 계획 및 관련 예산을 과다 설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련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 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법무부 및 검찰청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국제법무국

(1)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 결산 개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은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양상에 따라 국제사법회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거래규범 성안 과정부터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 분석 및 국내 도입·이행을 추진하며, 통상 투자·협정 제·개정 시 법률자문·협상지원을 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7억 2,800만원이고, 이 중 6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600만원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728	3	-	-	731	671	4	56	734

자료: 법무부

▢ 국제법 전문위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해결 필요

법무부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에 필수적인 영문 에디터 1인과 국제법 전문위원 2인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공무직 보수 목적으로 2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집행액은 1억 7,500만원으로 집행률이 87%이며, 공무직 인건비 집행 부진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음. 해당 사업의 공무직 결원기간[154]은 2022년 8개월 25일, 2023년 6개월 14일, 2024년 3개월 5일이고, 재충원 평균 소요기간은 2022년 약 3개월, 2023년 약 2개월, 2024년 약 1개월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중 공무직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공무직 인건비	190	150	41	193	158	35	201	175	26
- 상용임금 (110-03)	159	124	35	160	133	27	167	147	20
- 복리후생비 (210-12)	1	1	0	1	1	0	2	2	0
- 고용부담금 (320-09)	31	24	7	32	24	8	33	26	7

자료: 법무부

공무직 인건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제법 전문위원은 주로 국내·외 변호사 등의 전문직으로 업계 특성상 이직이 잦은 편이며,

154)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의 연간 공무직 결원 기간('22.~'24.)
- ○ ('22년) 8월 25일('22. 1. 1.~3. 31. / '22. 2. 28.~5. 11. / '22. 3. 31.~7. 12.)
- ○ ('23년) 6월 14일('23. 2. 20.~5. 9., / '23. 3. 31.~5. 2. / '23. 10. 11.~12. 31.)
- ○ ('24년) 3월 5일('24. 1. 1.~1. 7. / '24. 5. 2.~6. 20. / '24. 10. 16.~11. 24.)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휴직, 퇴직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불시에 휴직,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절차 진행 시 2~3개월 소요되어 일부 기간 공석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무부는 계약 시 사전 통보기간을 설정하고,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국제법 전문위원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국제법률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며,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법무부는 전문위원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의 연속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전문위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잦은 퇴직을 방지하며, 내부 전문가 양성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업무 공백기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1431-302)

▢ 결산 개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은 ODA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법제모델을 수출·전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투자 환경 및 현지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1억 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인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억 6,100만원이며, 이 중 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00만원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158	3	-	-	161	125	24	12	150

자료: 법무부

▢ 공무직 퇴직 후 결원기간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영문 에디터 1인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공무직 보수 목적으로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집행액은 4,800만원으로 집행률이 85.7%이며, 공무직 인건비의 집행 부진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음. 해당 사업의 공무직 결원기간[155]은 2022년 1개월 7일, 2023년 3개월, 2024년 2개월 8일이고, 재충원 소요기간은 2022년 약 1개월, 2023년 약 3개월, 2024년 약 2개월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중 공무직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공무직 인건비	52	47	5	55	44	11	56	48	8
- 상용임금 (110-03)	43	39	4	45	39	6	46	39	7
- 복리후생비 (210-12)	1	1	-	1	1	-	1	1	0
- 고용부담금 (320-09)	8	7	1	9	4	5	9	8	1

자료: 법무부

공무직 인건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하여 법무부는 영문 에디터는 주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제법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업계

155)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연간 공무직 결원 기간('22.~'24.)
- ○ ('22년) '22. 5. 1.~'22. 6. 7.(약 1.25개월)
- ○ ('23년) '23. 5. 1.~'23. 7. 30.(약 3개월)
- ○ ('24년) '24. 7. 1.~'24. 9. 8.(약 2.3개월)

특성상 이직이 잦은 편이며, 이에 따라 영문 에디터의 휴직, 퇴직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불시에 휴직,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절차 진행 시 2~3개월 소요되어 일부 기간 공석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무부는 계약 시 사전 통보 기간을 설정하고, 결원 발생 시 신속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영문 에디터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국제법률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잦은 인력 공백으로 조직의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존재함.

법무부는 영문 에디터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원기간을 줄이고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영문 에디터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한 잦은 퇴직을 방지하고 내부전문가 양성,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업무 공백기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 결산 개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론스타, 쉰들러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예방·대응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52억 7,500만원이고, 이 중 5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00만원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275	-	-	-	5,275	5,262	-	13	4,717
• 론스타	1,912	-	△24	-	1,888	1,888	-	-	1,985
- 일반수용비(210-01)	1,883	-	-	-	1,883	1,883	-	-	1,955
- 국외여비(220-02)	24	-	△24	-	-	-	-	-	25
- 사업추진비(240-01)	5	-	-	-	5	5	-	-	5
• 쉰들러	1,434	-	66	-	1,500	1,500	-	-	1,227
- 일반수용비(210-01)	1,361	-	100	-	1,461	1,461	-	-	1,222
- 국외여비(220-02)	68	-	△34	-	34	34	-	-	-
- 사업추진비(240-01)	5	-	-	-	5	5	-	-	5
• 중국투자자	1,053	-	△83	-	970	970	-	-	845
- 일반수용비(210-01)	965	-	-	-	965	965	-	-	840
- 국외여비(220-02)	83	-	△83	-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	-	-	5	5	-	-	5
• 다야니2차	649	-	41	-	690	690	-	-	441
- 일반수용비(210-01)	603	-	41	-	644	644	-	-	436
- 국외여비(220-02)	41	-	-	-	41	41	-	-	-
- 사업추진비(240-01)	5	-	-	-	5	5	-	-	5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84	-	-	-	84	84	-	-	71
- 일반수용비(210-01)	47	-	-	-	47	47	-	-	44
- 국외여비(220-02)	29	-	-	-	29	29	-	-	20

- 사업추진비(240-01)	3	-	-	-	3	3	-	-	2
- 국내여비(240-01)	5	-	-	-	5	5	-	-	5

▢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이용절차 위반 재발방지 필요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을 위해 검찰청·치료감호소·출입국본부·교도소 인건비에서 68억원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행정비용 및 정부대리로펌의 법률자문비용으로 집행하였음.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사업은 국제법무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7,200만원이나 68억원을 전용하여 70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272	-	6,800	-	7,072	7,055	-	17	362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운영 인건비에서 10억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에서 5억원,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에서 3억원, 교도소 운영인건비에서 50억원을 승인 전용[156]하였음.

<2024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중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일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코드	
2024. 8.	검찰청운영 인건비 (7002-101)	보수 (110-01)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일반수용비 (210-01)	1,000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인건비 (7002-100)	보수 (110-01)			500
	치료감호소 인건비 (7002-106)	보수 (110-01)			300
2024. 12.	교도소운영 인건비 (7002-103)	보수 (110-01)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일반수용비 (210-01)	5,000

자료: 법무부

「국가재정법」 제21조[157]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은 장(분야)·관(부문)·

---

15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57)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항(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같은 법 제47조[15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간에 예산을 상호 이용(移用)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이나 환율변동·재해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이 국가재정법 및 예산 총칙상 이용할 수 없는 비용이고, 다른 절차를 거칠 경우 납부기한이 도과하게 되며, 지연손해금 지급 및 중재정차 중단 등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58)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법률에 따른 이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즉,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세부사업(1431-303)과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의 일반수용비(210-01)[159] 예산을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본 사업(1431-303)의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음.

법무부가 기재부와 협의 끝에 국고 상황상 예비비 편성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처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법률상 이용절차 없이 임의로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이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가 무색해지며,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장·관·항 및 사업 간 구분을 무시하고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국가재정법」제22조제1항[160]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159) 앞서 본바와 같이 검찰청, 교도소 등 인건비에서 국제법무국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68억원 전액을 ISDS사건 중재행정비용 및 미지급연체 법률자문비용 집행에 사용하였음.

160)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국제투자분쟁 실제 소요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사업으로 2021년 24억 2,600만원, 2022년 36억 400만원, 2023년 54억 7,200만원, 2024년 52억 6,200만원[161]을 각 집행하였고,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4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사업의 사건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예산(추경) 예산현액	집행	예산(추경) 예산현액	집행	예산(추경) 예산현액	집행	예산(추경) 예산현액	집행
론스타	1,226 1,185	1,185	1,133 1,133	728	1,133 296	296	1,912 1,888	1,888
쉰들러	1,601 1,532	124	1,136	855	1,434 2,488	2,488	1,434 1,500	1,500
게일 등	1,922 1,922	984						
중국투자자			1,922 1,922	1,847	1,922 1,592	1,585	1,053 970	970
부산투자자			512 184	4	184 1	0.5		
다야니2차					608 865	865	649 690	690
총 사업비 (추경포함)	4,882 4,772	2,426	4,891 4,593	3,604	5,504 5,504	5,472	5,275 5,275	5,262

자료: 법무부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를 포함하여 5건이 진행 중이며, 중재의향서가 접수되어 중재 제기 전인 사건은 9건으로 향후 2024년과 같은 긴급한 중재행정비용 등의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예산 편성은 한정된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

161) 국제투자분쟁 사업 예산과 별개로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행정비용 및 정부대리로펌의 법률자문비용으로 68억 원 집행하여, 총 약 120억 원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행정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음.

할 때,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실제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세항 또는 목간 금액 전용이나 장·관·항 상호 간 예산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예산 편성 시 그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진행중 국제투자분쟁 사건(ISDS) 현황>

(단위: 백만원)

사건명	제기일	사건 개요	처분청 (관계부처)	담당부처	상황
론스타	'12.11.21. 한-벨 BIT	①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② 국세청의 과세처분 -(청구액) 46.8억 USD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 일부 패소(2억 1,650만 USD, 약 2,800억 원) ○ 정부 정정신청 전부인용 (48만 USD 감액) ○ 판정 취소절차 진행 중
쉰들러	'18.10.11. 한-EFTA 부속협정	금융위/금감원/공정위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방치 등 -(청구액) 2억 USD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 진행 중
중국 투자자	'20.07.18. 한-중 BIT	①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② 민·형사법원의 부당한 재판 -(청구액) 1.9억 USD		법무부	○ 정부 전부 승소 ○ 판정 취소절차 진행 중
부산 투자자	'21.05.07. 한-미 FTA	부산시 수용위원회 등의 부동산 수용 -(청구액) 537만 USD	국토부	법무부	○ 진행 중
다야니 2차	'21.10.18. 한-이란 BIT	다야니 1차 ISDS 사건 배상금 미지급 - (청구액) 5억 EUR	금융위	법무부	○ 진행 중

자료: 법무부

사. 교정본부

(1)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 결산 개요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은 전국 교정시설의 행정경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85억 1,500만원이고, 이·전용 등 증액 3억 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88억 1,600만원이며, 이 중 480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도소 행정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교도소 행정지원	48,515	-	302	-	48,816	48,090	-	726	51,516
·공무직 운영	27,384	-	585	-	27,968	27,954	-	14	29,533
·교정공무원 업무지원 등	8,296	-	△283	-	8,013	7,301	-	712	9,023
·민영교도소·직장 어린이집 지원	12,835	-	-	-	12,835	12,835	-	-	12,363

▢ 예산 소요 예측을 통한 적절한 비목의 예산 편성 필요

대구교도소는 1971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건립된 이후 52년간 운영되어온바,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23년 11월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고, 2024년 5월 2일에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실시하였음.

대구교도소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약 4년 간의 공사 끝에 2020년 10월 준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의 유량조정조 추가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인해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었음('2022. 6. 30. → '2023. 12. 30.).

<대구교도소 신축공사 개요>

- 사업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3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 총 사업비 : 1,900억원
- 규모 : 부지 285,418㎡, 건물 60,760㎡,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3층

※ 유량조정조 추가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신축대구교도소 준공예정일 (' 22.6.30. → ' 23.12.30.) 변경(' 22.6.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2-187호)

자료: 법무부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행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념식수·기념품·행사용품 구매, 행사 대행용역 등을 위한 예산 6,566만원을 전액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하였으며, 그 중 개청식 행사대행 용역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행사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액	예산과목	비고
1	개청식 기념식수 공간 화단조성 (흙갈이 및 잔디식재 등)	2,096	210-01 [일반수용비]	
2	개청식 기념식수 수목 구매 및 운반	2,730	210-01 [일반수용비]	
3	비누세트(기념품)	2,000	210-01 [일반수용비]	교도작업제품
4	예식장갑(행사 사무용품)	110	210-01 [일반수용비]	
5	팥시루 떡(개청식 기념 행사용)	1,250	210-01 [일반수용비]	
6	쇼핑백(개청식 행사용품)	1,379	210-01 [일반수용비]	
7	대구교도소 기념식수 표지석 제작 설치	935	210-01 [일반수용비]	
8	대구교도소 청사 현판 제작 설치	1,144	210-01 [일반수용비]	
9	고급자수면수건(기념품)	720	210-01 [일반수용비]	교도작업제품
10	일반면수건(기념품)	2,500	210-01 [일반수용비]	교도작업제품
11	고급세트면수건(기념품)	1,000	210-01 [일반수용비]	교도작업제품
12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행사 대행 용역	49,000	210-01 [일반수용비]	
13	화분(개청식 행사용품)	800	210-01 [일반수용비]	
합계		65,664		

자료: 법무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나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

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 용역계약을 통해 일반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의 경우 비정기적 행사로서, 통상적 소요나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가 소요되는 행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행사는 법무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라는 점에서, 행사 대행용역의 경우 일반용역비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 경과>

일시	사업내용
2008. 6. 20.	이전 후보지 선정
2012. 2.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2013. 7. ~ 2014. 7.	기본 및 실시설계
2016. 4. 18.	최종 시공 업체 선정(금호건설 컨소시엄)
2016. 11. 01.	착공 시작
2020. 10. 21.	준공
2020. 12. 02.	사용 승인
2020. 12. 03.	신축시설 인수
2021. 6. 18.	오·배수 설비 추가사업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
2021. 11.	유량조정조 설계용역 착수
2022. 6. 28.	대구시, 추가 오· 배수 설비 등 인가
2022. 9. 30.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착공
2023. 11. 16.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준공
2024. 5. 2.	대구교도소 개청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개청식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되지 않았는바, 대구교도소 공사 과정에서 유량조정조 추가설치를 위하여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0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당시 준공예정일인 2023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교도소 개청 및 개청식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개청식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를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행시킬 경우, 예산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음.[162]

162) <일반수용비(210-01목)와 일반용역비(210-14목) 적용대상의 비교>

일반수용비(210-01목)	일반용역비(210-14목)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비 ○ 안내·홍보물등제작비, 간행물등구입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등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 행사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대행함에 따른 제비용임

※ 출처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p.213, p.227

(2)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결산 개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수용자의 급식비, 피복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하고 일상물품을 지급하며,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691억 200만원이고, 이·전용 등 증액 309억 9,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000억 9,300만원이며, 이 중 2,903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69,102	-	30,991	-	300,093	299,909	-	184	290,348
·수용관리비	132,426	-	12,409	-	144,835	144,833	-	2	146,512
·공공요금 등 수용관리 지원	136,676	-	18,582	-	155,258	155,076	-	182	143,836

▢ 의료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급식비[163] 99억 1,500만원, 공공요금[164] 168억 3,000만원, 의료비[165] 26억 4,600만원, 호송여비[166] 11억원, 유류비[167] 5억원 등 총 309억 9,100만원을 타 세부사업에서 이·전용 및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4. 11.)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110-01	9,915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320-06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급식비 부족
자체이용 (24. 11.)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110-01	16,70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2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수용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부족
자체이용 (24. 11.)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7018-256)	260-01	13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2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수용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부족
승인전용 (24. 11.)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1531-302)	420-03	2,646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320-06	수용인원 및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

163) 구호 및 교정비(320-06목)
16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65) 구호 및 교정비(320-06목)
166) 국내여비(220-01목)
167) 유류비(210-08목)

자체전용 (24. 10.)	대체복무 사설 개선 및 운영 (1531-304)	210-03	20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20-01	외부병원 등 출장 증가로 인하여 호송여비 부족
자체전용 (24. 10.)	대체복무 사설 개선 및 운영 (1531-304)	210-04	61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20-01	외부병원 등 출장 증가로 인하여 호송여비 부족
자체전용 (24. 10.)	교도소 행정지원 (1531-300)	210-01	29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20-01	외부병원 등 출장 증가로 인하여 호송여비 부족
내역변경 (24. 11.)	교정교화 (1532-301)	210-01	50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8	외부병원 등 출장이 증가함에 따라 호송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부족

자료: 법무부

2017년부터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2023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22년 51,117명에서 2023년 56,577명으로 9.65%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도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용 정원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49,922	50,230	50,230
1일 평균 수용인원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56,577	61,366	62,422
1일 평균 수용률	115.6	121.2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113.3	122.2	124.3

* 주: 2025년은 5월 말 기준

자료: 법무부

그에 따라 교정시설 내 진료 횟수 및 진료 인원도 2024년 전년대비 16.3% 증가하는 등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의무관 정원 및 현원은 2020, 2021년 91~92명에서 2022, 2023년에 84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 10명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의무관 현원은 정원대비 부족한 상태임(2024년 기준 충원률 79.6%).

<최근 5년 간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 및 의무관 정·현원 등>

(단위: 건,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진료 횟수	3,764,702		2,804,758		2,376,919		2,328,203		2,690,945	
진료 인원	24,520		22,128		27,388		30,020		34,935	
의무관 정·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18	92(91)	118	91(94)	119	84(93)	119	84(93)	118	94(86)

* 주1 : 수형자, 미결수용자를 수용 중인 전국 54개 기관 및 소망교도소 포함
** 주2 : 괄호 안의 수치는 공중보건의 수
자료: 법무부

한편,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이용 역시 증가하였는데, 2020년 3만 7,101건이던 외부 의료시설 이용건수는 2024년 4만 9,175건으로 32% 증가하였으며, 이에 더해 건강보험예탁금[168]도 해당 기간에 46% 증가하였는바,[169] 예산액 대비 의료비 및 건강보험예탁금이 부족하여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168) 건강보험수급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예탁금은 수용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법무부장관이 미리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을 의미함.

169)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재 관련 법령상 요양급여 이용주체인 수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건강보험예탁금 집행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건강보험예탁금 증가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최근 5년간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현황 등>

(단위: 건,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협약 의료기관	452	467	464	496	505
이용 건수*	37,101	39,176	41,243	48,349	49,175
의료비** 예산	9,833	11,144	12,479	12,663	13,248
의료비 결산	11,738	16,381	14,478	16,320	16,086
건강보험예탁금 예산	16,659	19,924	19,924	20,265	20,265
건강보험예탁금 결산	19,844	17,825	20,000	25,350	29,064

* 입원 및 진료 건수
** 매년 편성 · 집행되는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건강보험예탁금 제외)
자료: 법무부

또한, 외부 의료시설 이용 증가는 의료기관으로의 호송에 따른 호송여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 또한 증가시켰는바, 최근 5년간 수용자 호송 현황 및 호송여비 집행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수용자 호송인원은 12.4% 증가하였는데, 그 중 외부병원 방문을 위한 수용자 호송인원은 32% 증가하였으며, 2024년 호송여비는 예산액 25억 5,070만원 대비 집행액은 34억 6,997만원으로 9억 1,928만원 초과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수용자 호송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송 지시에 의한 이송*	22,073	25,769	30,448	29,260	30,991
수용 구분에 의한 이송**	15,477	16,256	16,964	19,203	20,711
출정	244,324	215,671	216,602	249,204	257,921
외부병원	37,101	39,176	41,243	48,349	49,175
계	318,975	296,872	305,257	346,016	358,798

* 이송 지시 : 형이 확정된 수형자, 마약 · 조직 · 외국인 수형자, 직업훈련,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 수용 구분 : 미결수용자 및 재판이 진행중인 수형자, 소년수용자, 피치료감호자, 피보호감호자 등
자료: 법무부

〈호송여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2,601,000	2,601,000	2,189,000	2,500,697	2,550,697
집행액	2,268,458	2,703,936	2,183,927	3,313,039	3,469,977
집행율(%)	87.2	104.0	99.8	132.5	136.0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교정시설 내·외부 의료시설 이용 및 의료비·호송여비 등 예산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교정시설 내 진료 활성화를 통하여 외부 의료비 등의 초과집행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먼저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의무관 보수 현실화, 전공의 조기 확보,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의료처우와 관련한 수용자의 부당한 청원, 진정, 고소 및 고발 방지대책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170]가 있으며, 외부 진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예탁금 증가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26개 교정시설 의료관계자 심층면담에서, 의료처우 담당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의무관들의 업무 과중 및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존재하였음(권수진 외 3인,「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I) :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97)

(3) 교정교화(1532-301)

▢ 결산 개요

“교정교화” 사업은 인성교육, 성폭력·중독사범 치료프로그램 등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후 교화시설·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19억 2,0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5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14억 2,000만원이며, 이 중 11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정교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교정교화	11,920	-	△500	-	11,420	11,319	-	101	11,457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8,415	-	△507	-	7,909	7,823	-	86	9,150
·교화시설 장비개선	3,505	-	7	-	3,511	3,496	-	15	2,307

▢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운영 필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171] 이에 각 교정기관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명)

과정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1.
성폭력사범	2,306	1,804	2,213	2,783	2,669
아동학대사범	45	47	40	54	117
스토킹사범	–	–	–	21	101
가정폭력사범	–	–	3	18	46
정신질환자	423	350	314	245	254
우울특화	–	–	36	94	76
규율위반자	332	149	148	228	183
이상동기 범죄자	16	6	7	–	9
소년수형자	38	13	15	24	22
총계	3,160	2,369	2,776	3,467	3,477

자료: 법무부

17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예규인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성폭력·아동학대·약물중독관련 범죄 등을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심리치료센터를 둘 수 있고, 교정시설의 장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리치료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두도록 함.[172]

<심리치료팀 구성 기준[173]>

기관 구분*	구성 인원	구성 기준
대형기관	7명 이상	팀장 1명, 심리상담 4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2명
중형기관	6명 이상	팀장 1명, 심리상담 3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2명
소형기관	5명 이상	팀장 1명, 심리상담 2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2명
성폭력 집중과정 운영기관	5~7명 이상	팀장 1명, 심리상담(상기 구성기준 적용),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2명

* 대형기관: 수용정원 1,000명 이상
중형기관: 수용정원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
소형기관: 수용정원 600명 미만 (지소 포함)

주1) 구치소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1명 이상 배치
2) 팀장은 감독 업무 외에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등 고유 업무 겸임
3) 위 구성인원은 최소한의 구성기준이며, 수용인원 증가 등 기관사정에 따라 구성인원 증가 가능

---

172)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심리치료센터 등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심리치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센터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3조 제6항·제7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리치료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둔다.

173)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66호)[별표 1] 심리치료팀 구성 기준

심리치료팀의 경우,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심리상담 담당자(상담전담 직원)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구분함.

소장은 심리치료과와 심리치료팀의 구성원으로 심리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상담 또는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수용자 심리상담은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는 내부상담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상담으로 구분됨.[174]

그러나, 2024년 교정기관별 심리치료센터 등의 운영현황을 보면,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바, 대형기관에 해당하는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의 경우 심리치료팀 구성인원이 7명에 미치지 못하며, 중형기관인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도 구성인원이 6명에 미치지 못함.

---

174)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심리치료센터 등 설치·운영)** ⑤ 심리치료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심리상담 담당자(이하 "상담전담 직원"이라 한다)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구분한다.

⑥ 소장은 심리치료과 또는 심리치료팀(이하 "심리치료과 등"이라 한다) 부서원으로 심리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상담 또는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상담 구분) ① 수용자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는 내부상담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상담으로 구분한다.

② 내부상담은 상담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탐색상담은 수용자의 심리상태 등 특성 파악 및 심리적 위기 진단, 상담방향 설계를 위해 실시한다.
2. 집중상담은 탐색상담 결과 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변화를 위해 실시한다.
3. 후속상담은 집중상담 종결 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변화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중 심리적 위기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점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④ 외부전문가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4년 교정기관별 심리치료센터 · 과 · 팀 운영 현황>

(단위: 건, 명)

소속	구분	운영 기관	구성인력 (상담전담 직원)	상담횟수		프로그램	
				내부 상담	외부 상담	인원	시간
서울지방 교정청	센터	서울지방교정청	12명(0명)	–	–	139	1,190
	과	의정부교도소	12명(6명)	6,644	159	121	1,469
	과	안양교도소	11명(4명)	4,629	257	173	1,000
	팀	서울구치소	8명(5명)	7,555	55	58	330
	팀	수원구치소	5명(4명)	7,565	145	36	320
	팀	서울동부구치소	7명(5명)	8,669	465	86	504
	팀	인천구치소	5명(4명)	6,439	27	36	460
	팀	서울남부구치소	6명(5명)	5,993	8	57	360
	팀	화성직훈교도소	7명(3명)	2,499	138	66	780
	팀	여주교도소	6명(3명)	2,085	61	166	1,282
	팀	서울남부교도소	6명(3명)	1,595	8	137	815
	팀	춘천교도소	4명(4명)	1,871	33	54	450
	팀	원주교도소	4명(1명)	2,245	19	43	324
	팀	강릉교도소	3명(2명)	1,077	52	48	540
	팀	영월교도소	2명(1명)	260	–	2	80
	팀	강원북부교도소	3명(2명)	748	2	94	580
	팀	평택지소	3명(3명)	1,110	14	9	120
	팀	소망교도소	3명(2명)	578	131	63	300
대구지방 교정청	센터	대구청(포항)	7명(0명)	–	–	85	848
	센터	대구청(밀양)	7명(0명)	–	–	70	868
	과	진주교도소	11명(4명)	1,840	11	291	1,682
	팀	대구교도소	8명(6명)	5,684	17	130	1,014
	팀	부산구치소	7명(6명)	7,102	3	51	580
	팀	경북북부 제1교도소	7명(5명)	2,060	58	65	364
	팀	창원교도소	6명(5명)	3,377	26	95	664
	팀	부산교도소	9명(3명)	2,272	33	67	505
	팀	포항교도소	6명(3명)	2,773	30	70	444
	팀	대구구치소	3명(3명)	3,959	2	17	460
	팀	경북직훈교도소	1명(1명)	91	1	9	100
	팀	안동교도소	5명(3명)	1,835	9	96	580
	팀	경북북부 제2교도소	5명(3명)	1,235	–	66	620
	팀	김천소년교도소	4명(3명)	1,653	14	76	520
	팀	경북북부 제3교도소	3명(3명)	1,527	25	42	400
	팀	울산구치소	4명(3명)	2,379	–	9	260

	팀	경주교도소	3명(2명)	480	3	25	280
	팀	통영구치소	3명(2명)	1,386	–	43	360
	팀	밀양구치소	3명(2명)	1,006	21	31	340
	팀	상주교도소	3명(2명)	1,006	18	46	340
	팀	거창구치소	2명(1명)	223	1	4	20
대전지방교정청	센터	대전지방교정청	7명(0명)	–	–	119	981
	센터	청주여자교도소	7명(3명)	894	109	66	575
	과	천안교도소	11명(3명)	2,527	17	114	1,224
	팀	대전교도소	8명(5명)	4,907	33	67	686
	팀	청주교도소	5명(4명)	2,116	10	34	336
	팀	공주교도소	5명(2명)	1,768	61	71	700
	팀	충주구치소	4명(1명)	1,060	20	67	676
	팀	홍성교도소	3명(2명)	885	31	31	285
	팀	천안개방교도소	2명(1명)	371	–	–	–
	팀	서산지소	2명(1명)	558	2	42	540
	팀	논산지소	2명(1명)	820	14	36	260
광주지방교정청	센터	광주지방교정청	7명(0명)	–	–	92	916
	센터	목포교도소	8명(4명)	2,451	19	121	980
	과	군산교도소	12명(6명)	1,865	8	111	831
	팀	광주교도소	9명(6명)	6,802	11	81	842
	팀	전주교도소	7명(5명)	4,023	40	70	700
	팀	순천교도소	8명(3명)	2,391	2	90	624
	팀	제주교도소	5명(4명)	2,229	2	43	420
	팀	장흥교도소	5명(1명)	1,036	9	60	453
	팀	해남교도소	4명(2명)	1,023	13	54	400
	팀	정읍교도소	4명(2명)	1,415	16	34	320
합계			339명 (173명)	142,591	2,263	4,179	34,902

주1: 지방교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심리치료센터”는 고위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리상담은 시행하지 않음

자료: 법무부

구성인원을 충족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구성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대형기관인 부산교도소의 경우 전체 심리치료팀 구성인원은 7명 이상이나, 상담전담인력은 3명이 배치되어 있어, 심리상담 기준인원인 4명에는 미치지 못함.

이에 더하여,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제4항은 정신과 전문의, 상

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175] 영월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울산구치소 등은 외부상담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해당 시설에서 외부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원 등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은 해당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실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75)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16조(상담 구분)** ① 수용자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는 내부상담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상담으로 구분한다.
② 내부상담은 상담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탐색상담은 수용자의 심리상태 등 특성 파악 및 심리적 위기 진단, 상담방향 설계를 위해 실시한다.
2. 집중상담은 탐색상담 결과 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변화를 위해 실시한다.
3. 후속상담은 집중상담 종결 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변화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중 심리적 위기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점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④ 외부전문가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4)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 결산 개요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은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1,901억 5,7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347억 6,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1,553억 9,200만원이며, 이 중 1조 1,490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1,190,157	-	△34,765	-	1,155,392	1,149,072	-	6,319	1,186,920
·공무원 등 인건비	1,190,157	-	△34,765	-	1,155,392	1,149,072	-	6,319	1,186,920

▢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필요

법무부는 2024회계연도에 해당 사업에 교정기관 직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1조 1,722억 8,200만원, 대체복무요원 보수[176] 178억 7,500만원 총 1조 1,90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 중 347억 6,500만원을 교정시설 급식비 및 공공요금, 국제투자분쟁에 대비

176) 기타직 보수(110-02목)

한 법률자문비용, 법무부 본부 소속 직원 인건비 지급,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이·전용하고, 63억 1,9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의 타 사업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4.11.8.)	교도소운영인건비 (총액) (7002-103)	110-01	9,915	교정시설수용관리 및공공요금 (1532-300)	320-06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급식비 부족
자체이용 ('24.12.13.)	교도소운영인건비 (총액) (7002-103)	110-01	16,700	교정시설수용관리 및공공요금 (1532-300)	210-02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
승인전용 ('24.12.13.)	교도소운영인건비 (총액) (7002-103)	110-01	5,000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210-01	국제투자분쟁에 따른 법률자문비용 부족
자체전용 ('24.12.17.)	교도소운영인건비 (총액) (7002-103)	110-02	250	본부인건비(총액) (7001-100)	110-02	실무수습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인건비 부족
자체이용 ('24.12.27.)	교도소운영인건비 (총액) (7002-103)	110-01	2,900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310-02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

자료: 법무부

이는 이·전용된 금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인건비 1조 1,901억 5,700만원의 3.45%에 해당하는 410억 8,4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지 못한 것임. 동 사업 예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는 이·전용액 168억 2,700만원에 불용액 269억 4,100만원을 더한 437억 6,800만

원(본예산 대비 3.9%)이 미집행되었고, 2022년도는 409억 4,600만원(본예산 대비 3.6%), 2023년도는 264억 8,300만원(본예산 대비 2.3%)이 각각 미집행되었음.

<연도별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102,339	1,102,339	-	△16,827	-	1,085,512	1,058,571	96.0	97.5	-	26,941
2022	1,132,882	1,131,270	-	△33,695	-	1,097,575	1,090,324	96.4	99.3	-	7,251
2023	1,152,612	1,152,612	-	△26,483	-	1,126,129	1,126,021	97.7	100.0	-	108
2024	1,190,157	1,190,157	-	△34,765	-	1,155,391	1,149,072	96.5	99.5	-	6,319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해당 예산의 미집행 원인을 전국 54개 교정기관의 교정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 등 인원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함. 2024년의 경우 교정직 공무원 현원은 정원 대비 220명 부족하였고, 연도별 차이가 있긴 하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약 200명에서 많으면 700명 이상까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교정직 공무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원	16,652	16,808	16,776	16,716
현원	16,109	16,085	16,503	16,496
신규채용인원	616	693	902	1,003
퇴직인원	594	744	989	785

* 주: 매년 12월 말 기준

자료: 법무부

해당 세부사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전용 및 불용액 비율(2.3%~3.9%)은 전체 인건비 규모 대비 낮은 것은 사실임. 다만, 매년 200~400억원 대의 예산이 교정직 공무원의 인건비에 사용되지 못하고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거나 불용되고 있는바, 이는 인건비 지급이라는 예산의 본래 편성 목적과 다른 사용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예산 편성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타 사업의 예산 부족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관용화될 우려가 있음.

한편, 법무부가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는바,[177] 결원 발생의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충원대책 마련 등 인력 부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세부항목>

요 인	요인별 가장 스트레스 높은 세부항목 응답 순위 및 비율	
수용자 관리	1위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5%)
	2위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관련 협박 포함)(19.9%)
	3위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17.5%)
	4위	수용자 심부름꾼처럼 등 느껴지는 업무(15.9%)
	5위	비일관적인 수용자 관리 원칙(9.1%)
물리적 근무 환경 및 일정	1위	폐쇄된 근무환경(28.0%)
	2위	예기치 못한 근무장소나 배치 등의 변동(24.9%)
	3위	폭언, 폭력, 협박 등에서 상시 노출되는 환경(20.1%)

177)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대상 실시('24.9.23. ~ '24.10.20.)

	4위	근무 스케줄(야간근무, 공휴일 근무 등)(17.0%)
	5위	외부와의 연락두절(10.0%)
업무관련 스트레스	1위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부족(50.1%)
	2위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 모호(20.2%)
	3위	업무 특성과 개인 성향 간 불일치(13.4%)
	4위	공정하지 못한 근무 평가 및 인사 처리(8.7%)
	5위	일과 삶의 불균형(7.6%)
조직문화	1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31.8%)
	2위	자기생각이나 방식만 고집하는 팀장/팀원(21.4%)
	3위	타 팀(부서) 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18.8%)
	4위	조직에 대한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16.0%)
	5위	팀장/팀원과의 문화적인 세대 차이(12.2%)

자료: 법무부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사 현황을 면밀히 반영함으로써, 미집행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는 한편, 부족한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 범죄예방정책국

(1) 소년원생 수용(1632-300)

▢ 결산 개요

“소년원생수용” 사업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대행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하며,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6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26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소년원생 수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소년원생수용	26,887	-	-	-	26,767	26,152	-	615	26,971

▢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보호소년등의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

록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교정교육 원칙으로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음.[178]

<소년원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특성화교육	외부경시대회 입상	165	67	96	65
	상급학교 진학	148	121	114	151
	검정고시	303	254	285	310
	편입학	290	376	410	721
	졸업장취득	94	90	98	129
	일반자격증	2,187	2,107	2,500	2,734
직업능력 개발훈련	현장훈련	14	29	56	90
	기능자격 취득	723	830	852	1,108
	기능대회 입상	83	70	63	97
사회복귀 지원	취업 알선	206	134	69	76
	후견인지정	2	4	–	–
	멘토링 결연	208	118	218	367
	사후지도	10,757	10,584	9,590	9,867
	장학금 지급	368	343	366	216
합계		15,548	15,127	14,717	15,931

자료: 법무부

17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생 략)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원 내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장학금 지급 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연 인원은 매년 약 15,000명~16,000명 수준임.

그러나, 최근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1년 이내 재입원 비율이 2021년 4.7%에서 2022년 8.2%, 2023년에는 10.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2년 이내 재입원 비율은 19.8%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소년원생 재입원 현황 〉

(단위: 명)

출원 연도	출원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8	2,225	148	6.7%	344	15.5%	400	18.0%
2019	1,832	113	6.2%	281	15.3%	328	17.9%
2020	1,468	91	6.2%	217	14.8%	243	16.6%
2021	1,327	63	4.7%	171	12.9%	209	15.7%
2022	1,394	114	8.2%	276	19.8%	–	–
2023	1,669	173	10.4%	–	–	–	–
2024	–	–	–	–	–	–	–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은 이들의 사회재통합 뿐만 아니라 재범예방과도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후 사회 정착률을 증가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4.
계	5,934	5,237	5,689	6,757	7,568	2,375
보호소년	1,637	1,361	1,520	2,092	2,430	774
위탁소년	4,297	3,876	4,169	4,665	5,138	1,601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2019)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소년원 출원 이전부터 출원 이후까지 연결되는 사회정착 지원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는바,[179] 현재 소년원 출원 이후 제공되는 사회 내 프로그램으로는 보호관찰 단계에서 실시하는 취업알선·직업훈련과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청소년창업비전센터[180]의 직업훈련 등이 있음.

특히,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81]에 따라 출원하는 보호소년에게 장

179) 전영실 외 7인,「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2019.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437

180)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만 12세에서 22세까지의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에게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 숙식, 대학 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에 총 8개(의왕·대전·부산·광주·대구·안양(여)·전북·강원)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설치되어 있고,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 네일·메이크업 등 미용 분야의 직업훈련기회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경우 산업기능·제과제빵·웹툰 분야 등의 기숙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18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곳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182]은 보호소년이 무의탁소년인 경우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한국소년보호협회”[183]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184] 28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183)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1998.12)된 재단법인임.

18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2024년 보조금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4년도 실집행액
○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2,812,000	2,812,000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966,073	966,073
- 인건비	679,461	679,461
- 사업비	286,612	286,612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193,696	193,696
- 인건비	117,588	117,588
- 사업비	76,108	76,108
■ 청소년자립생활관	1,652,231	1,652,231
- 인건비	1,268,482	1,268,482
- 사업비	383,749	383,749

자료: 법무부

그런데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주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낮은 입주율이 지속되고 있는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과 2개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평균입주율은 50.5%~58%에 불과하였음. 2023년 이후 생활관 등의 정원이 감소하여 평균입주율은 72.8%로 상승하였으나 입주인원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24년 이후에도 부산·안양 생활관의 입주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실제 입주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인지도 자체의 부족 및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 및 실제 입주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 창업비전센터	
연도	합계	강원	대전	대구	부산	안양	광주	전북	의왕	화성	안산
정원	180	18	12	16	16	20	16	18	14	30	20
2020	106	16	10	16	8	6	10	15	2	14	9
2021	102	13	10	18	7	7	8	15	2	10	12
2022	91	6	7	11	7	9	5	12	5	12	17
2023	94	5	7	9	7	9	3	12	5	20	17
정원[185]	125	12	8	13	11	12	9	13	9	24	14
2024	91	6	5	10	5	6	4	12	7	18	18
2025.4	82	6	4	10	4	4	7	12	9	13	13

자료: 법무부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명의 입소 청소년 중 7명은 입소 전 청소년 자립생활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3명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긍정적 인식을 가진 청소년은 1명에 불과하였음.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사전 인식[186]〉

구 분	인 원
나도 주변에서도 모름	7명
부정: 작은 소년원	1명
부정: 자유롭지 못함	1명
부정: 힘들다고 함	1명
긍정: 잘해준다고 함	1명

자료: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185)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자립생활관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2023년 이후 정원이 감소하였음.

186)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수용 미달 해소로써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187]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자립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년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188]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정원은 1,330명인데 비해, 1일 평균 수용인원 1,445명으로 평균 수용률 109%의 과밀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187)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188)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위탁소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유치소년)을 수용하며, 비행원인과 자질의 분석을 통해 법원의 조사 및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자,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게 소년에 대한 지도방향 및 처우지침을 제시하는 기관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특히, 부산소년원과 안양소년원의 경우 2024년 기준 수용률이 각각 113%, 170%에 이르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도 137%에 달하고 있음.

수용률 증가 원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규 수용인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인구 자체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소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최저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인구 10만명 당 범죄자 수는 677명(2021년)에서 812명(2023년)으로 20% 증가하였음.[189)]

<최근 5년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현황 등>

(단위: 명)

시설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구 분	정원	1일평균수용	수용률(%)	정원	1일평균수용	수용률(%)	정원	1일평균수용	수용률(%)	정원	1일평균수용	수용률(%)	정원	1일평균수용	수용률(%)
서울소년원	170	206	121	170	170	100	170	135	79	170	99	58	150	140	93
부산소년원	160	149	93	160	75	47	160	86	54	160	160	100	160	181	113
대구소년원	140	107	76	140	110	79	140	111	79	140	121	86	140	143	102
광주소년원	170	133	78	170	124	73	150	105	70	150	135	90	150	148	99
전주소년원	130	103	79	130	97	75	130	97	75	130	117	90	130	129	99
대전소년원	100	105	105	100	90	90	120	93	78	120	98	82	120	102	85

189) ※ 10~18세 소년인구 : 2014년 552만 → 2017년 481만 → 2020년 432만 → 2023년 418만
※ 소년범죄 : 2021년 54,017명 → 2022년 61,026명 → 2023년 66,758명
※ 소년인구 10만명 당 범죄자 수 : 2021년 677명 → 2022년 788명 → 2023년 812명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시설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구 분	정원	1일 평균 수용	수용률 (%)	정원	1일 평균 수용	수용률 (%)	정원	1일 평균 수용	수용률 (%)	정원	1일 평균 수용	수용률 (%)	정원	1일 평균 수용	수용률 (%)
청주 소년원	80	66	83	80	58	73	80	59	74	80	71	89	80	97	121
안양 소년원	80	103	129	80	78	98	80	71	89	80	83	104	80	136	170
춘천 소년원	120	90	75	120	97	81	110	85	77	110	95	86	110	108	98
제주 소년원	40	29	73	40	30	75	40	28	70	40	29	73	40	29	73
소년분류심사원	170	170	100	170	137	81	170	158	93	170	184	108	170	232	137
합계	1,360	1,261	93	1,360	1,066	78	1,350	1,028	76	1,350	1,192	88	1,330	1,445	109

자료: 법무부

소년범죄 증가에 따라 법원에 접수된 소년사건 수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인원이 2021년 대비 2023년에 약 79% 증가하여 소년원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

그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또한 감소하고 있는바,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별 1인당 수용면적 평균은 6.8㎡로, 이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1인실 시설면적 기준인 8.8㎡[191]에 미치지 못하며, 대구소년원(5.4㎡), 전주소년원(4.9㎡), 청주소년원(6.4㎡), 안

190) ※ 법원 사건접수 : 2021년 35,438건 → 2022년 43,042건 → 2023년 50,094건
※ 소년원송치 인원 : 2021년 1,822명 → 2022년 2,368명 → 2023년 3,257명
(출처 : 법원행정처, 「2021~2023 사법연감」)

191)「법무시설 기준규칙」상 다인실의 1인당 시설면적 기준 : 1인실 8.8㎡, 다인실 6.6㎡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제7차 권고(2021. 3. 10.)에서 발췌)

양소년원(5.1㎡), 소년분류심사원(3.2㎡)의 1인당 수용면적은 다인실 기준인 6.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수용시설별 1인당 수용면적>

(단위: 명, ㎡)

기관명	정원	수용면적(A)	1일 평균 수용인원(B)	1인당 수용면적
서울소년원	150	1,224	169	7.2
부산소년원	160	1,285	185	6.9
대구소년원	140	801	147	5.4
광주소년원	150	1,104	146	7.6
전주소년원	130	536	110	4.9
대전소년원	140	1,619	114	14.2
청주소년원	80	720	113	6.4
안양소년원	80	607	119	5.1
춘천소년원	110	1,032	109	9.5
제주소년원	40	330	30	11.0
소년분류심사원	170	744	229	3.2
합계	1,350	10,002	1,471	6.8

주: 2025.7. 기준
자료: 법무부

한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년원 등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을 4명 정하고 있으나,[192] 2024년 기준 수용인원이 5명 이상인 생활실 수는 전체 644실 중 72실에 달하며,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용인원 5명 이상인 생활실의 평균 수용인원은 남 15.5명, 여 8.9명에 달함.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제7차 권고(2021. 3. 10.)에서 서울

1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8명이 정원인 다인실을 최대 22명이 함께 사용하여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하며, 미국·영국 등 소년사법 선진국들 또한 소년보호기관 생활실의 1~3인실 소규모화 등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인실을 1인실로 전환하여 교정교육 효과를 높이고, 수용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음.

<수용인원 5인 이상 생활실 수 현황>

(단위: 명)

	전체 생활실 수		2024년 기준 수용인원 5명 이상인 생활실 수		수용인원 5명 이상인 생활실의 평균 수용인원
서울소년원	89		보호(남)	16	6.2
부산소년원	84	48	보호(남)	6	5.3
		24	위탁(남)	6	8
		12	위탁(여)	0	0
대구소년원	44	34	보호(남)	0	0
		7	위탁(남)	0	0
		3	위탁(여)	0	0
광주소년원	56	43	보호(남)	5	5.2
		9	위탁(남)	0	0
		4	위탁(여)	0	0
전주소년원	77		보호(남)	0	0
대전소년원	78	33	보호(남)	0	0
		19	보호(여)	0	0
		19	위탁(남)	0	0
		7	위탁(여)	0	0
청주소년원	40		보호(여)	11	5.5
안양소년원	50		보호(여)	6	5.3
춘천소년원	63	37	보호(남)	4	5.3
		19	위탁(남)	0	0
		7	위탁(여)	0	0
제주소년원	20	13	보호(남)	0	0
		3	위탁(남)	0	0
		4	위탁(여)	0	0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43	33	위탁(남)	11	15.5
		10	위탁(여)	7	8.9
합계	644			72	

자료: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을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바,[193]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소년원의 임무인 교정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과밀수용이 조속히 해소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2024년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하여 수용거실을 확충하여 왔으나, 향후 소년범죄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체계적 수용정원 증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수용공간 확충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수용정원 증원을 위한 수용실 마련과 함께 수용인원을 낮추기 위한 임시퇴원, 소년보호관찰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원의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용정원 증원 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는 한편, 수용거실 확충 이전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용완화방안 등 중·단기적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 미확보 문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관은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법무부훈령 제1496호)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194] 법무부는 매년 의무관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를 편성·집행해오고 있으며, 2024년 예산에 일반연구비(260-01)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5,7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집행률 47.8%).

<의무관 임상연구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118,560	118,560	118,560	118,560
집행액	87,552	54,720	65,664	56,544
집행률	73.85	46.15	55.38	47.69
연구 수	10개	6개	7개	6개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 등으로 의무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임상연구비 집행 실적 역시 저조하였다는 입장임.

194)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연구비 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제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근무 의무관 현원은 정원[195]대비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바, 2020년 이후 정원 23명, 현원 13.5명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들어 현원이 0.5명 증가하여 14명이 되었으며(충원률 60%), 2025년 5월 기준 11개 기관 중 의무관 정원을 채운 기관은 안양소년원 한 곳 밖에 없음.

<최근 5년 간 소년원 내 진료 현황 및 의무관 정·현원 등>

(단위: 건, 명)

분 류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	
진료 횟수		144,321		117,708		128.628		147,006		163,388		49,444	
진료 인원		144,321		117,708		128.628		147,006		163,388		49,444	
의무관 정·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기관별	서울소년원	2	1	2	1	2	0	2	0	2	1	2	1
	부산소년원	2	1.5	2	1.5	2	1.5	2	1.5	2	1.5	2	1
	대구소년원	2	1.5	2	1.5	2	1.5	2	1.5	2	0.5	2	1.5
	광주소년원	2	1	2	0	2	1	2	1	2	1	2	1
	전주소년원	2	1	2	1	2	1	2	1	2	1	2	1
	대전소년원	3	2	3	3	3	3	3	3	3	3.5	3	2.5
	청주소년원	2	1	2	1	2	1	2	1	2	1	2	1
	안양소년원	2	2	2	2	2	2	2	2	2	2	2	2
	춘천소년원	2	0.5	2	0.5	2	0.5	2	0.5	2	0.5	2	1.5
	제주소년원	2	0.5	2	0.5	2	0.5	2	0.5	2	0.5	2	0.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1.5	2	1.5	2	1.5	2	1.5	2	1.5	2	1.5
	합계	23	13.5	23	13.5	23	13.5	23	13.5	23	14	23	14.5

* 주: 시간제(1일 4시간) 의사의 경우 현원 0.5명에 해당

자료: 법무부

19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3조 제5항 및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

과학기술서기관	9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의무사무관	12
계	23

특히, 2025년 5월 기준 제주소년원의 의무관 현원은 0.5명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의무관이 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점[196]을 고려할 때, 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의무관 정원 미달 문제는 단순히 임상연구비 집행부진을 넘어 보호소년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임.

따라서 법무부는 제주소년원 의무관 등의 조속한 충원대책을 시행하고, 의무관 처우개선 등 인력충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환자의 치료)**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나 그 보호자등이 자비(自費)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 청소년 비행예방(1632-301)

▢ 결산 개요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대상자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유형별 비행예방 전문교육, 체험교육, 비행진단 등을 통해 비행성향을 개선하고, 지도방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54억 4,700만원이고, 5,0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53억 9,700만원이며, 이 중 50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청소년비행예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소년비행예방	5,447	-	△50	-	5,397	5,056	-	341	5,577

▢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청소년 및 기소유예자 등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07년 6개 센터 개청을 시작

으로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197]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 보호자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육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198]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 실적>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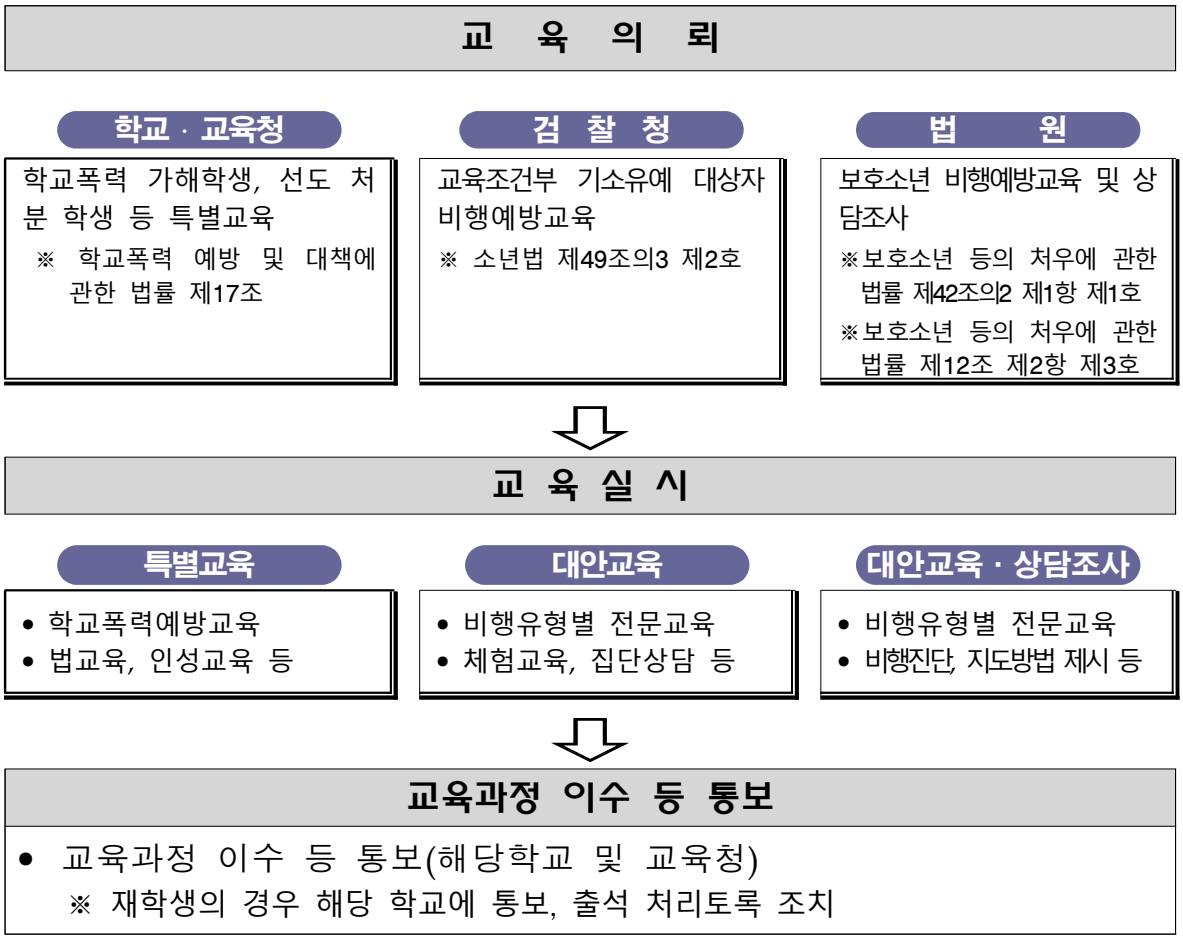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상담조사	2,968	3,512	3,761	3,208
심리검사 (적성검사)	4,488	5,835	5,893	2,203
대안교육	19,820	6,834	7,081	5,488
보호자교육	4,071	5,234	4,730	3,873
학교폭력예방 교육	145,620	124,181	111,061	94,177
진로체험	-	14,321	14,443	6,466
캠프	-	536	535	347
교원연수	-	578	327	168
합계	176,967	161,031	147,831	115,930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197) 부산광역시(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광역시(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광역시(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광역시(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광역시(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안산시(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특별시(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광역시(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소년원이 센터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

198) 법무부는 최근 개별상담 도입, 소규모 집단구성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특별교육 운영에 집중함에 따라 일반학생·교사 등 대상 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교원연수, 캠프 등)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일반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25. 4. 기준 비행예방교육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 집행 절차도〉



자료: 법무부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 외부강사는 별도 계약을 통해 채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국 18개 기관에서 교과목별로 강사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1년 단위로 강의평가, 자격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위촉하는 방식임.[199]

199) ※ 강사료 : **(전문강사)** 최초 1시간 100,000원, 초과 시간당 50,000원, **(일반강사)** 4시간 미만 교육 시간당 40,000원, 4시간 이상 교육 등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최초 1시간 30,000원, 초과 시간당 15,000원 (출처 :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사료 지급 세부기준")

<일용임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액	653	901	980	980	980
집행액	413	626	771	869	803
불용액	240	275	210	111	177
불용률	36%	30.5%	21%	11%	18%

자료: 법무부

외부강사 보수는 일용임금(110-04목)[200]으로 지급되는바, 2024년에는 예산으로 편성된 일용임금 9억 8,000만원 중 18%인 1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0년 이후 불용률이 꾸준히 줄고 있긴 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불용률은 23.3%에 달하고 있음.

전체 외부강사 수는 2021년 276명에서 2022년 296명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별 비행예방센터 강사 수는 매년 큰 변동성을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2024년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외부강사 수의 경우 32%,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27% 감소하였으며, 2025년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50%가 감소하였음.[201]

20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용임금(110-04목)은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의미함.

201)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외부강수의 감소는 2024년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연도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외부강사 수 현황〉

(단위: 명)

기 관	외부강사 수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산	7	11	16	14	13
부산동부	12	23	25	17	21
울산	10	9	8	8	9
창원	8	7	8	8	7
대구	14	14	13	12	11
광주	34	31	30	28	23
순천	21	21	23	21	22
전주	19	23	23	19	20
대전	16	30	29	27	24
천안	17	18	22	16	19
청주	26	24	23	20	20
춘천	13	10	16	17	32
안산	17	14	18	26	13
서울남부	13	13	13	17	16
서울북부	13	11	11	10	16
인천	12	13	14	14	21
수원	8	7	9	9	12
의정부	16	17	16	15	16
합계	276	296	317	298	315

자료: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사가 단기간에 자주 변동되는 외부강사로만 구성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상 혼선 발생이나 전문성 편차가 커지는 등 비행청소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나 보호처분 대상자는 매년 일정 수 이상 발생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효과 분석을 통해 꾸준히 밝혀져 온

점[202]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사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통해 청소년 비행예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 54억 4,700만원 중에 임차료(210-07목) 예산은 15억 7,800만원으로 29%에 해당하는바, 타 사업 대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임차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 현황>

관할 권역	기 관	주소	청사 현황	
			임차기간	월임차료(천원)
수도권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5층	2024. 7. 1. ~ 2025. 6. 30.	7,260
	서울남부	서울시 관악구 청룡1길 2 3층	2022. 6. 1. ~ 2027. 5. 31.	18,229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5-3	2025. 5. 30. ~ 2027. 5. 29	23,100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14	자체 청사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5층	2024. 10. 1. ~ 2026. 9. 30.	4,067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97 8층	2024. 7. 31. ~ 2026. 7. 30	7,033
부산·경남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	자체 청사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5층	2025. 2. 1. ~ 2030. 1. 31.	5,56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8 3층	2023. 9. 1. ~ 2025. 8. 31.	7,590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 6층	2024. 1. 6. ~ 2026. 1. 5.	7,700
대구·경북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자체 청사	

202) 박은영·권해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대상자 심리 특성 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에의 함의 p.2, 소년보호연구 제34권 제2호

관할 권역	기 관	주소	청사 현황	
			임차기간	월임차료(천원)
광주·전남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244	자체 청사	
	순천	전남 순천시 장명로 58 순천문화원 6층	2024. 9. 30. ~2026. 9. 30	5,000
전북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5 2층	2023. 9. 1. ~2028. 8. 31.	8,800
대전·충남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1 5층	2025. 1. 1. ~2027. 12. 31	5,610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39 2층	2020. 7. 10. ~2025. 7. 9.	7,370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 41번길 23	자체 청사	
강원	춘천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279번길 3 2층	2023. 10. 1. ~2028. 9. 30	8,800

자료: 법무부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 자체 청사 보유 기관은 인천·부산·대구·광주·청주 총 5개 기관이며, 나머지 13개 기관은 임차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센터와 서울북부센터의 경우 월임차료가 각각 2,310만원, 1,820만원이어서 연간 2억원 대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임차료는 매년 반복 소요되는 고정비로, 장기적으로 볼 때 누적 예산 소모가 크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 등 직접적 사업성과와 관련된 투자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임차 청사는 계약 만료, 임대료 인상, 이전 가능성 등으로 장기적 안정성이 떨어져 청소년과 보호자,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자체 청사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강사의 전문성 확보 및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자체 청사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비행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 결산 개요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법원·검찰·경찰로부터 의뢰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6억 8,000만원 중 12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2,680	-	-	-	12,680	12,146	-	534	12,581

▢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충원방안 강구 필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로 개청하여 2006년부터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음.

「치료감호법」에서 규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또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면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203]에 대한 보안처분임.

2025년 4월 기준 국립법무병원은 826명의 피치료감호자 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립법무병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여 그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 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204]

---

20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6조(주치의) ① 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치의는 피감호자의 출소 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한다.

〈국립법무병원 현황〉

(단위: 명)

병동 수	병상 수	수용인원	의료기기* 수	의료인력**	기타인력***
25	1,200	826	420	330.2	96

*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CT) 등
** 의사 · 약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보호 · 시설 · 전산 · 공업 · 방송통신 · 식품위생 · 관리운영 · 운전 · 조리 · 방호 · 전문경력
**** 주: 2025. 4. 30.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사 전체 정원 20명 대비 현원은 각 8.5명, 10.5명, 9.9명, 10.2명이었음. 정신과의 경우 더욱 낮은 충원율인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대비 현원은 각 5.5명, 8명, 8.5명, 6.8명이었음.

〈국립법무병원 의사 및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계	20	20	20	20	20
	정신과	15	15	15	15	15
	일반진료과	5	5	5	5	5
현원	계	8.5	10.5	9.9	10.2	14.2
	정신과	5.5	8	8.5	6.8	9.8
	일반진료과	3	2.5	1.4	3.4	4.4
수용인원		935	825	814	804	813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		170	103	96	118	83

* 주1: 의사 정·현원의 경우 연말 기준(2025. 5. 23. 기준)이며, 수용인원의 경우 연평균 수용인원임
* 주2: 정신과 의사 수에 전공의 미포함이며, 2025. 5. 23. 기준 전공의 9명(9×0.5*=4.5) 포함 시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7명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4]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봄)
자료: 법무부

2021년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170명에서 2024년 118명까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205]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바, 정신과 의사를 충원하여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립법무병원은 재활치료를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연인원 11,781명[206]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

---

2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 ⑦ (생 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구분	정신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간호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보안 전담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206) 인성병동 1,175명, 의료재활치료 2,058명, 정신재활치료 6,932명, 약물중독 프로그램 306명, 제빵·PC정비 등 7개 직종 직업훈련 교육참여 연인원 1,310명

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 매년 11명~13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효과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207]

<국립법무병원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인력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사	11.5	8.5	10.5	9.9	10.2
약사	5	5	5	4	3
간호사	124.5	130.5	133.5	145.5	154
간호조무사	157	148.5	157	158	158
임상심리사	5	4	4	5	4
작업치료사	2	3	4	4	5
사회복지사	5	5	4	2	4
합계	310	304.5	318	328.4	338.2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보수 현실화, 업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충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각종 치료 및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기타 의료인력의 충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7)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피치료감호자의 2024년 연평균 일일 수용인원은 788명이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3명으로, 입원환자 100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을 두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4) 보호관찰활동(1635-300)

▢ 결산 개요

“보호관찰활동” 사업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치료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61억 1,400만원이고, 이·전용 등 증액 5,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61억 6,400만원이며, 이 중 15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99만원을 불용하였음.

<보호관찰활동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보호관찰 활동	16,114	-	50	-	16,164	16,000	-	165	17,102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11,134	-	-	-	11,135	10,971	-	165	11,727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877	-	-	-	1,877	1,877	-	-	1,777
·사업 지원 경비	3,103	-	50	-	3,152	3,152	-	-	3,598

▢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사전 편성 필요

법무부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주취·

심신장애인·마약중독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기간을 두고 치료받도록 하는 치료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208]

〈치료명령제도 절차〉

❶ 대상	❷ 판결	❸ 판결문 접수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중, 심신장애인, 마약·알코올을 흡입·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 ■심신장애·알코올·마약중독 진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부과 (선고유예 1년, 집행유예 1년~5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❹ 보호관찰(치료명령집행)	❺ 치료비용	❻ 종료
■관할 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행 ■강화된 보호관찰 지도·감독 ■집행방법 –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치료기관에서 집행	■원칙 : 자비부담 ■예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장의 결정에 의한 국가 부담	■기간경과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자료: 법무부

20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제도는 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원칙적으로 치료명령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가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09]

이에 따라 법무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10]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211]의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2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국가는 법 제44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피치료명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2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 략)

21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는 2022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만을 편성·집행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심리치료비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212]에 따라 2023년부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2024년 예산에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집행률 164.7%), 이러한 초과 집행은 2024년부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024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명,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5.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기 상황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기 상황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기 상황자
편성인원	161	114	249	59	-	140	19	-	140	19	-
지원인원	158	23	198	47	57	180	4	198	121	2	159
편성액	193,200	136,800	298,800	70,800	-	168,400	22,800	-	168,400	22,800	-
집행액	141,830	20,737	237,813	5,230	7,079	158,750	2,700	153,556	53,820	960	60,930

자료: 법무부

212) 법제사법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추후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을 현실화하여 편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함으로써 저조한 집행률을 제고할 것

또한 2023년도에는 위기상황자 57명에게 약 707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198명에게 약 1억 5,355만원이 지급되어 위기상황자 1인당 지원액이 2023년 12만 4,000원에서 2024년 77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위와 같은 예산의 초과집행 및 인원 대비 지원액의 차이 발생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3년에는 4분기부터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1인당 심리치료 횟수가 1.2회에 그쳤으나, 2024년 1~4분기에는 1인당 7.8회의 심리치료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집행액이 급증한 것으로 설명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집행할 필요가 있음.

(5)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1636-304)

▢ 결산 개요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사업은 법질서 실천운동, 법교육 활동, ‘솔로몬로파크’[213]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실시 및 법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주민 대상 CPTED교육[214]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2억 7,100만원 중 6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6,271	-	-	-	6,271	6,134	-	137	6,277

▢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위탁대금의 일반용역비 편성·집행 필요

법교육 운영 사업 중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자치

213)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현재 대전·부산·광주에 각각 위치하고 있음.
214)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험을 제공하고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려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워크북 등 교재 보급, 지도교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자치규약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체험형 법교육을 실시함.

2024년의 경우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41개교, 기타 2개교로 총 148개교가 학생자치법 교육을 운영하였음.

2024년 법무부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학생 자치법 교육사업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동 사업은 해당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며, 해당 기관에 운영 위탁하기 위한 대금 1,999만 8천원이 일반수용비 비목에서 집행되었음.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항목	집행예산
강사료	23,750
교구재 제작 등	65,778
프로그램 위탁 비용	20,000
기타운용비	5,000
합계	114,528

자료: 법무부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대금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나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

의 구입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 용역계약을 통해 일반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215] 일반수용비(210-01목)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215) <일반수용비(210-01목)와 일반용역비(210-14목) 적용대상의 비교>

일반수용비(210-01목)	일반용역비(210-14목)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비 ○ 안내·홍보물등제작비, 간행물등구입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등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 행사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대행함에 따른 제비용임

※ 출처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p.213, p.227

자. 법무연수원

(1)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5131-300)

▢ 결산 개요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은 법무연수원 시설을 관리하고,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며, 교육생 숙식 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50억 3,200만원이고, 이 중 47억 7,76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5,032	-	-	-	5,032	4,776	-	256	5,437
· 공무직 운영	3,195	-	-	-	3,195	3,091	-	104	3,392
· 연수원 시설운영	956	-	-	-	956	929	-	27	1,264
· 교육생 숙식 지원	841	-	-	-	841	719	-	121	741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40	-	-	-	40	36	-	4	40

▢ 공무직 중도퇴사 및 공무원 초과현원 점검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2015년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현재 '진천 본원'과 '용인 분원' 2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천 본원'은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에 대한 교육을, '용인 분원'은 신임검사, 특사경, 국제연수, 로스쿨 지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법무연수원 본원(진천) 및 분원(용인) 비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진천 본원</th><th colspan="2">용인 분원</th></tr>
<tr><td>조직</td><td colspan="2">· 5과(총무과, 기획과, 일반연수과, 교정훈련과, 교정연수과)</td><td colspan="2">· 2과(운영지원과, 법무교육과)</td></tr>
<tr><td>인적구성
(정원)</td><td colspan="2">· 검사 11명
· 4급 이상 10명
· 5급 18명
· 6급 이하 66명
· 총 105명</td><td colspan="2">· 검사 8명
· 4급 이상 3명
· 5급 3명
· 6급 이하 15명
· 총 29명</td></tr>
<tr><td>시설</td><td colspan="2">· 토지 : 624,025㎡
· 건물 : 64,962㎡
※ 강의실 34실, 생활관 537실</td><td colspan="2">· 토지 : 210,400㎡
· 건물 : 28,791㎡
※ 강의실 13실, 생활관 133실</td></tr>
<tr><td rowspan="3">주요기능
(특징)</td><td>기획과</td><td>검사, 검사직무대리, 군검사, 공익법무관, 지역사회교육 등</td><td rowspan="3">법무교육과</td><td rowspan="3">신임검사, 특사경, 소송수행자, 국제연수, 로스쿨 지원 교육 등</td></tr>
<tr><td>일반연수과</td><td>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육</td></tr>
<tr><td>교정훈련과, 교정연수과</td><td>교정직 교육</td></tr>
</table>

동 세부사업 내에는 교육생 식당 및 법무연수원 시설 운영을 위한 조리원, 미화원, 기계원 등 공무직 82명에 대한 인건비인 '공무직 운영'내

역 사업이 있으며, 법무연수원은 동 내역사업을 위해 2024년에 예산액 3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0억 9,1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은 불용하여 집행률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음.

<2024년도 공무직 운영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 공무직 운영	3,195	3,091	104	3,392
- 상용임금(110-03)	2,717	2,696	21	2,803
- 복리후생비(210-12)	41	41	-	41
- 고용부담금(320-09)	436	354	83	548

그런데, 최근 3년간 공무직 중도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3명, 2023년 19명, 2024년 20명으로 연평균 21명 가량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공무직 85명(진천본원 62명, 용인분원 23명)의 25% 수준으로 퇴직 비율이 다소 높은 상황임.

특히, 식당에서 음식 조리, 배식, 세척을 담당하는 조리 분야 공무직의 경우 2022년 전체 중도퇴직자 23명 중 11명(48%), 2024년 전체 20명 중 13명(65%)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조리 분야 공무직의 전체 운영 계획 인원이 총 24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임. 퇴직 사유는 주로 개인 사정을 들고 있지만, 근무환경 및 노무관리와 처우현황 등 근본적인 퇴직원인 파악·확인과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연수원 공무직 중도퇴직자 현황〉

(단위: 명)

연도	분야* (운영계획인원)	중도퇴직자			퇴직 사유
		진천	용인	계	
2022	조리(24)	9	2	11	정년퇴직 및 개인사정
	미화(23)	4	2	6	개인사정
	기계(6)	1	1	2	개인사정
	시설(7)	–	2	2	개인사정
	전기(2)	–	1	1	개인사정
	경비(8)	1	–	1	정년퇴직
	소계	15	8	23	
2023	조리(24)	8	–	8	개인사정
	미화(23)	8	–	8	정년퇴직 및 개인사정
	조경(6)	2	–	2	개인사정
	전기(2)	–	1	1	개인사정
	소계	18	1	19	
2024	조리(24)	12	1	13	개인사정
	미화(23)	4	–	4	정년퇴직 및 개인사정
	조경(6)	2	–	2	정년퇴직 및 개인사정
	사무(6)	1	–	1	개인사정
	소계	19	1	20	

* 전체 82명 중 중도퇴직자 미발생 분야는 제외

한편, 2025년 3월 기준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현원을 확인한 결과, 총 정원 134명, 현원 158명으로 24명, 118%의 초과정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인 분원'이 '진천 본원'보다 과충원 비율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검사 및 일반직 등 모든 직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본원과 분원의 역할 분담 및 인원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명, 2025. 3. 기준)

구 분	본 원		분 원		전 체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합 계	105	113	29	45	134	158
검 사	11	9	8	17	19	26
4급이상	10	7	3	3	13	10
5급	18	20	3	5	21	25
6급이하	66	77	15	20	81	97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수원 교수 정원만으로는 교육 운영이 어려워 파견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이 경우 임시적 조치인 파견 방식을 고수하여 과도한 초과인원을 유지하기 보다는 직제 반영 등 정원 내에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분원 업무가 과다할 경우 본원과의 역할 재분배를 통해 조직 및 인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해 보임.

(2)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 결산 개요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사업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통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고도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6억 500만원이고, 이 중 1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605	-	-	-	1,605	1,427	-	178	1,577
·교육운영	1,082	-	-	-	1,082	958	-	124	1,054
·교육운영 지원	523	-	-	-	523	469	-	54	523

▢ 교육프로그램 핵심 성과 반영을 위한 평가 체계의 전반적 점검 및 개선 필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및 위탁교육을 통한 선진 법무행정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등 법무교육훈련(5100번) 프로그램 내 4개의 세부사업과 3개의 기본경비(7000번)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은 총 288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4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법무연수원 소관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	현액대비 집행률	
합 계	28,820	28,820	26,320	24,840	94.4%	29,110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5,032	5,032	5,032	4,776	94.9%	5,437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605	1,605	1,605	1,427	88.9%	1,577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137	137	118	86.1%	137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1,008	1,008	1,008	1,002	99.4%	1,008
○ 법무연수원인건비(총액)	15,471	15,471	12,971	12,484	96.2%	15,026
○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616	616	616	543	88.1%	616
○ 법무연수원기본경비	4,951	4,951	4,951	4,490	90.7%	5,309

법무연수원은 교육훈련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대표지표로 선정하고, 연수원 교육 종료 시 교육생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정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 성과 측정 및 결과 도출 등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216]

먼저, 법무부 2024년도 성과보고서 상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목표 88.8점, 실적 91.2점으로 달성률은 102.7%이고, 2024년의 경우 목표 90.0점, 실적 92.4점으로 102.7%를 달성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최근 4년간 매년 목표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연수원 운영 프로그램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24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	5점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백분율 환산)	목표	88.8	88.9	89.9	90.0
		실적	91.2	91.4	91.6	92.4
		달성(%)	102.7	102.8	101.9	102.7

하지만 매년 초과달성은 목표치 설정에 있어 초과 달성된 과거 실적치를 토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극적으로 설정함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목표치를 실적에 맞게 현행화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성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6) 프로그램단위로 진행되는 성과보고서 상의 평가는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인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및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2개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무연수원의 전반적인 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소관 내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음.

특히, 기재부는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통해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작성에 있어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를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목표치 설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217] 법무연수원은 '21년과 '22년의 실적이 코로나-19 기간에 화상교육 확대에 따른 일시적 상승이라 판단하여 '23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한편, 목표대비 초과 달성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법무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만족도 점수에 대한 근본적 점검 및 수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법무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의 전 과정을 종료한 후 피교육생이 과정평가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여기서 도출된 프로그램 평균만족도를 산정하여 매년 평가결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정평가 설문서는 인적사항 및 서술형 보충답변(아래 1번~3번 문항, 12번 문항)을 제외한 총 8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한 뒤 모든 문항의 평균으로 총 만족도를 도출하고 있음.

그런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교육 평가의 핵심인 교육 내용 및 효과 관련 문항(아래 표 중 음영)이 2개여서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217)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8p. 참조

에는 문항수가 부족하고, 특히 현재 2개의 핵심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프로그램 총 만족도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과정들도 확인되고 있는바, 결국 핵심적 업무성과가 인정되어 성과점수에 반영되기보다는 교육지원, 편의시설 및 급식과 같은 보조적 업무에서의 고득점을 통해 목표점수를 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문제는 과정이 필수교육 여부, 고위직 여부, 실무 필요성 여부, 실·국별 구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공통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평가 설문 항목별 점수 예시>

과정명	산정제외	설문항목								프로그램 총 만족도
	1,2,3,12	4 핵심	5 핵심	6	7	8	9	10	11	
(필수)검찰신규자	0	4.12	4.16	4.19	4.29	4.43	4.51	4.38	4.41	**4.24**
제1기 검찰 고위정책과정	0	4.13	4.19	4.31	4.56	4.69	4.25	4.25	4.5	**4.38**
(필수)소년비행 예방교육과정	0	4.87	4.8	4.93	4.93	5	4.73	4.8	4.8	**4.91**
(필수)외국인행정 데이터분석·활용실무	0	4.29	4.18	4.06	4.71	4.82	4.76	4.76	4.76	**4.41**
(필수)출입국심사실무	0	4.42	4.47	4.26	4.47	4.53	4.58	4.58	4.37	**4.43**
2024년상반기 공판부전문화과정	0	4.73	4.59	4.68	4.91	4.91	4.95	4.77	4.86	**4.76**
전자감독실무과정	0	4.66	4.82	4.68	4.82	4.82	4.82	4.79	4.53	**4.76**

* 산정제외: 인적사항(1~3번 문항) 및 서술형 보충답변(12번 문항)으로 비계량 척도

〈교육프로그램 과정평가 설문서 중 5점 평가 문항 중 일부〉

구 분	설문문항	5점 배점(점)				
교육 효과 (핵심)	4. 이번 교육은 업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1	2	3	4	5
	5. 교과목의 구성은 교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였다.	1	2	3	4	5
교육 운영	6. 교육기간은 교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였다.	1	2	3	4	5
	7. 담당 교수의 교육 운영은 만족스러웠다.	1	2	3	4	5
	8. 담당 직원의 교육운영지원은 만족스러웠다.	1	2	3	4	5
교육 환경	9. 교육시설(강의실, 생활관, 체육시설 등)의 관리상태 및 운영은 만족스러웠다.	1	2	3	4	5
	10. 편의시설(셔틀버스, 생활관, 체육시설 등)의 관리상태 및 운영은 만족스러웠다.	1	2	3	4	5
	11. 급식은 만족스러웠다.	1	2	3	4	5

따라서, 법무연수원은 교육 연수라는 본연의 핵심업무 성과가 제대로 측정・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체계를 재점검하거나,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5131-311)

▢ 결산 개요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법무부 외의 타 기관 교육대상자에게 연수원 시설사용 대가로 징수하는 교육료 수입에 기반하여,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억 3,700만원이고, 이 중 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	-	-	137	118	-	19	137
·교육 운영	137	-	-	-	137	118	-	19	137

▢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국가재정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나, 당해 경비나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218]

이에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외의 타 기관 교육대상자에게 교재대, 식대, 공공요금에 필요한 재원마련 명목으로 일정 부분의 교육비를 징수하여 세입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예산 부족분 만큼의 세출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음.

동 세부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상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1년 45.3%, 2022년 45.7%, 2023년 73.5%, 2024년도는 85.8%로 집행률과 집합교육 실적이 함께 상향 추세이나, 아직 85%대여서 추가적으로 집행률 제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

218)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최근 4년간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불용액	집합교육 실적 (타기관 교육생)
	본예산	추경(A)					
2021	159	159	159	72	45.3	87	총 11과정, 617명
2022	151	151	151	69	45.7	82	총 21과정, 1,295명
2023	151	151	151	111	73.5	40	총 48과정, 2,193명
2024	137	137	137	118	85.8	19	총 47과정, 2,307명

법무부는 연도별 불용사유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집합교육을 축소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불용액 발생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음.

〈최근 2년간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지출) 불용내역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2024년			
구 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일반수용비 (210-01)	침구류 세탁비 등	7	7	-	5	5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생활관 공공요금	11	4	7	9	6	3	일부 교육 온라인 진행 등
급식비 (210-04)	교육생 급식비	133	100	33	123	107	16	일부 교육 온라인 진행 등
합 계		151	111	40	137	118	19	

그런데 불용액 발생원인이 온라인 교육진행 때문이라면 해당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중인 집합교육의 축소 여지는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세부사업 집행률이 2023년 73.5%에서 2024년 85.8%로 상향된 것은 집행실적 개선요인보다는 예산액이 2023년 1억 5,100만원에서 2024년 1억 3,700만원으로 감액됨에 기인하는 부분인바,[219] 집합교육 축소가 합리적일 경우 예산액의 추가 감액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011년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도입 당시 배경은, 기존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법무연수원 항에 편성·집행해왔으나, 예산 부족에 따라 교육생 1인당 교재대, 식대, 공공요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교육비를 징수하여 세입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대신 예산부족분 만큼의 세출예산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집행한 것임.

그리고 2021년에는 기존 법무부 소속 교육생에 대한 교육 소요예산을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편성하고, 법무부 외의 타기관 소속 교육생에 대해서만 식대, 생활관 공공요금,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비를 징수하도록 한 바 있음.

---

219) 2024년에 예산 감액없이 2023년과 동일했다면, 집행률은 78%인 것으로 추산됨.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은 연수원 부족 예산을 타 기관의 교육생들에게서 징수한 교육비로 충원하려는 수입대체경비를 도입하게 된 당초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 할 것임.

따라서, 법무연수원은 과거 추세와 향후 교육생 운영계획 및 온라인 교육 확대 진행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필요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측면을 점검하고 그 만큼 삭감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만약 예산 삭감이 불가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원 시설 활용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발굴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7018-204)

▢ 결산 개요

법무연수원 기본경비는 법무부 소속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신임검사, 특사경, 로스쿨 지원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운영 경상경비로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6억 1,600만원이고, 이 중 5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616	-	-	-	616	543	-	73	616

▢ “포상금 용도”에 “기타운영비” 사용 개선 필요

법무연수원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및 직책수행경비 5개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타운영비(210-16) 예산은 9,000만원이고, 이 중 8,900만원이 집행됨.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기능・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 기본경비 (총액)	616	616	616	543	616	543	73	616
-특근매식비 (210-05)	69	69	69	50	69	50	19	69
-일 · 숙직비 (210-06)	40	40	40	39	40	39	1	40
-복리후생비 (210-12)	132	132	132	122	132	122	11	132
-기타운영비 (210-16)	90	90	90	89	90	89	-	90
-직책수행경비 (250-02)	285	285	285	244	285	244	41	285
합 계	616	616	616	543	616	543	73	616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210-16목)”는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직원 등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나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격려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기적 격려금 지급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법무연수원의 기타운영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격려 목적에 집행하거나, 분기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임(음영 참조).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기타운영비(210-16) 중 부적절 집행 사례>

(단위: 원)

지급일자	집행 내역	지급액
2024-03-07	우수 및 격무직원 격려	3,000,000
2024-05-23	격무직원 격려	2,300,000
2024-06-03	2분기 우수직원 격려	3,300,000
2024-06-10	6월 법무연수원 행사 관련 격려	1,150,000
2024-06-20	격무부서 및 팀 격려	1,200,000
2024-08-08	격무직원 등격려	1,600,000
2024-08-21	각종 행사 지원 및 하절기 격무지원 격려	2,000,000
2024-08-21	각종 행사 지원 및 하절기 격무지원 격려	3,500,000
2024-08-21	각종 행사 지원 및 하절기 격무지원 격려	3,000,000
2024-08-21	격무직원 등 격려	600,000
2024-08-26	격무지원 격려 등	500,000
2024-08-29	격무지원 격려 등	3,300,000
2024-09-04	3분기 우수직원 격려	3,300,000
2024-12-04	4분기 우수직원 격려 등	8,400,000
2024-12-18	연말 맞이 우환.격무직원 격려 등	1,800,000

특히, 기획재정부 지침이 '기타운영비(210-16)'의 정기적 격려용 지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회성 격려가 아닌 정기적인 격려는 사실상 포상성격이므로, 수여 대상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여자와 미수여자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바, 이 경우는 '포상금(310-03)'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기재부 지침은 "포상금(310-03)"을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으로 정하고,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기재부 지침상 포상금과 기타운영비 규정>

포상금(310-03)
-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 **강조사항 :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기타운영비(210-16목)
-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강조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포상금을 활용한 공무원의 격려·포상은, 법령상 근거를 통해 포상 대상인 업무행위와 포상금액 등이 명확해지고, 선발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기관장(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가능해져 포상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법무연수원은 지금까지 기타운영비(210-16)를 통해 지급하던 사례를 전수 검토하여 포상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해당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거나, 격려금 수여가 필요한 부분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세 입 ◈

(1) 전년도 세계잉여금(89-893)

▢ 결산 개요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5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70.2%인 111억 6,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

<전년도 세계잉여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전년도 세계잉여금	6,560	-	6,560	11,168	11,168	-	-	9,388

▢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교도작업특별회계는 「형법」 제67조 및 제69조[220]에 따라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노역(勞役)인 교도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220)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여 설치[221]한 특별회계로서, 국가재정 지원 없이 교도작업에 의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운영하고 교도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회계임.[222]

전년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동 잉여금을 당해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비목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임.[223][224]

<연도별 교도작업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결산상 잉여금 (C=A-B)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0	118,424	107,406	11,018	9,849	13,884	13,884
2021	114,370	106,756	7,614	9,849	11,018	11,018
2022	118,032	109,684	8,348	9,840	7,614	7,614
2023	124,214	113,046	11,168	9,840	8,348	8,348
2024	131,264	118,297	12,967	6,560	11,168	11,168

자료: 법무부

22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2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2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24)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19.4. p.4.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계잉여금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징수결정되었는바, 2024년의 경우 예산액이 과소계상되어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음(수납률 170.2%).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2024년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1,205억 2,900만원임에 반해 실제 세입수납액은 1,312억 6,400만원으로 107억 3,500만원 초과하였는바, 이는 2023년도 세출이 과소집행되어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이 원인임.

<연도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액 및 결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예산	세입결산	세출예산	세출결산
2020	127,177	118,424	127,177	107,406
2021	138,372	114,370	138,372	106,756
2022	121,571	118,032	121,571	109,684
2023	121,479	124,214	121,479	113,046
2024	120,529	131,264	120,529	118,297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계적으로 매년 약 98억 4,000만원을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왔는바,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실제보다 과소·과다하게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할 경우, 이는 다시 이듬해 세입 세출간 불균형을 일으켜 특별회계 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

해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시 연도별 수납실적 및 지출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설비부담금(59-595)

▢ 결산 개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의 경우 2024회계연도에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설비부담금”의 경우 2024회계연도에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기타재산 이자수입	-	-	-	2	2	-	-	-

<설비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설비부담금	-	-	-	17	17	-	-	-

▢ 미반영 세입의 예산 반영 검토 필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설비부담금(59-595)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수납되었지만 예산에는 그동안 미계상되어 왔음.

<최근 4년간 예산 미반영 세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최근 4년간 평균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기타재산 이자수입 (54-546)	2	2	2	2	2	2	2	2	2
설비부담금 (59-595)	22	22	16	16	17	17	17	17	18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교도작업특별회계 관리통장의 이자 수입 200만원이며,

설비부담금(59-595)은 교정기관 위탁작업장 화재보험료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수납실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세입이 예상되므로,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예산에서의 계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매년 세입이 예측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에 기타재산이자수입과 설비부담금 비목을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세 출 ◈

(1) 시설보완(1535-302)

▢ 결산 개요

“시설보완” 사업은 작업장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교도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4억 7,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억 8,9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51억 6,400만원이며, 이 중 5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설보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시설보완	4,475	689	-	-	5,164	5,054	22	88	3,897
・건설비	3,022	689	-	-	3,711	3,602	22	87	2,444
・유형자산	1,453	-	-	-	1,453	1,452	-	1	1,453

▢ 교도작업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작업장 신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교도작업을 형벌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

항에서는 벌금과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225] 즉, 작업부적격자가 아닌 징역형 수형자나 벌금·과료 미납자는 교도작업을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5년간 정역집행률은 93.3~93.8%를 유지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작업부과 적격자 20,476명(93.8%)가 정역에 복무하고 1,351명(6.2%)은 정역에 복무하지 못하였음.

<수형자 5년간 정역집행률 현황(1일 평균)>

(단위: 명, %)

연 도	작업부과 적격자*					
	계(A)	미작업**	작업자			정 역 집행률 (B/A)
			소 계(B)	생산작업	비생산*** 작 업	
2020년	22.396	1,453	20,943	10,796	10,147	93.5%
2021년	21,665	1,447	20,218	10,727	9,490	93.3%
2022년	20,270	1,325	18,945	9,887	9,060	93.5%
2023년	21,068	1,335	19,733	10,463	9,270	93.7%
2024년	21,827	1,351	20,476	10,808	9,668	93.8%
2025년 4월	22,205	1,222	20,983	10,957	10,026	94.5%

* 환자, 징벌, 장애, 고령,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작업에 부적격한 수형자를 제외한 작업 적격 대상자

** 분류심사, 추가사건, 이송대기, 조사 등의 사유로 미작업 중인 수형자

*** 직업훈련 및 운영지원작업(교도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취사, 청소, 시설보수 등의 작업) 수형자

자료: 법무부

---

225)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작업적격자가 작업장 부족으로 교도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도작업장 신·증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226]

그러나 작업장에 배정된 생산작업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오히려 직전 연도보다 작업장 배정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 2023년과 2024년에 생산작업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긴 하였으나, 미작업인원도 함께 증가하였는바, 이는 전체 작업 적격대상자 인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작업장 배정 시간·장소 효율화, 기존 또는 신규 교도작업장 확대 제공을 위한 외부업체와의 협력 강화, 작업장 신축을 통한 규모확대 등 형법상 정역의무가 있는 작업적격자의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6) **(2021)** 여주교도소 등 3개 기관, 6개 작업장 신축
(20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개 기관 작업장 신축
(2023) 강원북부교도소 1개 기관, 4개 작업장 신축
(2024) 강릉교도소 등 2개 기관, 3개 작업장 신축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수 입 ◈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결산 개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법무부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반납한 반환금으로, 당초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1,700만원이었으나, 38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0억 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1,800만원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기타경상 이전수입	2,717	-	2,717	3,820	3,002	818	-	3,164

▢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편성 관행 시정 필요

보조사업의 수행을 마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미집행 잔액을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227]에 따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한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는 해마다 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미집행 잔액을 중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집행 잔액을 'e-나라도움'[228]에 반납하면, 'e-나라도움'에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중앙관서(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의 순으로 집행잔액 반납 수령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절차>



자료: 법무부

2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8)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항목은 이러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수납액의 대부분이므로, 수납실적은 자연히 전년도 여성가족부 및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1136-303)의 집행부진 확대 추세 등의 변수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았음. 즉,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세입예산액은 편성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수납액 평균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성하여,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의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54-546)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 27억 3,100만원 대비 110.5%인 30억 200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실제 수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162.5%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에는 괴리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1	1,949	-	1,949	3,863	3,168	162.5	82.0	695	-
2022	2,029	-	2,029	4,991	2,830	139.5	56.7	2,161	-
2023	2,373	-	2,373	5,031	3,494	147.2	69.4	1,536	-

연도	예산액(A)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4	2,717	-	2,717	3,820	3,002	110.5	78.6	818	-
2025	3,164								

자료: 법무부

이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1136-303) 중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급증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차년도 세입예산액 결정 시점에서는 그 시점 3년전부터 1년전까지의 수납액 평균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하여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23년 예산액을 결정하는 2022년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수납액 평균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게 되므로, 최근 3년간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급증은 예산액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1136-30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C/A)	집행률(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32,366	-	32,366	31,956 [31,096]	98.7	98.7	-	410
2022	36,172	-	36,172	35,511 [33,499]	98.2	98.2	-	661
2023	37,537	-	37,537	36,732 [34,708]	97.9	97.9	-	805
2024	37,354	-	37,354	37,313 [35,267]	99.9	99.9	-	41

자료: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1136-303) 연도별 불용 발생 사유>

・`21년 불용 410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2백만원),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378백만원) ・`22년 불용 66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백만원),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15백만원),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616백만원) ・`23년 불용 805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3백만원),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772백만원) ・`24년 불용 4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백만원),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11백만원)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예산액과 수납액간 격차가 반복될 경우 국가 전체의 세입 규모를 왜곡하게 됨은 물론 국가재정 운용의 면밀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목표 세입예산액을 관행적·보수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수납액의 적극 납부 독려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모색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수납실적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장기간 미납연체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조속한 반납 필요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38억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0억200만원이므로 양자의 차액인 8억1,800만원이 미수납액이며, 이러한 미수납액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1억6,100만원, 15억3,600만원으로, 2021년의 6

억9,500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반납기한이 2024년도 이전임에도 2025년 6월말까지 미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억9천만원으로, 반납기한이 2022년으로 거의 3년 정도 기한 도과된 미수납액이 8,500만원이나 되는 등 장기 연체 미수납액의 반납이 미흡한 실정임.

<반납기한이 2024년도 이전인 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반납기한	미수납액	건 명
2021	2	2020년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22	36	2021년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	2021년 성폭력피해자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23	197	2022년 성폭력피해자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24	406	2023년 성폭력피해자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합 계	69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주: ’25. 6월 말 기준

보조금 집행잔액은 차년도 상반기에 정산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추경 예산 편성안대로 반납함이 원칙이나, 지자체별 재정여건 상이로 추경 편성시기가 다르고, 추경 편성절차에도 어려움이 있어 반납 지연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음. 특히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중앙관서(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의 순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반환절차에서 지자체의 추경 편성 지연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도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부인하긴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반납기한을 2년 이상 도과하는 등 지나치게 반납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회계질서 약화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보조금 사업 예산운용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수납금의 반환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개선, 장기간 연체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적기 회수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 출 ◈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결산 개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은 범죄피해자 상대 상담과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210억 9,9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1억 4,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00억 5,900만원이며, 이 중 209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099	-	20,959	20,518 [19,914]	-	441	21,44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4,516	-	4,508	4,508 [4,477]	-	- [31]	5,267
· 스마일센터 운영	8,335	-	8,335	8,334 [7,913]	-	1 [422]	8,571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 · 운영	3,100	-	2,979	2,552	-	427	1,343
· 범죄피해자 치료비 · 생계비	3,300	-	3,260	3,255	-	5	4,413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	708	708 [555]	-	- [153]	708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	429	429	–	–	409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	412	412 [412]	–	–	412
· 교육 · 홍보 등	320	–	330	324	–	6	320

▢ 원스톱솔루션센터 관련 자율기구의 존속기간 만료 및 비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우려 해소 필요

법무부 인권국은 국정과제에 기반[229]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현액) 29억7,900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 기관의 인력이 입주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립하고,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5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2,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230]

229) [국정과제 64-1]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230) 서울지역(대방역 인근 서울시 여성플라자 3층 소재)에 약 790평 규모의 원스톱솔루션 센터(이하 '서울 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전문상담원·보안인력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고, 24, 7, 서울센 터를 개소하였음.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각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3,100	-	-	-	2,979	2,552	-	427	1,343
-상용임금(110-03)	102	-	-	-	102	101	-	1	211
-일반수용비(210-01)	286	-	-	-	300	300	-	-	134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	-	-	50	48	-	2	228
-특근매식비(210-05)	3	-	-	-	3	3	-	-	2
-임차료(210-07)	448	-	-	-	298	254	-	44	291
-유류비(210-08)	5	-	-	-	5	-	-	5	5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7	-	-	-	157	53	-	104	174
-복리후생비(210-12)	2	-	-	-	2	2	-	-	3
-일반용역비(210-14)	19	-	-	-	33	33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41
-국내여비(220-01)	12	-	-	-	12	10	-	2	15
-사업추진비(240-01)	32	-	-	-	32	32	-	-	31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100
-고용부담금(320-09)	20	-	-	-	20	10	-	10	41
-설계비(420-02)	84	-	-	-	84	70	-	14	-
-공사비(420-03)	1,520	-	-	-	1,520	1,284	-	236	-
-감리비(420-04)	61	-	-	-	61	56	-	5	-
-자산취득비(430-01)	300	-	-	-	300	296	-	4	66

현재 서울센터에는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14개 참여기관(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포함하여 소속 인력 51명이 상주하고, 그 중 법무부 소속 인원은 12명(공무원 6명, 공무직 6명)임.

<원스톱솔루션 센터 참여기관 및 지원내용>

참여기관	지원내용
검찰	· 범죄피해구조금 안내· 접수 ·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지원(5주 이상) 안내·접수 · 이전비 지원, 주거지원 등 안내·접수
경찰	· 위치확인장치 지급,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임시숙소 제공 · 민간경호 지원 등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원 연계 · 직업상담, 직업교육 지원 등
서울특별시 복지지원팀	· 기초생활수급 관련 안내·연계 · 긴급복지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복지 안내·연계 등
서울특별시 일자리센터	· 서울시 보유 일자리 상담, 구인구직 등록(직업상담사)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안심센터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수사·재판 모니터링,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동행 등 지원 ·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지원 등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의료지원 · 보호시설 연계, 이주비 지원 · 민간경호 지원 등
법률홈닥터	·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 · 법률서류 작성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진술조력인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보조(19세 미만,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 범죄피해자의 민·가사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례관리 실시 ·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한 전국 연계 · 긴급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5주 이하) · 수사, 재판기관 동행·모니터링 등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스마일센터 임시숙소 연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하나미소금융재단)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등 제공

자료: 법무부

<서울센터 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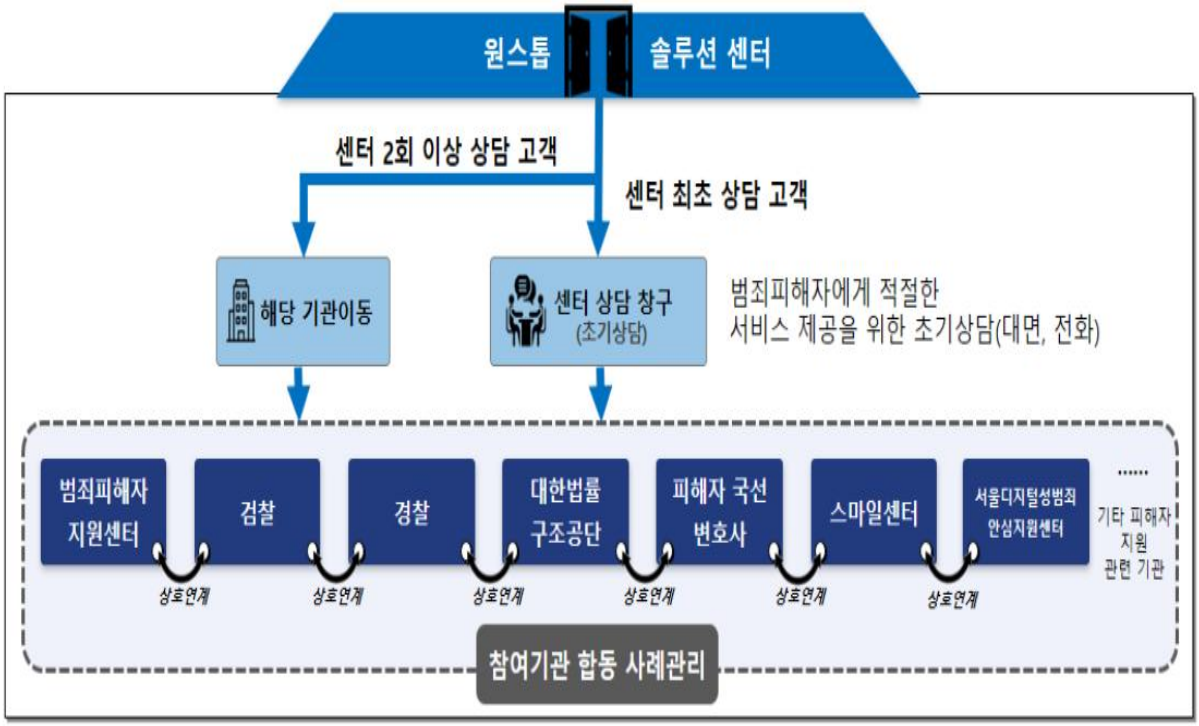
참여기관		인원수	비고
법무부		12	공무원(6), 공무직(6)
검찰		2	공무원(2)
경찰		2	공무원(2)
고용노동부		1	공무원(1)
서울특별시 복지지원팀		2	공무원(2)
서울특별시 일자리센터		1	공무직(1)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안심센터		13	-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6	-
법률홈닥터		2	-
진술조력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1	공익법무관(1)
피해자 국선변호사		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
스마일센터		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1	-
	서민금융진흥원	1	-
	하나미소금융재단	1	-
총 인원		51	-

자료: 법무부

서울센터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상담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기관 담

당자들에게 연계하면, 법률, 심리치료, 고용, 금융 상담은 서울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고,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안전조치, 불법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는 원소속 기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에 연계 및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임.

<서울센터의 운영 방식>



자료: 법무부

한편, 법무부 인권국은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인력 부족과, 운영·관리 등의 현장 업무와 중장기계획 수립·추가 개소 추진 등의 기획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운영 가능한 부서내 자율기구[231]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이하 '자율

231)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기구')'을 추가 신설하여 7인의 임시정원을 두고,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간 원스톱솔루션 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하였음.

<자율기구 인원 현황>

직급	정원(명)	비고
4급	1	팀장
5급	1	
6급	3	1명 원스톱솔루션 센터 지원근무
7급	2	
합계	7	현원 6명

자료: 법무부

원스톱솔루션 센터 관련 업무의 경우 자율기구의 도움을 받아 중기계획 수립 및 추가 개소 준비 등은 자율기구가, 원스톱솔루션 센터 소속 인원은 일선 센터에서 현장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음.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자율기구 소속 인원 중 한 명을 지원 근무 형태로 원스톱솔루션 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는 자율기구의 기획 업무에는 유휴 인력이, 센터의 운영 업무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부족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 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자율기구의 존속기간 만료로 해당 업무는 법무부 인권국 내의 인권구조과에서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업무 연속성이 저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후 6개월 이내로 자동 폐지되나 불가피하게 단기간 추가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함. 1회 연장한 후에는 국가적 재난 등의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6개월 범위내)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함.

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인권구조과의 기존 업무와 인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될 것인바 업무부담 가중으로 추가 개소 계획의 적기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전국 추가 개소를 추진할 경우 예산 및 인력 수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원스톱솔루션 센터 사업 운영의 차별성, 실적, 중기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유관기관 간 연계 미흡 개선 필요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됨. 이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측면으로 제시될 수 있음.

첫째,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025년 7월 현재 이미 전국에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 “스마일센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39개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설 〉

구 분	기 능	개 소	2024년도 인건비 · 운영비 지원 예산(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 입소시설 · 유관기관 연계 및 통합지원 네트워크 지원체계	61개소	43억 6,600만원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제공 – 지역 내 교육,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 지원 연계, 1:1 사례관리 제공	16개소	83억 3,500만원
해바라기 센터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 · 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사회적 지원 연계, 1:1 사례관리 제공	39개소	194억 6,500만원

자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법무부 스마일센터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우리 위원회로부터 '여러 기관이 물리적으로 한 곳에 입주해 있다는 차별점을 앞세워 서울센터 개소 직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권역별로 물리적인 통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받아왔음. 실제로 기존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설에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연계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스톱솔루션 센터가 기존 시설과 서비스의 실질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232]

232) 오히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각각 5개, 2개, 5개가 운영되고 있는 점(2025. 7. 6. 기준),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경우 향후 추가 개소가 추진되더라도 권역별로 1개소가 운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타 센터에 비하여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둘째, 양적 측면에서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전국의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하여만 직접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접수 및 초기상담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고, 2024년 7월22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총 접수 건수(인원)는 3,268건(명)임.

<원스톱솔루션 센터 개소 이후 월별 접수 건수>

(단위: 건)

구 분	방문 접수	전화 · 이메일 등 접수	합 계
24. 7.	19	48	67
24. 8.	61	130	191
24. 9.	86	179	265
24. 10.	100	236	336
24. 11.	105	228	333
24. 12.	105	219	324
25. 1.	85	172	257
25. 2.	109	248	357
25. 3.	76	275	351
25. 4.	85	328	413
25. 5.	73	301	374
합계	904	2,364	3,268

자료: 법무부

그런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해

바라기센터[233]의 2024년도 전국 이용자 수가 23,021명[234]으로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약 10개월간의 접수건수(명) 대비 7배를 상회하는 점, 모든 종류의 범죄피해 대상으로 기존 각 부처에 산재한 범죄피해 지원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사업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접수건수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임.[235]

셋째, 성과관리가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율기구는 운영성과보고서에 주요 업무로 '원스톱솔루션 센터 추가 개소 관련 예산 및 직제 수립' 및 '원스톱솔루션 센터 성과관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음. 그러나 자율기구가 해체된 25. 8. 현재,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접수건수를 제외하면 범죄유형별 센터 이용자 수, 지원 종류별 서비스 지원 건수, 피해자특성(연령별, 성별) 및 지원현황,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센터 운영의 성과와 관계된 통계를 집계·분석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임.[236] 이는 자율기구가 존속기간 동안 주요업무인 센터 성과관리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추가 개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

233)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

234) 「2024년 해바라기센터 연감」 참조

235) 이러한 실적 부진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해바라기센터가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236) 참고로,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범죄유형별 센터 이용자 수, 지원 종류별 서비스 지원 건수, 피해자특성(연령별, 성별) 및 지원현황,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매년 집계하고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통하여 대국민 공개하고 있음.

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의 미흡한 성과관리는 시정될 필요가 있음.

넷째, 유관기관 간 연계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원스톱솔루션 센터에는 현재 해바라기센터 소속 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하여 사례 회의 참석 및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 미흡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237] 등을 고려할 때, 해바라기센터 등 타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One-stop) 제공하겠다는 제도의 설립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원스톱솔루션 센터 사업의 실적,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중기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유관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해당 예산안 편성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238] 향후 서울센터의 시범운영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향후 1~2년간 현재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시정하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여 범죄피해자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37)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원스톱솔루션센터에 방문한 후 적정한 참여기관이 없어 다른 기관(부처 사업)으로 다시 연계되는, 비효율적인 중복 연계가 발생할 수 있음.

238) 「2024년도 법무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p. 261

▢ 원스톱솔루션 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개선 필요

자율기구와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2024년도 각목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도 자율기구 각목별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집행	
집행액	**집행 세부내역**
1,380	○ **일반수용비(210-01) : 185백만원** - 원스톱솔루션 센터 홍보비, 현판·안내사인, 소모품 비용 등 18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1백만원** - 원스톱솔루션 센터 개소식 1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백만원** -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1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5백만원** - 원스톱솔루션 센터 운영 매뉴얼 등 ○ **공사비(420-03) : 931백만원** - 원스톱솔루션 센터 공사비 931백만원 ○ **감리비(420-04) : 56백만원** - 원스톱솔루션 센터 감리비 5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56백만원** - 원스톱솔루션 센터 자산취득비 156백만원

자료: 법무부

자율기구는 2024년도 총 예산집행액 13억8천만원 중 서울센터 개소 관련 비용으로 11억5천4백만원(공사비 9억3,100만원, 감리비 5,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5,600만원, 서울센터 개소식을 위한 일반용역비 1,100만원의 합계)을 사용하였음. 이는 총 예산집행액의 약 84%에 해당하여 사

실상 자율기구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스톱솔루션 센터 유관기관 협력 및 중기계획 수립 등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예산 집행액 4천1백만원(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목적으로 사용한 국내여비 100만원 및 사업추진비 500만원, 원스톱솔루션 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한 일반연구비 3,500만원의 합계)의 약 28배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율기구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39]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원스톱솔루션 센터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스톱솔루션 센터 서비스제공의 투명성 부족 개선 필요

법무부는 원스톱솔루션 지원 매뉴얼 및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운영규정 등 센터운영에 관한 기준 및 매뉴얼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서비스제공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연례적 발간물인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가 매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는데,[240] 해당 발간물에는 센터 설치기준, 사건 조사 시 행동요령,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소속 팀별 업무분장 등 센터운영에 관한 기준 및 매뉴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239)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기구 외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소속 정원들이 주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자율기구는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성과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가 개소 추진 등에 대하여 한층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예산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240)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참조.

지원 매뉴얼 및 센터 운영규정 등의 공개는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서비스 대상자인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의 신뢰를 담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에 만족하지 못하여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스마일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연례적 인건비 집행부진 해소 필요

스마일 센터는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개 센터가 운영중임. 2024년에는 예산현액 83억3,500만원 중 83억3,400만원을 집행(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79억1,300만원으로, 4억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스마일센터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스마일센터 운영	8,335	-	8,335	8,334 [7,913]	-	1 [422]	8,571
·민간경상보조(320-01)	8,200	-	8,200	8,199 [7,780]	-	1 [420]	8,436
·민간자본보조(320-07)	135	-	135	135 [133]	-	- [2]	135

이러한 실집행액 기준으로 발생하는 불용 원인은 민간경상보조(320-01)의 집행부진임.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임. 스마일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95% 이하로 매년 4억 이상이 지속적으로 불용되었음.

<스마일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320-01)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실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8,279	-	8,279	8,279 [7,577]	100	91.5	-	- [702]
2023	8,128	-	8,128	8,028 [7,716]	98.8	95	-	100 [412]
2024	8,335	-	8,335	8,334 [7,913]	100	95	-	1 [422]

자료: 법무부

한편, 최근 3년간 지역별 스마일센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매년 저조한 지역 센터들(제주, 목포, 창원)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 센터들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률은 센터의 실집행률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일례로 2024년도 제주 스마일센터의 보조비목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률이 타 비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서 실집행률 부진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스마일센터(목포, 제주, 창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실집행률>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센터명	목포	89.5	88.5	89.3
	제주	78.1	93.3	89.2
	창원	85.9	96.9	89.2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 재구성

<스마일센터(목포, 제주, 창원) 최근 3개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센터명	인건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2	목포	288,000	250,181	37,819	86.9%
	제주	265,000	185,080	79,920	69.8%
	창원	317,000	261,506	55,494	82.5%
2023	목포	270,000	261,418	8,582	96.8%
	제주	228,477	190,649	37,828	83.4%
	창원	290,000	240,059	49,941	82.8%
2024	목포	304,000	262,184	41,816	86.2%
	제주	230,028	195,255	34,773	84.9%
	창원	291,000	231,750	59,250	79.6%

자료: 법무부

<2024년도 제주스마일센터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백만원, %)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3,245,000	3,244,750	250	99%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업무추진비(240)	기관업무비(02)	420,000	419,840	160	99%
여비(220)	국내여비(01)	1,900,000	1,891,900	8,100	99%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30,624,000	30,623,780	220	99%
운영비(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12,200,000	12,199,974	26	99%
운영비(210)	일 · 숙직비(06)	4,270,000	4,265,000	5,000	99%
운영비(210)	차량비 등(10)	300,000	300,000	0	100%
운영비(210)	복리후생비(12)	16,500,000	15,901,780	598,220	96%
운영비(210)	관리용역비(15)	7,920,000	7,920,000	0	100%
운영비(210)	기타운영비(16)	9,060,000	9,042,675	17,325	99%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5,000	0	5,000	0%
인건비(110)	**보수(01)**	214,028,000	186,504,676	27,523,324	**87%**
인건비(110)	**기타직보수(02)**	16,000,000	8,750,000	7,250,000	**54%**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01)	4,800,000	4,800,000	0	100%
합계		328,028,000	292,619,735	35,408,265	

자료: 법무부

이러한 연례적 인건비 집행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스마일센터에서 강력범죄 피해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단기간 내 퇴사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임. 2025년 6월 말 기준 현재에도 전국 스마일센터 근로자(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포함)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 비율은 약 60%에 이르고 있음.

〈스마일센터 센터별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 현황〉

센터	총원(명)	단기 재직(명, %)		센터	총원(명)	단기 재직(명, %)	
서울동부	10	3	(30%)	전주	8	4	(50%)
부산	10	4	(40%)	수원	10	7	(70%)
인천	9	5	(56%)	서울서부	12	8	(67%)
광주	9	6	(67%)	의정부	8	7	(88%)
대구	10	4	(40%)	청주	8	5	(63%)
대전	9	6	(67%)	울산	9	6	(67%)
춘천	7	5	(71%)	창원	6	5	(83%)
제주	6	4	(67%)	총계	131	79	60.3%

* 주: 25. 6월말 기준(목포는 21년에 개소하여 모든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생략)
자료: 법무부

또한, 유사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복지부) 종사자의 경우 호봉제로 매년 기본급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분도 추가반영 되는데, 스마일센터는 인건비 처우 개선분만 반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사기관 대비 모든 직급 및 연차에서 보수수준이 낮고, 근속 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므로 스마일센터에 장기간 근속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스마일센터 직원 및 동종업계 급여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스마일센터 (A)	해바라기센터 (B)	정신건강복지센터 (C)	차액 (A-B)	차액 (A-C)
부센터장	초임	40,440	42,495	36,906	△2,055	3,534
	5년	43,947	49,726	46,116	△5,779	△2,169

	10년	48,407	60,569	61,547	△12,162	△13,140
임상심리 전문가	초임	39,734	39,744	34,062	△11	5,672
	5년	43,192	47,248	42,333	△4,056	860
	10년	47,583	55,381	56,747	△7,799	△9,165
사회 복지사	초임	31,786	34,202	31,272	△2,415	515
	5년	34,701	40,708	38,455	△6,007	△3,753
	10년	38,305	47,945	51,308	△9,640	△13,003

* 주: 25. 6월말 기준(명절비 및 정근수당 등 포함)
자료: 법무부

스마일센터 직원의 처우가 동종 업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조속히 모색하지 않는다면 연례적 인건비 집행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의 질적 수준 저하도 우려됨. 따라서 법무부는 스마일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 및 연례적 인건비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1.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4	20	65	2	87

2.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 미이행	
71	17	-	87

3.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가. 조치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 경쟁률이 높지 않고, 채용 후 근무 포기 인원이 발생함. ※ 경쟁률 : (1차) 1.82대 1, (2차) 2.61대 1, (3차) 2.03대 1 ※ 2023년 채용한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 포기 ○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경쟁률 차이가 있었는데, 기관별 업무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가 청년들 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1차 공고 기준 기관별 경쟁률 : (검찰) 2.95대 1, (범정국) 1.33대 1, (교정) 0.94대 1, (출입국) 2.82대 1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고, 소속기관별 인턴 운영규모를 결정할 때 기관별 업무특성, 출퇴근 편의성, 청년 선호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제도개선	○ 청년인턴 운영 적정규모 산정 - 청년인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규모가 바람직하고 본부 중심의 다른 중앙행정부처에 비해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270개 정도로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0명 규모 적정함 ○ 청년 선호 반영을 위한 배정 기관 선호도 조사 실시 ※ 청년인턴의 근무기관 선호 검찰 26.6% / 보호 14.9% / 교정 29.8% / 출입국 14.9% / 상관없음 13.8% ○ '23년 청년인턴 운영 결과를 참고한 기관별 '24년 청년인턴 배정 - 출퇴근 편의성이 떨어지고 대민업무 수요가 적은 교정기관 배정 비율을 줄이고 출퇴근 편의성이 높고 정책업무 및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
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td><td></td><td>대민업무 수요가 높은 본부 및 출입국 기관 배정 비율을 높임

<table><tr><th>배정
비율</th><th>본부</th><th>검찰</th><th>보호</th><th>교정</th><th>출입국</th><th>연수원</th></tr><tr><td>'23년</td><td>2%</td><td>31.5%</td><td>10.5%</td><td>48%</td><td>7.5%</td><td>0.5%</td></tr><tr><td>'24년</td><td>5%</td><td>30.7%</td><td>10.2%</td><td>30.7%</td><td>23.1%</td><td>0.3%</td></tr></table>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r>
<tr><td>[지적사항]
○ 2023년 법무부 소속기관별로 부여한 청년 인턴 직무의 상당수가 행정지원 및 자료정리, 행정지원·민원서비스,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 위주로,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 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청년인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수사, 출입국심사, 교정 등 업무수행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높은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근무하는 청년인턴에게 적극적으로 직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청년인턴이 전공과 관심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한 청년인턴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조사·반영한 직무 설계 및 인턴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 법무부는 공안업무 중심인 기관 업무 특성상 법무부가 청년인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td><td>제도
개선</td><td>○ 실무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설계, 인턴프로그램 실시 및 관련 예산 확보
- 기관별 특성에 따른 직무 배정, 청년인턴 워크숍, 프로젝트형 업무, 현장방문·체험활동,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청년인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수용비 예산 확보
<table><tr><th>구분</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r><tr><td>일반
수용비</td><td>-</td><td>27백만원</td><td>195백만원</td></tr></table>
○ 청년인턴 운영 적합성 및 적정규모 검토 완료
- 법무부는 공안업무 특성에 따라 인턴 직무 배정에 다소 제한이 있더라도 프로젝트 및 현장체험을 통해 인턴에게 충분한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청년인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며, 이는 법무부 청년인턴 근무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됨
※ 법무부 청년인턴 근무 만족도
<table><tr><th>매우만족</th><th>대체로 만족</th><th>보통임</th><th>다소 불만족</th><th>매우 불만족</th></tr><tr><td>60.6%</td><td>24.5%</td><td>11.7%</td><td>2.1%</td><td>1.1%</td></tr></table>- 청년인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규모가 바람직하고 본부 중심의 다른 중앙행정부처에 비해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270개 정도로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0명 규모 적정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r>
</table>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동 사업에서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 및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2020년부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ㅇ 2023년 개최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4차례 회의 중 법무부 차관 및 주요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 참석 실적이 전무하였고, 제4차 회의에 내부위원 한 명만 참석하는 등 내부위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음 ㅇ 회의 안건으로 동 사업에서 수행한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은 과제 선정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외부심사(정책연구용역 관련 평가위원회)가 진행된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되었음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계약액 5,900만원, 계약기간 2023.4. ~11.,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내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연구용역 평가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것	제도개선	ㅇ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내부 참여 활성화 추진 - 2024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시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이 참석하여 회의 진행 * '24년 위원회 운영 실적 : 3회 회의 개최 ㅇ 정책연구용역 평가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회의안건 상정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논의,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신규정책 발굴 등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안건 상정·논의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2023년 동 사업에서 52억 1,000만원 규모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리스)할 계획을 세우고 6개월분 임차료로 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도입은 절반 수준인 24억 8,600만원 규모로, 임차료는 2억 8,369만원을 집행함(50.3%) ㅇ 전산장비 도입규모가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존 리스 장비의 갱신 임차료가 상승하였고, 그 부족분(2억 6,938만원)을 신규 도입 임차료 예산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임 - 이는 전산장비 신규 도입 및 갱신 계약이 매번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차료 증액	주의	ㅇ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겨 추진 완료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5년 5월 16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분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에 기인함 ※ 2023년 초과 지출이 발생한 기존 리스계약 3건은 리스료 갱신 계약이 2022년 말에 이루어져, 2023년 예산 편성시 리스료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었음 ※ 2022년 도입한 전산장비의 경우 2022년 리스계약이 2023년 예산안 편성·제출 완료 후인 2022년 10월말에 이루어져, 2023년도 예산에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체결되는 리스계약 및 갱신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시 리스료의 실제 소요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옥외·신문·라디오 광고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 매체는 뉴미디어 매체와 비교했을 때 광고 노출 장소(옥외) 및 시간·기한이 제한되고, 광고 집행의 효과 및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2023년 옥외·신문·라디오 광고는 전부 마약 근절 정책에 집행하였는데, 최근 마약 범죄 예방 및 선도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이 20~30대 청년 및 10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광고매체 선택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광고 매체별 광고효과의 장단점을 토대로 매체별 광고집행 비중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책 홍보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광고효과 제고를 위하여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2024년에는 SNS 광고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광고의 경우도 홍보대상에 따라 적합한 매체 선정을 하였음. ○ 2025년도 광고집행 비중 및 적절한 매체선정으로 광고 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2023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단위사업(7038) 내 2개 세부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 목적으로 각각 6,000만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각각 7,356만원, 1,462만원 등 총 8,818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26%(1,818만원) 초과 집행함 ㅇ 정부 예산집행지침은 “기념품 등 홍보물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규정한바, 법무부가 제작·구입한 홍보물의 종류 및 수량 ※ 초과 집행 규모 등을 감안하면 홍보물품 구매가 과도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탁상달력 12,500개, 미니선풍기 300개, 머그컵 100개, 종이쇼핑백 150개, 만년필 70개, 수성펜 90개, 수건세트 150개, 우산 250개, 텀블러 180개, 볼펜 3,000개, 수성펜 100개, 휴대용 담요 256개 등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확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 집행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ㅇ 2024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총 8,400만원(각 5,400만원, 3,000만원)으로 홍보 물품을 구매하는 대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대국민 홍보 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당초 계획된 예산을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 완료함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2023년 9월 ~ 10월 기간 중 전산실 확장 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암, 키보드 등 개인 전산소모품 구입에 819만원을 집행하였음 ㅇ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소모품 구입은 최대한 절감 집행해야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시 기존에 사용하던 소모품들을 폐기할 필요는 없음에도, 사무실 인원 수에 맞추어 일괄 신규 구매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음 ㅇ 특히, 마우스와 키보드는 일반 사무용 단가 대비 5배 가량 비싼 특수 기능이 탑재된	제도개선	ㅇ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산 소모품 등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물품의 수량과 내용연수 등을 철저히 관리함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모델(버티컬마우스, 적축키보드)을 일괄 구매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직원 개개인의 PC 부속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지적사항] ○ 동 사업 중‘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87억 5,100만원)은 2023년 예산현액 70억 6,500만원 중 3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55.6%), 29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에도 사업 지연으로 대규모 예산이 이월(42억원 중 28.7억원 이월)된바 있음에도, 법무부는 별도의 사업기간 조정이나 예산 축소 편성※ 없이 2023년 예산에 잔여 공사비를 전액 편성한 결과, 2023년에도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반복됨 ※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사비(420-03목)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리모델링 등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제도 개선	○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기간 산정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동 사업 일반수용비는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기록관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기간 조정(5개월→3.5개월)으로 8,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법무부는 감액분을 전부'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에 반영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당초 편성한 8,000만원을 유지하였음 ㅇ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로 9,740만원을 지출하여, 당초 예산(8,000만원) 대비 21.8% 초과 집행함 ㅇ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와 달리 목적이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법무부가 임의로 해당 항목을 확대 편성·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취지에 맞게 항목별 예산을 배정·집행할 것	주의	ㅇ 법무부 기록관이 신설기관인 만큼 준공 시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기타 운영경비'를 당초 예산으로 유지하였으며, 기록관 준공 허가를 위해 입간판 등 사인물 구입이 불가피하여 초과 집행이 있었음. ㅇ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도록 유의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에서 준공 홍보물 구입 목적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법무부 기록관 준공시점이 2024년 1월이었다는 점에서 연말에 다량의 홍보물품을 일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당해연도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홍보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집행 행태를 지양할 것	주의	ㅇ 법무부 기록관이 중앙부처 중 최초로 만들어진 기록관인 만큼 타기관의 방문 요청이 많아 홍보물품 수요가 컸고, 2024년 기록관 운영비에는 홍보물품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으로 구입하였음 ㅇ 향후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용역비(210-14)로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 개발 및 모의테스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 - 법무부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700만원, 5,700만원을 집행하여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실행과제를 개발해왔음 ㅇ 법무부는 정부 규모 축소 기조, 국정과제 관련 예산·인력 우선 배정 등의 사유로 자체 역량평가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 내 자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가모델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 제도의 추진 여부와 후속과제 개발 및 평가시행 계획 등을 신속히 확정할 것	제도개선	ㅇ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계별) - 역량평가 제도는 5급 이상 관리자들의 승진과 직결된 중요한 인사제도임을 고려하여, - 평가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운영체계 구축을 포함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 (1단계) 연간 역량평가 수요를 반영하여 전담인력 규모 확정 및 확보 추진('25년) · (2단계) 전담팀 구성 후, 필요 운영예산 및 평가·교육공간 확보, 역량평가 교육과정 위탁여부 협의, 후속 평가과제 개발·축적 병행 추진('26~'27년) · (3단계) 시범 운영 후 본격 시행('27년)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기재가 충실하지 않아 재무제표만으로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기재부예규)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과 같이 본심의 판정이 있었다면 취소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당해 분쟁의 개요와 경과,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제도개선	ㅇ 2024년 결산서 재무제표 주석에 사건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완료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ISDS 제소 후 분쟁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투자협정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기존의 교육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현재까지의 ISDS 판정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ISDS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제도개선	ㅇ ISDS 예방 교육 개최 - 정부 산하 공기업 대상「ISDS 예방 세미나」개최 - 국제투자분쟁 예방 사건 관련 1) 유관기관 실무회의 및 2) 제도설명·대응전략 관련 교육 실시(7. 8.) - KOTRA 예방교육(11. 13.)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예방교육(11. 21.) - 금융위원회 예방교육(11. 28.) - 한국전력공사 예방교육(12. 11.) ㅇ ISDS 예방 자료 발간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관련 연구용역(ISDS 예방 체크리스트) 수행 및 연구용역 결과물 발간(7. 31.) -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11. 12.)하여 기획재정부, KOTRA,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배포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1일
[지적사항] ㅇ 공익신탁의 실적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인터넷이나 라디오 광고로만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보 효과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3년 1,225만원을 편성(회의 예정 일수 5회)하였으나, 실제로는 연말에 1회만 개최되어 120만원 집행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료 집행액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ㅇ 공익신탁 자문 활성화 -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익신탁 제도 및 홍보방법 등 개선 방안을 논의('24. 8. 7.) 하고, 공익신탁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공익신탁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서면 의결 실시('24. 12. 24.) - 공익신탁 관련 세제 개선 및 공익법인 활용 등 제도 개선, 미국의 공익신탁 제도 및 우리나라 공익신탁법 개정 사항에 대한 자문 등 5회 실시 ㅇ 공익신탁 홍보 방식 다양화 - 기존의 라디오 광고 비중을 1/4 이하로 줄이고, 기업 및 자산가들이 주로 구독하는 경제지 지면 광고와 기부에 관심이 큰 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수탁기관과 굿네이버스 등 공익법인 행사에 소책자 배포하는 등 홍보 방식 다양화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2019년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사건접수 2019년 70건, 2021년 50건, 2023년 54건)에 있으므로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제도개선	ㅇ 우리나라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미진한 부분 보완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3. 7. ~ 9.) - 국제중재 우수인재 확보 등 대한상사중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활용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반영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완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27일
[지적사항] ㅇ 심사자료 검토수당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매달 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출근 수당,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수당을 현행보다 감액하고,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건수를 1일 1회에 한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	제도개선	ㅇ 법조윤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대한 심사자료 검토수당 등 지급 관련 '24. 11. 8. 개최한 제131차 위원전원회의 의결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심사자료 검토수당 : 건당 350,000원(위원장)·250,000원(사무총장) → 건당 150,000원(1일 1회 한정) - 출근수당 : 회당 450,000원(위원장)·350,000원(사무총장) → 회당 150,000원(위원장)·100,000원(사무총장) - 이메일 결재 수당 : 회당 300,000원(위원장)·250,000원(사무총장) → 회당 150,000원(1일 1회 한정)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공단이 공시한 퇴직급여 적립률은 직원에게 대부해 준 장단기대여금(생활안정자금 대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단의 가용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 적립률 보다 5.9%p~10%p 가량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재무건전성을 투명하게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실제 공단 보유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ㅇ '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퇴직기금 대부액을 포함한 퇴직급여 적립률 외에 장·단기 대부액을 제외한 퇴직급여 적립률 병기 완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28일
[지적사항] ㅇ 법무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 목적의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고 분할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를 원칙적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주의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도록 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27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집행된 국내여비 6,200만원 중 약 3,200만원은 출장자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직접 계좌이체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됨 -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에서는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가 결제를 한 뒤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정산·지급하고, 그 외 여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향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주의	ㅇ 법무부와 숙식제공업체나 기관이 강의실, 숙소, 구내식당 등을 일괄 임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2박3일 합숙교육으로, 2025년 인권교육 예산 중 교육생 식비를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27일
[지적사항] ㅇ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증가로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급증하면서 초과 수납이 이루어져 2023년도에는 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세입 계획액을 충분히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체계적 오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것	제도 개선	ㅇ ’25년도 기금에는 여유자금 규모, 금리 인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75.1% 증액된 730백만원으로 계획액을 편성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국회는 그간 직접지원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고, 이후 법무부가 기금 내 사업별 지원성격을 재분류하여 직접지원 비중이 확대된 것처럼 보임. 그러나, 시정요구 당시 분류 기준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범죄피해자가 선호하는 생계지원의 계획액 및 집행액이 축소되었으며, 의료지원 규모도 축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특히 생계·의료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사업을 관리할 것	제도개선	ㅇ ‘25년도 기금에는 생계비(50→70만원) 지원액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최대 6→12개월)하여, 생계비 등 예산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ㅇ 또한, 경찰청 민간경호사업(2,450백만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퇴소자립수당 신설(월 50만원, 124백만원) 및 퇴소자립 지원금 상향(5→10백만원, 103백만원 증) 등 직접지원 사업비를 증액(27억원) 편성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타 내역사업 예산을 혼용 집행하였으며,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미흡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예산혼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의 일반용역비로 단일 편성하며,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2025년도 기금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단일 편성하였고, 교육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인원 및 단가 등을 현실화하여, 사업을 축소 편성하였음 ㅇ 또한, 2025년도에는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계약 내용대로 교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14일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
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지적사항]
ㅇ 최근 3년 간 강력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여 연평균 12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구상권 행사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긴급구조금을 포함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실적을 제고하고, 구상권 행사 인력 확충 및 가해자 재산 적시조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 실적 개선을 추진할 것</td><td>제도
개선</td><td>ㅇ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 센터('24. 7. 22. 개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원스톱 전담인력('24. 7. 전국 17개 범피센터 배치) 및 범죄피해자지원 포털시스템('24. 9. 구축)을 통해, 구조금 제도의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있음

ㅇ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 3. 2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같은 날 시행되었음. 이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 행사 실적을 개선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1일</td></tr>
<tr><td>[지적사항]
ㅇ 2023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였음에도 지급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실질적인 조치실적(신고·가해자검거·현장조치)은 감소하여, 투입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검찰청은 보유기기 172대 중 7대만 지급하여 활용율이 4.1%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구형 모델의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방안 마련, 위치확인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검찰청 보유분에 대한 수량 조절 등을 통하여 위치확인장치의 관리 및 활용 실적을 개선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td><td>제도
개선</td><td>ㅇ '23년 기준 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는 총 10,000대로, 그 중 구형은 3,700대('19년 도입 2,300대, '21년 도입 1,400대), 신형은 6,300대('23년 도입)임

ㅇ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기기로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곤란하며, 특히, '19년 도입한 구형 2,300대는 노후화가 심하여 판매나 부품활용도 불가한 관계로 '24. 8월 전량 폐기하였음

ㅇ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고장·분실한 스마트워치는 신속히 수리·교체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에서 대여하여 지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음

< 연도별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 지급 실적 >
<table><tr><td>연도</td><td>2021</td><td>2022</td><td>2023</td><td>2024</td></tr><tr><td>지급
건수</td><td>10,989</td><td>14,208</td><td>16,690</td><td>17,510</td></tr></table>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30일</td></tr>
</table>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해당 일반수용비를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념품비, 참석자 수당, 자료집 등) 및'비상근 진술조력인 대상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장소 임차료, 참석자 수당 등)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제도개선	ㅇ 법무부는 '23. 11. 22.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제도 시행 10주년이 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꼭 필요한 학술대회였음 ㅇ 또한, 학술대회를 과천청사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임차료를 절감하였고,「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기업 제품을 기념품으로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ㅇ 다만, 예산 편성 당시인 '22년에 학술대회 개최를 사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점은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성과지표가 성폭력 등의 피해자 발생 건수를 모수로 하고 있어 범죄 발생량이 증가하여 피해자가 증가하는 경우 성과목표 달성이 쉬워지고, 감소하는 경우 어려워져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 성폭력사범 접수건수가 감소함에 따라(2022년 47,143건→2023년 43,796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가 감소하여(2022년 25,340건→2023년 22,336건), 2023년도 성과목표(42,941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로 개선할 것	제도개선	ㅇ 「2025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성과지표를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 접수 건수 대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비율(%)"로 변경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2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로 인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고, 연도 중 정책시행으로 당초 세입 대비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였음 - 조치 실시 전, 2023년 1~3월 월 평균 4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 조치 실시 후 2023년 4~12월 동안 월 평균 약 10억 원 정도의 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감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	제도개선	ㅇ '19년 대비 '24년 입국자 수 등의 회복률 등 통계를 검토한 결과, K-ETA 한시 면제된 국가의 입국자 수 회복률이 비면제 국가 입국자 수 회복률보다 저조한 국가도 있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와 입국자 수 상관관계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ㅇ 한국관광공사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발주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K-ETA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K-ETA 시행으로 인해 '한국 입국 시 대면 심사 간소화로 신속 입국' 및 '한국 입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확실성 감소' 등 K-ETA 시행의 긍정적 측면이 높이 평가되기도 한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관광 활성화 효과는 정략적, 정성적 측면이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 ㅇ 결론적으로, K-ETA 한시 면제와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국가별 경제 상황, 환율, 관광 매력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그럼에도 K-ETA 면제가 적어도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과,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아 정치·경제 불안정성의 증가로 관광 산업 위축이 매우 우려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한시 면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 대해 '24년 말 종료예정이었던 한시면제 기간을 '25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음('24. 12. 26. 국가관광전략회의)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동 사업에서 수립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의 확정이 지연(2023. 12. 7.)됨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시행계획이 2024년 5월에서야 확정되는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기한이 준수되지 못하고 늦게 수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국가현안인 출입국·이민정책이 제때 수립·시행되도록 할 것	제도개선	ㅇ 2025년 시행계획 수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에 따른 '25년 시행계획을 종합·수립('24.12월)하였음 ※ '25년 시행 계획은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후 '25년 2월 내 확정 예정 ※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8년~'32년」은 '27년 수립 예정 ㅇ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2019년 7월부터 운영되는 제주 검찰연수원은 공무 이용 외 개인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징수하고 있어, 매달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2023년 개인 이용 총 1,680건, 5,336만원 수입 발생) ㅇ 제주 검찰연수원이 계속 운영되는 한 사용료 수입 발생은 확실히 예측됨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적정 세입예산을 계상할 것	제도개선	ㅇ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2025년 법무부 세입예산에 해당 과목을 편성하였음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51,000천원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
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지적사항]
ㅇ 검찰청 일선관서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벌금·과료와 함께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몰수금·추징금과 함께 “몰수금 및 추징금”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확인됨
<table>
<tr><th>구 분</th><th>과오수납 건수(건)</th><th>과오수납 관련 금액(천원)</th></tr>
<tr><td>추징금 수입 → 벌금 및 과료로 수납</td><td>53</td><td>375,274</td></tr>
<tr><td>벌금 수입 →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td><td>21</td><td>271,456</td></tr>
</table>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관서 세입징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세입징수.수납 과정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d>주의</td><td>ㅇ 일선 검찰청에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세입과목 오수납 사례 및 재발 방지 안내사항을 전파하였음

- ’24년 10월말 기준 오수납 내역에 대한 정정조치 완료

ㅇ 향후에도 일선 검찰청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세입과목 오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r>
<tr><td>[지적사항]
ㅇ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으나, 법무부가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ㅇ 정보공개소송 대법원 판결로 일부 공개된 특활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정해진 목적이 아닌 검찰총장의 ‘쌈짓돈’ 등으로 부당하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됨
ㅇ 검찰 특활비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정보활동 지장을 이유로 특활비 세부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ㅇ 법무부는 2022년 이후 대검 자체 사무감사 등을 통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활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법무부 차관으로 자체 점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됨</td><td>시정</td><td>ㅇ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및 증명자료 사본을 판결(대법원 2022두697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공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r>
</table>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있음		
[지적사항] ㅇ 감사원은 2020년 대검찰청이 파견 등의 형식으로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국회에서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검찰의 초과 인력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음 ㅇ 2023년 검찰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대검찰청의 인력 초과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가 미흡함 - 2023년말 기준 대검찰청 근무 인원은 검사 91명, 검사 외 공무원 695명으로 정원 대비 검사 14명, 검사 외 공무원 161명 등 총 175명이 초과운영되고 있으며, 초과운영 규모도 2022년 대비 169명→175명으로 확대됨. 특히, 검사의 초과운영 인력은 14명으로 2019년(18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에 맞추어 대검찰청의 정원 대비 초과 인력운영을 감축·해소하기 위한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파견 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있음	시정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관련 형사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대검찰청이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대검찰청 파견자는 175명(24.12.기준)이나, 그 중 59명은 반부패 수사, 포렌직 수사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목적 파견으로 실제 직무파견은 116명임 ㅇ 일선 청의 수사력 강화 및 수사인력 확충을 위해 대검찰청 내 직무 파견인력 감축 방안 수립 완료 - 정기인사 기준 3회, 1년 6개월 기간 내 점진적으로 감축 추진('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11명 감축, '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4명 감축, '26년 상반기 4명 감축)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17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는 2023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 등의 사유로 2억 264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고, 2024년 2월말에 공사를 완료함 ※ 총 계약액 2억 9,121만원 중 2023년 집행액 8,657만원 ㅇ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를 모두 반영한 총 공사기간이 5개월(2023년 10월 ~ 2024년 2월)이었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예산 이월의 근본적인 원인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초에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 개선	ㅇ 부산동부지청은 1988년에 개청하여 청사시설이 노후되어 각종 보수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가 뒤늦게 추진되었음 ㅇ 연초에 일선 검찰청 승강기 설치 등 계획을 수립하고 '25. 4.경 수요 발생한 청 파악 후 공사비 배정하였으며 해당 청에 상반기 내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통보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18일
[지적사항] ㅇ 2023년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예산은 2022년 완공된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활용을 감안, 전년대비 임차료(행사장 임차) 및 국외업무여비(숙박비 지원)에서 총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함. 그럼에도 2023년 연수사업 집행률은 43.3%로, 2022년(48.5%)보다 더욱 낮았음 - 특히,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1%로 저조하여, 초청대상 및 실제 초청 규모를 감안하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음 - 검찰은 2024년부터는 초청연수에 아태지역 회원국 외에 국제검사협회 관계자 방한도 예정되어 참석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참석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국외업무여비 기존 집행률(2022년 34.4%, 2023년 27.1%)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도 개선	ㅇ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24년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23년 90백만원 → '24년 80백만원 → '25년 전년동 ㅇ 최근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예산 집행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2024년 연수사업 집행률은 60.2%로 개선됨(기존 2022년 48.5%, 2023년 43.3%) - 특히,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은 2024년 41.7%로 기존 집행률 2022년 27.1%, 2023년 34.4%에서 집행실적 개선됨 ㅇ '24년 5월 IAP 사무국과 아태지역 초청연수에 관한 공식 MOU체결, '24년 12월 검사국제공조플랫폼(PICP) 공식 출범 등을 통한 국제공조 네크워크 강화 및 활성화, 나아가 IAP 아태지부 지역사무소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초청 규모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절감 편성할 것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각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개소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은 부진함 - 2023년 검찰 영상녹화 조사비율은 6.4%로 2022년(8.1%)보다 더 떨어졌으며, 영상녹화 조사 건수는 4,001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의 피신조서 진정성립 입증수단 활용 불가, ②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가 영상녹화 실적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임 ㅇ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과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 운영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시설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제도개선	ㅇ 영상녹화제도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구축 및 진술증거 취득의 객관성을 보장하여 공판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으로 인해 영상녹화조사 시스템의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영상녹화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등을 상시 최적화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ㅇ 이에, 우수검사 선정 및 격려, 우수 활용사례 발굴 등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선 검찰청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영상녹화조사실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영상녹화 장비의 고장 및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영상녹화장비 교체를 지양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장비 구매 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잉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검토할 방침임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2023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은 세 차례 유찰되어 10월에 계약이 체결된 결과, 당해연도 계약은 3개월분(10월 ~ 12월)만 체결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 (1월 ~ 9월)의 사업을 전년도 계약에 근거하여 전년도 계약 업체가 수행함. 이는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 최근 대검찰청의 해당 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5월에 첫 사업 공고를 하는 등 당해연도 신규 계약 체결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전년도 업체에게 당해연도 과업 수행을 맡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시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계약업체가 당해연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것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ㅇ 2025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사업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력하여 조속한 계약 체결 완료 2025년 4월 21일) ㅇ 조치결과 - ’25. 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요청 - ’25. 2.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 조달청 의뢰(발주) - ’25. 3. ~ 4. 조달청 공고,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결과(2024년 12월 31일) -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은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보관·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중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이 요구됨 - 매년 사업수행에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 중요장비 중심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대폭 증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025년도 사업비 16.29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실직적인 증액은 2.9억 원에 그쳐 현 계약범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임 - 매년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계약범위를 기준으로 한 다년 계약 방식의 추진은 유지관리사업의 부실 초래가 우려됨 - 사업수행에 적정한 예산확보가 전제되면 다년 계약 방식의 추진이 가능함. 그러므로 우선 ’26년도 사업의 적정한 예산확보 추진이 바람직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2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부진한 집행실적으로 2023년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5억 8,000만원 감액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로 크게 부진한바, 여전히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과대 편성되었음을 시사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ㅇ 영장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거, 경찰의 신청에 의해 개최되는데 신청 건수가 적어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ㅇ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2년 780백만원, '23년 200백만원, '24년 133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 '25년 예산 133백만원(전년동) ㅇ 당장 집행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경찰 신청 건수 증가에 대비 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산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또한,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경찰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선거범죄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남 ㅇ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관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실적이 양호하며,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할 것	제도개선	ㅇ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집행률 저조한 추이를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을 감액하였음 - 2024년 45,121천원 → 2025년 13,621천원 ㅇ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법무부와 검찰은 APICC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매년 일반연구비(260-01)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APICC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최신 게시물이 2020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2021년 이후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편성·집행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APICC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ㅇ APICC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 기존에는 비공개 회원제(APICC 회원국 마약관계관)로 홈페이지를 운영 해왔으나, ’25. 3. 20.부터 홈페이지를 전국민 대상 공개 홈페이지로 전환하여 운영 ※ 기존 게시글 중 보안이 필요한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 ㅇ APICC 주요활동 등 업데이트 - 기존 게시글 분류작업 완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APICC 활동사항 최신화 완료, 향후 계속하여 상시적인 업데이트 예정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0일
[지적사항] ㅇ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광주교도소 숙직실 및 사무실 증축 공사’는 기본조사설계비 편성을 누락하였다가 실시설계비에서 세목변경하여 집행함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2022. 9. 30 ~ 20 23. 6. 14)’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을 세목변경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제도개선	ㅇ 2025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시 기본조사설계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였음 ㅇ 향후 기본조사설계가 필요한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20억 9,6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이·전용(감)하고 612억 7,7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68억 700만원은 이월하고, 30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건설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주의	ㅇ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고 수시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기성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하는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30일
[지적사항] ㅇ 타 세부사업인 “교도소 행정지원”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일부 혼용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예산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ㅇ 기관별 월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혼용집행에 주의하도록 안내(’24년 6월)하였으며, 향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혼용집행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수형자 인원 대비 이용률 등을 보면, 가족만남의 집은 2.6%, 가족 만남의 시간은 7.4%,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ㅇ ‘가족누리통합솔루션’*을 시범실시(’24년 5월 ~ 11월)하여 타 가족의 사생활침해 등 우려가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신 개별 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25년에도 가족상담이 포함된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귀휴+가족사랑캠프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 형기종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휴, 가족센터 상담, 가족사랑캠프 등의 사회적 처우를 중복경험하게 하여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증진하고 실질적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ㅇ 귀휴 실적이 전년 대비 30.9% 증가(’23년 1,057명 → ’24년 1,384명)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실적이 85.7% 증가(’23년 895명’→24년 1,662명)*하는 등 사회적 처우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음 * 소망교도소 실적 포함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교정본부의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중 일부를 실무수습 변호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타 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하였으나, 최종합격자(2명)가 임용을 포기하였고, 이후 6월 법무부의 채용 재공고에 교정본부 선발 인원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실무수습 변호사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신속한 추가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ㅇ 다양한 소송사건(헌법, 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소송수행자 지정을 통해 실질적 변론 기회 부여하여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지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였음(’24년 7월) ㅇ ’25년 실무수습 변호사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채용과정에서 임용포기자 발생 시 신속한 추가 채용을 진행하는 등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2023년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집행이 저조(78.4%)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ㅇ 공무직 근로자의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공무직 근로자의 잦은 퇴사와 퇴직 이후 신규 채용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ㅇ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24년 근속수당(월 3만원~15만원)을 신설(’24년 5월)하였으며, 공무직 추가 채용(’24년 12월)을 진행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교도작업은 작업 장소·시간 등 교도소의 특성상 단순 노무 중심 작업이어서 현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율은 산업 환경 변화로 과거 인력에 의한 작업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거나, 경기 불황에 따라 저조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생산 직종 다양화와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 등 생산성 제고 및 외부통근작업 확대 등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	제도개선	ㅇ 직업훈련 연계와 관련하여 바리스타·제과제빵 및 웹툰, 청소(’24년 1월), 용접(’24년 7월) 직업훈련을 교도작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봉제 등의 분야도 확대할 예정임 ㅇ 또한, 외부기업의 범위를 일손이 부족한 농업 및 용접분야(’24년 10월)로 확대하여 외부통근(6개 기관) 및 희망센터(1개 기관, ’24년 12월)를 추가 운영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공사를 제외한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축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5월말경 입주하였음. - 기존 입주건물의 임차기간이 2023년 4월 15일에 만료됨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 - 공사의 착공시기가 2월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ㅇ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청사 이전, 청사 개보수 등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 경과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청소년자립생활관 총 9개 중 절반 이상인 6개(강원·대전·부산·안양·광주·의왕)의 생활관이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50% 이하였고, 이 중 부산(31.2%) 및 광주(12.5%) 생활관은 현원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소년원 출원 후 재입원율이 최근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율을 높이고 소년원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등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ㅇ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입주인원 조정,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원 등과 정기적인 교류 활성화, 누수 등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제공 등을 통해 입주율 향상에 노력함 ※ 입주율 : 2023년 52.2% → 2024년 12월 기준 68% -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은 2023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입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나, 2024년 12월 기준, 정원 9명 대비 현원 5명으로 입주율 55.5%를 달성함, -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의 경우, 2025년 6호처분시설 지정을 통해 입주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자립지원기관의 입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계속해서 소년보호협회를 지원하여 출원생 자립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입주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를 운영비(210) 보조비목 중 기타운영비(210-16) 보조세목에 일괄 산정하여 계획·집행하였음 - 이는 해당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 예산 규모의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개선할 것	주의	ㅇ 공단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세분화 조치 - 2025년 공단 사업비 관련 4개 보조비목(운영비, 유형자산, 여비, 건설비)과 9개 보조세목(일반수용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리용역비, 자산취득비, 국내외여비, 차량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으로 세분화 조치 완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은 2021년 기준 4,950개에서 2023년 기준 6,176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대상자 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4,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다한 경우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부재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ㅇ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량 관리 기준 마련 - 위치추적 전자장치 ① 부착 인원, ② 재처리 중인 수량, ③ 기관별 예비 보유 수량 등을 고려하여 2024. 12. 전자장치 수량 관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 - 향후 전자장치 수량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정 수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 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 -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히 건의할 것	제도개선	ㅇ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ㅇ 국회 논의에 따라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상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 보장 내용 포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30일
[지적사항] ㅇ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을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일괄 집행하거나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제도개선	ㅇ '25년 예산 편성 시,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비'가 "법무행정정보화(7034-500) 사업"에서 일괄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추징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대상금 30조 5,493억원 대비 연평균 집행액은 1,011억원으로 집행률이 0.33%에 불과하며, 2023년에는 집행률이 0.29%로 더욱 떨어짐 ※ 2023년 집행대상금액 32조 2,589억원 중 923억 5,100만원 집행 ㅇ 범죄수익 대부분이 차명으로 되어있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추징금 미납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및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범죄수익환수 관련 매뉴얼 발간 및 관련 교육 강화 - ’25년 1월「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매뉴얼」발간 - ’25년 4월 범죄수익환수 위한 민사소송 서류 표준양식 배포 ㅇ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관리 방안 시행 및 전담조직 강화 - ’25년 2월 주요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분야 전문직위 전문관 증설(2석 → 9석) 및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지정(12명) 등 장기근속 여건 마련 및 전문화 추진 - ’24년 10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비직제 범죄수익환수전담팀 설치 완료, ’25년 3월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직제 신설 지속 추진 ㅇ 국내 최초로 국가기관 계정을 사용해 가상자산 국고귀속 ㅇ ’24년 12월 행안부에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정원(12명) 증원 ㅇ ’24년 10월 법무연수원에 범죄수익환수 검사 전문화 교육과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실무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가상자산 환수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과목과 사례 교육을 추가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안 제출 - ’25년 4월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교육 확대개편(3일→5일) - ’25년 5월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교육 확대개편(1일→2일) ㅇ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교육 필요성에 따라 관세청, 식약처·특허청(’25년 4월)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중 ㅇ ’22년 12월, ’24년 3월 및 12월 일선청(대전, 대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검찰 전 구성원의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일반지식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25년 2월(광주, 부산), ’25년 3월(수원, 인천) 일선청 찾아가는 교육(관내 지청 포함) 및 범죄수익환수 T/F, 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 간담회 등 추가 실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일선 검찰청 대상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25년) - 보이스피싱 사건 보전청구 등 지원(1월, 청주지검) - 코인 리딩방 사건 보전청구 등 지원(2월, 서울북부지검) - 입찰방해 사건 관련 법리검토 등 지원(3월, 부산지검) -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범죄수익 보전 등 지원(4월, 부산서부지청) ㅇ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 '23년 11월 해외 주요국가의 가상자산 환수 절차 및 실무 사례 연구(한국형정원) - '24년 12월 해외 주요국가의 범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제도 및 국내 도입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한국형정원) - '25년 3월 해외 주요국가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기구 및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한국형정원)(진행 중) ㅇ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25년 4월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 위반을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개정 건의(법무부) ㅇ 자금세탁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5년 4월 ARIN AP(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초청연수 참석,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논의 등 ㅇ 범죄수익환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 직접 인지 실적을 중심으로, '24년 자금세탁범죄 기소 815건, 몰수·추징보전 1,352건(보전재산가액 2,834억원), 추징금 집행액은 1,526억원으로 전년 동기(923억원) 대비 65.3% 증가 ㅇ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30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최근 3년간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임금 불용이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약 1.25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00만원 (2023년) 약 3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500만원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공무직 퇴직 예정 시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제도 개선	ㅇ 현재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위해 통·번역 전문인력(1명)을 고용하고 있음 ㅇ 다만, 직종 특성상 이직이 잦아 퇴직시기 예측이 어렵고, 필기 및 면접시험, 신원조사 등 채용절차에 최소 2~3개월 소요되어 기존 인력 퇴직 후 공백기간이 발생하면서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음 ㅇ 공무직 근무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인력 관리*로 전년 대비 인건비 집행률 상향('23년 81.5%→'24년 85.7%) * 채용계약 시 사전 통보기간 설정(15일→1달), 채용 담당자 수시 면담을 통한 퇴직시기 예측으로 기존 인력 퇴직 전 채용절차 개시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대한 항소의 인용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엘리엇, 론스타, 메이슨 등 우리나라가 패소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 항소 유지가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더욱 발생시키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계속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시정	ㅇ '24. 9.경부터 12.경까지 항소계속여부에 관하여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태평양, 피터앤킴, 율촌), 외부 전문가(국제중재 교수, 중재인) 등의 검토 결과, 이미 취소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 항소포기 시 향후 ISDS 대응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취소절차에 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결론 도출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공익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홍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규 공익신탁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부자들의 효능감 증진, 상속세와 같은 세제 혜택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공익신탁이 다른 기부제도와 비교하여 충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상 개선방안·세제혜택 등의 유인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 개선	ㅇ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와 공익신탁 세제 개선 방안 논의('24. 9. 9.) - 공익신탁법 개정 관련 특례기부금, 자본시장법 및 법인세법 관련 사항 등 자문 5회 실시(연중) - 공익신탁 수탁자 범위 확대 및 운영 방법 다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을 마련 및 부내 의견조회 실시('24. 10. 28.) * '25년 중 발의 예정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임금 및 퇴직금 소송 등의 감소 및 신규 공익법무관 총원의 감소로 인한 소송수행 건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구조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수지차 보전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ㅇ '2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자체수입 및 지출액을 축소 조정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12일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
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지적사항]
ㅇ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의 결원이 지속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불용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8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 최근 5년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등</th><th rowspan="2">예산현액(B)</th><th rowspan="2">집행액(C)</th><th rowspan="2">집행률(C/A)</th><th rowspan="2">집행률(C/B)</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본예산</th><th>추경(A)</th></tr><tr><td>2019</td><td>4,418</td><td>4,418</td><td>-</td><td>4,418</td><td>4,168</td><td>94.3</td><td>94.3</td><td>250</td></tr><tr><td>2020</td><td>4,549</td><td>4,549</td><td>-</td><td>4,549</td><td>4,170</td><td>91.7</td><td>91.7</td><td>379</td></tr><tr><td>2021</td><td>4,570</td><td>4,570</td><td>-</td><td>4,570</td><td>4,188</td><td>91.6</td><td>91.6</td><td>382</td></tr><tr><td>2022</td><td>4,703</td><td>4,693</td><td>△2</td><td>4,691</td><td>3,981</td><td>84.8</td><td>84.9</td><td>710</td></tr><tr><td>2023</td><td>4,846</td><td>4,846</td><td>-</td><td>4,846</td><td>4,030</td><td>83.2</td><td>83.2</td><td>816</td></tr></table>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중 인력 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결원으로 인한 집행 부진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td><td>제도
개선</td><td>ㅇ 법률홈닥터는 전국 65개 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인권국 소속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자문, 소송연계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다만, 지속된 코로나 19 상황 영향, 격오지에 대한 근무 기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ㅇ 법률홈닥터 결원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 채용절차 진행으로 ’24년 수시 채용 총 4회(14명), ’24.12.31. 기준 정원 65명 대비 현원 65명(결원율 0%) 및 불용액 212백만원(집행률 96% 달성, 2023년 대비 불용액 74% 감소)
* 채용절차에 따른 공석기간 최소화(2개월)
** 채용시 해당 지역 로스쿨 및 관계기관(지방변호사협회 등) 법률홈닥터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및 협조 요청 등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r>
<tr><td>[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와 별개로 실수납액(실제 회수한 금액)만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아 그 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있음
ㅇ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대비 회수한 변상금 수납비율은 최근 5년간 10.8 ~ 21.6%에 불과함.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인 근로보상금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보상금 등을 공제할 수 있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td><td>제도
개선</td><td>ㅇ ’25년도부터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없이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도록 개선하였고,

ㅇ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 3. 2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같은 날 시행되었음. 이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 행사 실적을 개선하겠음</td></tr>
</table>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없이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도록 하고, 가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 및 수형자에 대한 징수활동 등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변상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1일
[지적사항] ㅇ 이민정책연구원이 인건비(보수, 110-01)로 편성하여야 할 정규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법정부담금(고용부담금, 320-09)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법무부는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승인하는 등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보조금 정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추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ㅇ 이민정책연구원 정규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보수, 110-01)로 집행·정산('24년) 및 '25년부터 인건비(보수로)로 편성 완료하였음 - 매월「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재부)」등에 따라 보조비목·세목 집행점검 실시 예정 ㅇ 조치완료일: 2024년 8월 8일(e나라도움 집행검토 완료)
[지적사항] ㅇ 동 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을 보면 대부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검찰업무지원'이라는 미명하에 특수활동비 5억 2,200만원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의 특수활동비 비목을 삭제하고, 해당 예산을 증빙이 가능한 특정업무경비 또는 사업추진비로 편성할 것	주의	ㅇ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을 포함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ㅇ 추후 시정요구 내용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형사보상금은 매년 예산편성액 대비 초과 지출되어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빈번함 ㅇ 2023년에는 예산액 대비 40% 수준인 168억 5,200만원을 타 세부사업에서 충당하였고, 이를 위해 검찰국 소관 대부분의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떨어뜨리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반하는 부분임 ㅇ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이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바, 검사의 성과관리에 형사보상금 지출 규모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형사보상금의 지출은 피고인에 대한 구금기간, 소송비용 등에 영향을 받는데, 업무상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빠르게 공소를 취소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형사보상금 지출금액을 줄이고, 피고인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형사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청에 형사보상 기록송부를 요청하고 있는데, 검찰청의 회답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형사보상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시 실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제도개선) ㅇ 검찰청은 형사보상 기록 송부 지연 사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형사보상 청구인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주의)	주의 제도 개선	ㅇ '25년 예산을 전년대비 2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24년 400억원 → '25년 420억원 ㅇ 향후에도 형사보상금 부족분을 타 세부사업 예산에서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ㅇ '13. 7.경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죄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추진 권고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는 일선청에「형사보상신청기록 신속 송부 이행 여부 점검지시」 및 「'형사보상신청'기록 신속 송부 지시」공문을 시행하여 검찰에서의 신속한 기록송부체계를 확립함 ㅇ 또한, 형사보상 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형사보상 신청기록에 대한 법원 송부 지연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형사보상 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대체역 편입인원에 비하여 복무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부족하여 대체역 소집희망자의 대기일 수가 2021년 상반기에는 173일부터 327일까지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606일부터 969일까지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있는 대체역 자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ㅇ '24년 통영구치소 등 4개소, '25년 제주교도소 등 2개소 대체복무시설 개청 완료하였으며, ㅇ 대구교도소 '25년 3월 착공 등 향후 개청 예정 3개소 모두 '25년 착공 및 '26년 12월 이내 준공하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ㅇ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30일
[지적사항] ㅇ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① 의료비 예산 126억 6,300만원 대비 36억 5,7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② 건강보험 예탁금 예산 202억 6,500만원 대비 50억 4,4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으며, ③ 호송여비는 예산 25억 100만원 대비 8억 1,300만원을 이·전용으로 초과 집행되었음 ㅇ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기관 의무관이 충원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ㅇ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인사교류제도 마련을 통한 외부 정신과 전문의 교정시설 파견 협의 실시('24년 11월), 원격의료센터 정신과 전문의 정원 확충 추진('24년 6월) 등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외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협의 실시('24년 1월) 등 교정기관 내 진료 내실화 방안 마련 -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집행 적정성 검토 등 의료비 절감 방안 마련('24년 11월) ㅇ 조치완료 : '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약품 투약 건수가 과다하여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투약 건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6배에 해당함 - 2019년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 수는 4,61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65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3년 10.0%로 증가하였음 - 2023년 5월에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주고받고 모아둔 뒤 투약한 원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ㅇ 수용자 약물 오남용 관리방안 마련 - 기존의 향정신성의약품 통계 작성에서 마약성진통제·기타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추가하여 교정시설별 통계 작성('24년 9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지원단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 모니터링 및 오남용 사례 점검('24년 3월)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최근 5년간 노역집행률은 93.2 ~ 93.7%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하지 않는 수형자들이 1,3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작업장 신·증축 및 외부통근 작업 확대 등을 통해 노역 집행률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ㅇ 징역형 수형자 노역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장 신·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개 기관을 신축('24년 2월, 11월 준공)하였으며, 용접 및 농촌일손 제공형 외부통근(6개 기관), 희망센터(1개 기관, '24년 12월) 추가·확대하여 추진하였음 ㅇ 앞으로도 우수업체 유치, 신제품 개발 및 작업장 확충을 통해 교도작업 정역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2024년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0.6명인데, 이 중 정신과는 정원 15명 중 현원이 7.2명으로 정신과 의사의 정원 대비 충원률이 48%에 불과하였음 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72명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하여, 동 직위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보수 외에도 정신과 의사의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경감, 연구·교육기능 강화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ㅇ 법무부는 계속해서 민간스카우트 초빙, 퇴직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 확보 및 의사 보수 인상, 국외 연수기회 확대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통해 정신과 의사 충원을 위해 노력 중임 - 의무직(임기제) 채용 수시 공고 중 - 2025년 1월 2일 정신재활치료과장(4급, 임기제) 임용 - 2025년 2월 17일 중독진료과장(5급, 임기제) 임용 - 2025년 3월 1일 1년차 전공의 3명 수련 시작(전공의 총 9명) - 2025년 4월 7일 일반진료과 의사 임용 - 2025년 5월 1일 일반정신과 의사(4급, 임기제) 임용 - 2025년 5월 21일 의료부장(고위 나급) 임용 - 2025년 5월 26일 일반정신과 의사(4급, 임기제) 최종합격자 발표(2025년 8월 임용 예정) - 2025년 1분기 의사 2명 연봉 인상 완료, 2분기 법무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개최 요청(4명) ㅇ 2025년 6월 23일 기준 국립법무병원 의사 현원은 14.2명이며, 이 중 정신과 의사 현원은 9.8명임(정원 외 정신과 전공의 9명 있음, 전공의는 전문의 0.5명으로 봄) -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7명임 ※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2025. 6. 23. 기준 803명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23일

나. 조치 중인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최근 2년간 국가소송 송달료 및 감정료가 매년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022년)‘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사업에서 2억 9,800만원 전용,‘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에서 4,500만원 내역변경 (2023년)‘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에서 2억 5,400만원 내역변경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국가소송 관련 송달료 등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제도 개선	ㅇ 향후 집행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최근 3년간 동 사업 운영비가 매년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021년)‘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 8,800만원 전용 (2022년) 국외여비, 일용임금 비목에서 2,900만원 전용 (2023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비목에서 5,300만원 전용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비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제도 개선	ㅇ 향후 집행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2019결산, 2021결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없는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제도 개선	ㅇ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24. 1.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ㅇ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여 ’24. 8.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곽규택 의원)이 재발의되었음 ㅇ 향후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여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성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여유자금 규모는 유동성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기금의 수입·지출 균형 및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기금의 소요에 비례하는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도 개선	ㅇ ’22년부터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이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금 여유자금이 증가하였으나, ㅇ 기금 내 사업비는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24년에는 여유자금 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25년** 이후부터는 여유자금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1년)142 → (’22년)328 → (’23년)507 → (’24년)541억원 ** ’25년 기금에는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예산이 수입예산에 비해 약 25억원 크게 편성되었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법정 전입금액(집행된 벌금액×8%)이 아닌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 납입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제도 개선	ㅇ ’26년도 기금안 편성시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산 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9월 3일
[지적사항] ㅇ 최근 3년 간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반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을 지급하는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당초계획액 대비 초과로 증액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로 매년 15명 내외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활동하여,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ㅇ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낮은 급여* 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15년) 255 → (’17년) 260 → (’22년부터) 270만원 ㅇ 이에, 상근 진술조력인 보수 현실화(270→300만원)와 장기간 재직 시 근속수당(만 5년 근속 시 월 20만원)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ㅇ 법무부는 ’25년에도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26회계연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임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법무부와 검찰의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과제 40건 중 34건(85%)이 수의계약으로 수행됨 ※ 수의계약 25건(62.5%), 유찰 후 수의계약 9건(22.5%), 경쟁계약 6건(15%) ㅇ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검찰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수의계약 비율이 85% 수준으로 높고, 전체 과제의 약 3분의 2인 25건을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구용역과제 경쟁계약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 마련 등 정책연구용역이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주의	ㅇ 연구용역과제의 원칙적 경쟁계약 수행을 위한 성과지표 마련 및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계약체결 방식 세부 기준 마련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 요구되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 정책연구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실적을 보유한 기관·단체, 학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경쟁을 활성화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계약의 목적과 연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 25년도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시 경쟁계약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와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계약체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과제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검찰은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신규 추진시 중국 파견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정책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리핀으로 파견대상국을 변경하였음 -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위치하고 그 중 87.5%가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사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필리핀에 파견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뿐만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도박 등 다른 유형의 범죄	제도 개선	ㅇ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 중 - 현재 중국 정부에 검찰 수사관 파견을 위하여 주중대사 법무협력관, 한·중 수사협의체 등 여러 소통채널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 검찰수사관 파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중 ※ ’23. 4. 주중대사 법무협력관, 공안부 국제합작국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 파견 제안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미온적 응답 회신 ※ ’24. 12. 한·중 수사협의체 정기실무회의 의제 중국 파견 의견서 제출 완료 ※ ’25. 2. 한·중 수사협의체 정기실무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수사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하고, 필리핀에 파견된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의 결과 파견을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 허가가 필요하며 중국 공안부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등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파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 ㅇ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추적 중 마약, 도박 범죄 조직이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도피사범 발견시 해당 범죄 조직 등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중 ※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을 통한 첩보, 인지사건 현지 탐문 등 ※ 현지 첩보 활동으로 장기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고, 환전책을 최초로 직인지하여 검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국제공조수사 성과를 보이고 있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등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 것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제도 개선	ㅇ 2017년 사업 초기 적은 예산으로 직무스트레스 교육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보다 많은 교정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ㅇ 향후 2026년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의 비목을 변경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2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교정시설 공공요금을 매년 이·전용하여 집행하였고, 특히 2023년의 경우 재소자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이용: 252억 6,000만원, 전용: 67억 5,100만원)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제도 개선	ㅇ 엔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수용인원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을 이·전용하였음 ㅇ 다만, 교정시설 수용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3년 1,213억에서 '24년 1311억(8.1% 증액), '25년 1,379억(5.1%증액) 등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ㅇ 향후 수도 절수기 설치 등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자체 절감방안을 시행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전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 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 -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의	ㅇ 2023년 국회 결산 심사 이후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와 사무실 이전 협의를 진행 결과, 창성동 별관 신축공사 준공 후 서울정부청사의 일부 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서울정부청사 내 공실이 예상되어 26년 상반기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창성동 별관 준공 지연으로 사무실 마련이 순연되고 있음 - 조속히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와 협의 중임 ㅇ 현재 특별감찰관 조속한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별감찰관 임명 시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하반기 예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		
[지적사항] ○ 2023. 7. 법무부의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각하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패소책임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엘리엇에 대한 ISDS 대응 예산으로 5년간 약 170억 4,900만원의 재정손실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함 ○ 2015년 제일모직의 구 삼성물산 흡수합병과 관련, 여러 형사판결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메이슨이 각각 위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됨 - 정부는 각 중재판정에 관하여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엘리엇 관련 취소소송은 2024. 8. 2. 무렵 각하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취소소송 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ISDS 취소소송 제기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엘리엇·메이슨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즉시 정부 배상책임에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준비 착수를 할 것 ※ 관계부처: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의 긴밀한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검토 진행 중 ○ 조치예정일 : 2025년 8월 31일
[지적사항]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2020년 0.21%에서 2023년 0.35%로 이용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이 가능한	제도 개선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사서증서'에 한정되어 있는 전자공증 대상 문서를 '공정증서'로 확대하는 등 편의성과 활용도 개선 ○ '24. 6.부터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대상문서 확대 및 전자공증시스템의 홍보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 대상문서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대한공증인협회와의 다각적인 협력, 간편인증 도입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것		템 고도화 2차 사업을 추진 - 모바일 상 간편인증 기능 구현, 사서증서 인증구현 기능 등 공증시스템 개선 운영('25.3.) - 모바일에서 사서증서 촉탁신청 기능 개발 중('25.12.) ㅇ '24. 11.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규 지정공증인 지정 확대 등 전자공증 활성화 노력 ㅇ '25.3. 각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들의 공증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공증제도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 ㅇ 전자문서 형식의 공증증서 작성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 추진('25.2. 개정안 국회 발의) ㅇ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제도 정비, 유관기관과의 협력, 홍보방식의 다각화 등 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이 급격히 감소함 - 공단은 지난 10년간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 안정자금 대부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기준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시정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3년부터 퇴직기금 대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5년 예산에도 대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ㅇ 예산으로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이 당초 목적대로 적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적립금을 타 예산비목으로 전용할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예산총칙 개정('24. 10. 25.) ※ 인건비 퇴직적립금 집행현황(단위:백만원) (22년) 1,407 ⇒ (23년) 1,166 ⇒ (24년) 4,107 ㅇ 공단의 퇴직급여적립액 증가 및 보수체계 개편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중(6.4.~)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ㅇ 법무부는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봉과 성과급, 연가보상비, 퇴직금의 경우에는 용도를 나누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관리할 것 ㅇ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급여충담금의 적립액을 증가시켜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닌 단순 참고인 내지 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의견진술 등의 보충적 역할에 그치게 되는데,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시점은 주로 수사기관 신고·고소 이후로,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단계를 고소장 작성 등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피해자수요조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ㅇ 피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면 성폭력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필요시 고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고소장 작성 지원을 당부하였음 ㅇ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주요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등 그 자체를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ㅇ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평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적 관리를 강화할 것		면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 수행을 요청하여, 현재 연구 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이 보호외국인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문제에 대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3개소(화성, 청주, 여수)에 각 912만원의 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의무관 퇴직 등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법무부는 결원이 발생한 여수보호소 의료 인원을 '24년 11월 고용하였음. ㅇ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주 일정 시간 의료진료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였음. (매주 수요일 오후 진료) - 의무관 채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속 수립·공고 예정 -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급여 등 의무관 처우개선 및 공중보건의사 배정을 협의하는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ㅇ 조치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검찰은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유사 사안 발생시 지속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패소를 반복하여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2023년에 한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였는데, 총 58건의 소송 중 전부패소 또는 기타(일부인용)가 44건이었으며, 2023년에 패소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9,800만원임 ㅇ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처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이에 불복한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불필요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주의 제도 개선	ㅇ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1444호, '24.7.10.)을 개정하여 외부위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국 검찰청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위원 비율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전파함 ㅇ 대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소송 주요 판례 분석"을 작성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분석, 유형화하여 검찰 업무관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함 ㅇ「정보공개법」제12조 제3항의 단서 조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ㅇ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할 것(제도개선) ㅇ 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검토 범위 확대 및 외부위원 비중 상향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주의)		에서 재판, 범죄예방, 수사, 공소, 형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위원 2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음 -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범위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는 비공개·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제2항을 개정하여 외부위원 1인 추가예정 중에 있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